

연구총서 10-0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A Study on Crime Victims and their Needs for Support in Korea

황지태 · 노성호

■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노성호

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발간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들어 날로 증가되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거의 자연스럽게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실태가 어떠하고 이들이 사회나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필요성은 2005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명시되기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그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선행연구들이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것에 덧붙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및 확대 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가 그와 같은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그와 같은 변화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반복 조사연구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존 선행 조사연구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며, 선행 조사연구들이 수행된 시점과 본 조사연구의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본 조사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인권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황지태 박사와 전주대학교의 노성호 교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조사연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전국에 산재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상담소 등 여러 기관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스

CONTENTS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기본 배경 및 연구목적	2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방법	29
제1절 선행 조사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31
1. 선행 조사연구 개관 및 의의	31
2. 선행 조사연구들의 제한점	36
제2절 선행연구 보완 및 본 조사연구의 방법	38
1.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보강	38
2. 본 조사연구의 방법	39
제3장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55
제1절 범죄피해 경험	57
1. 설문문항의 범죄유형 및 범죄유형 재분류	57
2. 조사대상 범죄피해자들의 연령대	61
3. 범죄피해 시기와 장소	62
4.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65
5. 범죄피해의 언론보도	70
제2절 신체적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72
1. 신체적 피해의 정도	72

2. 신체적 피해의 회복기간	74
3. 신체적 피해 치료비용	77
4.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79
제3절 육체적·정신적 피해 후유증과 치료실태	85
1. 피해범죄 유형별 피해 후유증	85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치료 경험	88
3. 상담치료 시간 및 비용	90
4. 상담치료를 관한 보상·지원	93
제4절 경제적 피해실태 및 회복실태	97
1.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97
2.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99
제5절 수사재판과정·가해자·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103
1.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103
2.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108
3.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110
제6절 사회적 관계의 손실 및 기타	114
1.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장애 및 가족관계의 변화	114
2.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사회적 곤란 및 사회적관계의 손실	119
3. 가해자에 대한 감정 및 범죄피해의 회복	124
제7절 피해실태 특징 요약 및 논의	129
제4장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지원 욕구	133
제1절 범죄피해 회복·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 태도	135
1. 범죄피해 회복·지원에 대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반적 태도	135
2.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치 경험 및 만족도	139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및 경험	143
1.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143
2.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 경험 실태	149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의 우선 순위	154
1. 피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	154
2.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원방안	161
제4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정보통지 경험	168
1.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의 필요성 인지	169
2.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 수신 경험	173
제5절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177
1. 최초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	177
2.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81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192
제6절 피해지원욕구의 특징 요약 및 논의	201
제5장 결 론	203
참고문헌	211
Abstract	215
〈부록1〉 설문지	221
〈부록2〉 범죄피해자보호법	243
〈부록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59

표 차례

〈표 2-1〉 조사대상기관 목록과 각 기관에서의 표본사례수	41
〈표 2-2〉 조사지역	48
〈표 2-3〉 조사대상기관	50
〈표 2-4〉 조사대상기관의 유형분포	50
〈표 2-5〉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분포	51
〈표 2-6〉 응답자의 피해당사자 본인여부	52
〈표 2-7〉 피해당사자의 성별 분포	52
〈표 3-1〉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분포	58
〈표 3-2〉 조사대상기관과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 교차분석 결과	60
〈표 3-3〉 피해자의 피해당시 연령분포	61
〈표 3-4〉 피해범죄유형별 피해당시 연령 차이검증 결과	62
〈표 3-5〉 범죄피해의 발생연도 분포	63
〈표 3-6〉 범죄피해 발생지역 분포	63
〈표 3-7〉 범죄피해 발생장소 분포	64
〈표 3-8〉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 발생장소 교차분석 결과	64
〈표 3-9〉 사건 가해자의 인지여부	65
〈표 3-10〉 피해범죄유형과 사건 가해자의 인지여부 교차분석 결과	66
〈표 3-1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분포	66
〈표 3-12〉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교차분석 결과	67
〈표 3-13〉 가해자의 성별 분포	68
〈표 3-14〉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성별 교차분석 결과	68
〈표 3-15〉 가해자의 연령대 분포	69
〈표 3-16〉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연령 교차분석 결과	69
〈표 3-17〉 피해사건의 언론보도 실태	70
〈표 3-18〉 조사대상기관과 피해사건의 언론보도 교차분석 결과	71
〈표 3-19〉 피해범죄유형별과 피해사건의 언론보도 교차분석 결과	71

〈표 3-20〉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분포	72
〈표 3-21〉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교차분석 결과	73
〈표 3-22〉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교차분석 결과	74
〈표 3-23〉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분포	75
〈표 3-24〉 조사대상기관과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교차분석 결과	75
〈표 3-25〉 피해범죄유형과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교차분석 결과	76
〈표 3-26〉 자비부담 치료비용 분포	77
〈표 3-27〉 치료에 필요한 총비용 예상액 분포	78
〈표 3-28〉 조사대상기관별 자비부담치료비 및 총비용예상액 차이검증결과	78
〈표 3-29〉 피해범죄유형별 자비부담치료비 및 총비용예상액 차이검증결과	79
〈표 3-30〉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분포	80
〈표 3-31〉 조사대상기관과 가해자의 신체적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결과	80
〈표 3-32〉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신체적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결과	81
〈표 3-33〉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분포	82
〈표 3-34〉 조사대상기관과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교차분석	82
〈표 3-35〉 피해범죄유형과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교차분석	83
〈표 3-36〉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 피해 치료비 지원 정도	83
〈표 3-37〉 조사대상기관과 국가·공공단체의 신체적피해치료비 지원 교차분석	84
〈표 3-38〉 피해범죄유형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피해 치료비 지원 교차분석	85
〈표 3-39〉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정도 분포	86
〈표 3-40〉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정도	86
〈표 3-41〉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정도	87
〈표 3-42〉 피해자의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와 상담 정도 분포	88
〈표 3-43〉 조사대상기관과 피해자의 정신과의사 카운슬러와 상담 정도 교차분석	89
〈표 3-44〉 피해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정신과의사 카운슬러와 상담 정도 교차분석	89
〈표 3-45〉 피해자의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분포	90
〈표 3-46〉 조사대상기관과 피해자의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 교차분석	91
〈표 3-47〉 피해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 교차분석 결과	91

〈표 3-48〉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분포	92
〈표 3-49〉 조사대상기관별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차이검증 결과	93
〈표 3-50〉 피해범죄유형별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차이검증 결과	93
〈표 3-51〉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분포	94
〈표 3-52〉 조사대상기관과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교차분석 결과	94
〈표 3-53〉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교차분석 결과	95
〈표 3-54〉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분포	95
〈표 3-55〉 조사대상기관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교차분석	96
〈표 3-56〉 피해범죄유형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교차분석	96
〈표 3-57〉 범죄피해로 인한 현금이나 물건 피해액 분포	97
〈표 3-58〉 조사대상기관별	98
〈표 3-59〉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로 인한 현금이나 물건 피해액 교차분석	99
〈표 3-60〉 가해자의 현금이나 물건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분포	100
〈표 3-61〉 조사대상기관과 가해자의 현금·물건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100
〈표 3-62〉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현금·물건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101
〈표 3-63〉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정도분포	101
〈표 3-64〉 조사대상기관과 국가·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정도 교차분석	102
〈표 3-65〉 피해범죄유형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정도 교차분석	102
〈표 3-66〉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103
〈표 3-67〉 조사대상기관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104
〈표 3-68〉 피해범죄유형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105
〈표 3-69〉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106
〈표 3-70〉 〈재판사건에 국한〉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106
〈표 3-71〉 조사대상기관별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107
〈표 3-72〉 피해범죄유형별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108
〈표 3-73〉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108
〈표 3-74〉 조사대상기관별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	109
〈표 3-75〉 피해범죄유형별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	110

〈표 3-76〉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111
〈표 3-77〉 〈언론보도사건국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111
〈표 3-78〉 조사대상기관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이	113
〈표 3-79〉 피해범죄유형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이	113
〈표 3-80〉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 분포	114
〈표 3-81〉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 차이검증 결과	115
〈표 3-82〉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 차이검증 결과	116
〈표 3-83〉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 분포	117
〈표 3-84〉 조사대상기관별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차이	118
〈표 3-85〉 피해범죄유형별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차이	119
〈표 3-86〉 범죄피해 이후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 분포	120
〈표 3-87〉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 차이	121
〈표 3-88〉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차이	121
〈표 3-89〉 범죄피해와 관련한 이사, 도피, 이직, 실직 등의 경험 분포	122
〈표 3-90〉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 관련 이사·도피·이직·실직 등 경험차이	123
〈표 3-91〉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 관련 이사·도피·이직·실직 등 경험차이	124
〈표 3-92〉 가해자에 대한 감정 분포	125
〈표 3-93〉 조사대상기관별 가해자에 대한 감정 차이검증 결과	126
〈표 3-94〉 피해범죄유형별 가해자에 대한 감정 차이검증 결과	127
〈표 3-95〉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128
〈표 3-96〉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차이분석결과	128
〈표 3-97〉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차이분석결과	129
〈표 4-1〉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 조치의 필요성 분포	136
〈표 4-2〉 조사대상기관별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인식 차이검증결과	137
〈표 4-3〉 피해범죄유형별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인식 차이검증결과	138
〈표 4-4〉 응답자의 본인여부별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인식 차이검증	139
〈표 4-5〉 피해이후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조치여부	140
〈표 4-6〉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분포	141

〈표 4-7〉 조사대상기관별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141
〈표 4-8〉 피해범죄유형별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142
〈표 4-9〉 응답자 본인여부별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142
〈표 4-10〉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분포	143
〈표 4-11〉 조사대상기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차이검증결과	144
〈표 4-12〉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차이검증결과	146
〈표 4-13〉 응답자 본인여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차이검증결과	148
〈표 4-14〉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분포	149
〈표 4-15〉 조사대상기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차이검증결과	150
〈표 4-16〉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차이검증결과	152
〈표 4-17〉 응답자 본인여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차이검증결과	153
〈표 4-18〉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중요도 인지분포	155
〈표 4-19〉 조사대상기관과 첫 번째 중요한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결과	156
〈표 4-20〉 피해범죄유형과 첫 번째 중요한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결과	158
〈표 4-21〉 응답자 본인여부와 첫 번째 중요한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결과	160
〈표 4-22〉 가장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순서 분포	162
〈표 4-23〉 조사대상기관과 첫 번째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164
〈표 4-24〉 피해범죄유형과 첫 번째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166
〈표 4-25〉 응답자 본인여부와 첫 번째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167
〈표 4-26〉 사법기관의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170
〈표 4-27〉 조사대상기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차이검증	170
〈표 4-28〉 피해범죄유형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차이검증	172
〈표 4-29〉 응답자 본인여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차이	172
〈표 4-30〉 사법기관의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174
〈표 4-31〉 조사대상기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차이검증결과	175
〈표 4-32〉 피해범죄유형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차이검증결과	176
〈표 4-33〉 응답자 본인여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차이검증결과	177
〈표 4-34〉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분포	178

〈표 4-35〉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 교차분석결과 …	178
〈표 4-36〉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 교차분석 ……	179
〈표 4-37〉 응답자 본인여부와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 교차분석 ……	180
〈표 4-38〉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여부 ……	182
〈표 4-39〉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182
〈표 4-40〉 조사대상기관별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	184
〈표 4-41〉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	185
〈표 4-42〉 응답자 본인여부별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	186
〈표 4-43〉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	187
〈표 4-44〉 각종 피해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포 ……	188
〈표 4-45〉 조사대상기관별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차이검증 ……	189
〈표 4-46〉 피해범죄유형별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차이검증 ……	190
〈표 4-47〉 응답자 본인여부별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차이검증 ……	191
〈표 4-48〉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된 경로 ……	193
〈표 4-49〉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된 경로의 교차분석결과 ……	194
〈표 4-50〉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된 경로의 교차분석결과 ……	195
〈표 4-51〉 응답자 본인여부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된 경로의 교차분석 ……	196
〈표 4-5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	197
〈표 4-5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분포 ……	198
〈표 4-54〉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검증 ……	199
〈표 4-55〉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검증 ……	200
〈표 4-56〉 응답자 본인여부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검증 ……	201

국문요약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면개정과 2011년부터 시행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과학적 토대가 되는 범죄피해자 피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것과 연계된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선행조사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범죄피해자들까지도 인구비례로 조사대상으로 삼는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와는 달리 오로지 범죄피해 경험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조사상의 난점 때문에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부득불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행 조사연구들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을 다변화하고 표본수를 늘리고자 애썼다.

당초 연구계획상 목표 표본수는 2,000사례 이상이었는데,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무려 석 달에 가까운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표본수의 절반 정도(1,158사례)밖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범죄피해자들, 특히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이 심각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사기간 중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응답거부를 자유롭게 허용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표본추출의 결과가 확률표집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들 중에서도 무응답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유형별로 혹은 범죄피해자가 의탁하고 있는 기관별로 경험 및 태도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응답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들의 전체 의견은 그 자체로 일반화된 결론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만 제시하고, 주로 범죄유형별 혹은 기관별 응답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나누어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지원욕구라는 두 부분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이 중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부분들만 요약하고 관련된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응답자들과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곱씹어 보기로 하겠다. 둘 중에서는 비록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좀 더 심각한 편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역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제3장 제2절의 <표 3-21> 참조).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중 다수는 가정폭력 상담소 소속 응답자와 성폭력 상담소 응답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가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보였다(제3장 제2절 <표 3-22> 참조).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신체적 피해의 치료와 그 휴유증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도 처방의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즉 신체적 피해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반대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처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처우 사이의 상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의 유사성을 가정했을 때, 이 두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둘 다 매우 낮음)의 차이는 없으나(제3장 제2절의 <표 3-31>에서 <표 3-35>까지 참조)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의 지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표 3-37> 및 <표 3-38> 참조)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 비해 적어도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반적

으로는 상담소가 피해자지원센터에 비해서는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점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기관별 처우의 차이도 나타났다. 정신적 후유증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제3장 제4절의 <표 3-40> 및 <표 3-41> 참조),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와 상담소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의 차이는 현격할 정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낮았다. 더 나아가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상담소들이야 원래 그와 같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담소에 있는 피해자들보다 결코 많이 적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후유증 치료 기능이 현저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치료 기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담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해나가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사건의 언론보도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으로 각 피해자들의 2차 피해실태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었는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언론보도 여부를 통제한 뒤 그 피해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적어도 선행연구들에서보다는 그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제3장 제5절 <표 3-77> 참조).

다음으로 범죄피해지원 욕구와 관련된 논의된 바를 선행연구결과들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사항들만을 간추려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 반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기할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주로 찾거나 의탁하는 기관들의 종류는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제4장 제5절의 <표 4-37> 참조). 즉, 상대적으로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엔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서 찾아가게 된 경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이는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직후 스스로 범죄피해지원 기관을 찾아가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 강력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도, 강력범죄 피해 직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강력범죄 피해당사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로 제 발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찾아가겠는가?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범죄피해 당사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족이 수소문해서 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범죄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일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탁하게 될 경우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러한 응답결과들은 선행연구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일단 어떤 종류의 피해자지원기관이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관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혹은 범죄피해지원에 대해 특별히 더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보다는 현행 수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요구가 좀 더 덧붙여질 뿐이라고 말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그 가족들이 해당 기관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제4장 제5절 <표 4-48> 참조)를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온 경우(6%)는 별로 없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그나마 많았지만, 양자를 합쳐도 전체 인지경로의 절반수준도 안 된다(경찰, 26%, 검찰, 13.2%). 범죄피해자,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패닉상태에 빠져 있어 스스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먼저 범죄피해자들을 찾아나서는 일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경찰 단계가 더 빠르므로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를 고지해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할 만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각 특성을 가진 여러 기관의 결여된 기능들을 보완하든지 양자 중의 하나를 시급히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각종 상담소들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범죄유형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필요하지만 결여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원만한 지원을 받는 데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고 있다. 가령,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기존의 상담소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방식들이 결여되어 있다. 어느 기관에 주로 의탁하는 피해자이든 양자는 모두 필요한 기능들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여되어 있는 기능들을 상호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 기관별로 범죄유형별 특화는 유지하되 그 자체 내에 모든 기능을 다 갖추도록 하거나, 각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범죄피해지원에 드는 예산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후자의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령 강도범죄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정신적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의무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기관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들은 피해 충격 및 가공할 만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들 기관

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경찰 및 검찰이 서로 의무적으로 피해자들을 연결해 주거나 끌어오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본 조사연구와 같은 연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그 지원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기획해 내기 위함이 그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향후 본 조사연구 방법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본 조사연구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표본추출 등과 같은 어떤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사연구가 가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경험을 회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접근할 경우에조차도 일종의 치료적 관점에서 거의 전문가 수준(정신과의사나 상담심리학박사)의 면접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 막대한 비용소요가 문제가 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행될 수 있는 조사방법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긴 하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기본 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들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들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그와 더불어 민주적 인권의식이 성장해온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꾸준한 성장은 형사사법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편으로는 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 역시 부각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인권문제 개선이 상대적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법조계의 주장¹⁾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범죄피의자 인권문제에 대한 반발의 성격으로서의 범죄피해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 여 년 전인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²⁾해 왔으나, 그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관심이 특

1) 그런 주장은 종종 검찰에서 제기되곤 하며, 그와 관련해 검찰이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해 갖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기도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중추라고 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로 검찰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범죄피의자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들이 범죄피해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 누구에 의해서든 범죄피해자 인권문제는 전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2) 현행 헌법 제30조를 의미한다. 이 조항[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구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별하게 증폭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확대, 형사법절차로 인한 2차적 피해예방,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피해자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³⁾부터라는(김지선·이동원, 2006: 25)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체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들 역시 큰 폭으로 증가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논의 또한 많아졌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거의 자연스럽게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실태가 어떠한지 이들이 사회나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연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의 제정과 함께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헌법(제10호) 제30조의 규정은 1987년 10월 29일에 제정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되어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헌법에서의 규정 이전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제화의 효시는 1981년 1월 29일 제정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3361호]”에 의해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2003년은 김천과 구미, 그리고 대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적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해이다(송기오·강경래, 2005: 180; 김지선·이동원, 2006: 25). 2003년 9월 김천과 구미에서 최초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같은 해 2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집단피해발생시의 체계적인 피해자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김천·구미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간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하면서 종합적인 민간피해자단체가 최초로 설립되었다(김지선·이동원, 2006: 106).
-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2000년대 이후만큼 많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보호, 특히 증인보호 및 피해자진술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가령, 박광빈, 1989; 이재상·이호중, 1992; 이호중, 1993; 김순태, 1995; 정진수, 1996; 송희진, 1999 등),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서는 이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논의 역시 많아졌다(가령, 이호중, 2000; 김용세, 2002, 2004; 김용세·김종택, 2003; 심희기, 2002; 경인현, 2004; 박병식, 2004; 송광섭, 2004; 이만중, 2004; 이천현, 2004; 김현철, 2005; 박미숙, 2005; 박철현·김상원, 2005; 송기오·강경래, 2005; 오영근·이천현, 2005; 윤승현, 2005; 장규원, 2005; 최정학, 2005; 김지선·이동원, 2006; 윤상민, 2006; 최영승, 2006; 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홍영오·이수정, 2006; 황태정, 2006; 김지영·박형민, 2009).

구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필요성은 2005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명시⁵⁾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해 실제로 2006년에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김지선·이동원, 2006)가 수행되었다. 이 중 전자는 법률에 명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사연구이고, 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로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는 아니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박형민, 2009)가 수행되어 범죄피해자 가족의 2차적 피해실태까지 포함한 조사연구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의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와 2009년의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의 후속적 성격이 강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조사연구는 대체로 범죄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내용과 그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 파악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성이 있고 본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동시에 두 조사연구는 물론 본 연구도 범죄피해자 지원 및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피해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범죄학에서 흔히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라고 불리는 조사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⁶⁾. 특히 범죄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만을

5) 2005년 12월 23일 제정(법률 제7731호)되어 2010년 5월 14일에 전면 개정(법률 제10283호)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4조의 제2호에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피해조사는 주로 공식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특정한 범죄들의 암수 혹은 숨은 범죄(dark figure of crime or hidden crime)의 양을 추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비(非)피해자와 비교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해 내는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연구이다.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고 그에 따라 포착되는 범죄피해자의 수가 적으며, 범죄피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설문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피해조사와는 다르다.

유사 선행 조사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반복 조사에 의한 신뢰성 확보이다. 보통 사회조사는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되는데, 통계적 방법은 오류의 한도를 알려주는 방법이지 그 자체로 오류가 없는 방법이 아니다. 대신, 여러 차례 유사한 연구를 반복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을 좀 더 줄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조사를 통한 결론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기는 하다. 둘째, 기존 선행 조사연구들에 대한 보완작업이다. 어떤 연구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충분한 연구는 없다. 학문적 연구는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작업을 통해 진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본 조사연구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셋째, 선행 조사연구들이 수행된 시점과 본 조사연구의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극히 최근 들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⁷⁾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및 확대 개정⁸⁾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가 그와 같은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조사연구는 그와 같은 변화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규정 자체가 본 조사연구의 기본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는 선행 조사연구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전제하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후유증 및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보상 욕구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법률 제10284호, 2010년 5월 14일 제정,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은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 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8)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법률 제10283호)은 까다로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형사조정 신설 및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조사연구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조사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 및 요약·정리해보고 이들 선행연구들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면서 이를 토대로 본 조사연구의 방법론과 조사설계의 기본틀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실태 및 피해의 치료·회복 실태에 관해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의 제1절에서는 범죄피해 경험을 범죄유형별, 연령별, 발생장소별, 가해자별 등으로 살펴보고, 제2절에서 제4절까지는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정도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난 다음, 제5절에서는 수사·재판과정 및 가해자·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실태를, 제6절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관계를 손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4장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지원욕구와 피해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의 정도, 이용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해 다섯 개의 절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의 제1절에서는 범죄피해 회복·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지 및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범죄피해 지원방안의 우선순위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정보통지 경험과 그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난 다음, 제5절에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그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함과 더불어 본 연구의 함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끝맺음 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방법

본장에서는 본 조사연구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조사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 및 요약·정리해보고 이들 선행연구들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면서 이를 토대로 본 조사연구의 방법론과 조사설계의 기본틀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 선행 조사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 선행 조사연구 개관 및 의의

1)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연구』 요약 및 의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고,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의 과학적 토대를 위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직후인 2006년도에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가 수행되었다. 이 조사연구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피해의 내용과 그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들의 의식,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앞의 문헌 : 23).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표본추출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서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겪은 어려움이나 곤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조사와는 달리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피해 당사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건 이후의 1차적 피해자화(primary victimization)와 2차적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의 실태와 범죄피해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하였다(앞의 문헌 : 63).

이 조사연구에서 포착해낸 핵심적인 연구결과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1차적 피해자화와 2차적 피해자화를 막론하고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¹⁰⁾가 나타났다. 둘째, 범죄 직후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를 조사했을 때에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서비스는 상담이나 대화, 정신적 지원과 위로였다는 점(앞의 문헌 : 235)이다. 이는 첫 번째 결과와 논리적으로 정합(整合)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9)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전체를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표집틀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중심으로 사례를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한 사례수는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284사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8사례로 도합 492사례이다(앞의 문헌 : 63-71). 492사례 중 22.2%는 사기범죄피해자였고, 21.8%는 폭력범죄, 13.8%는 성범죄, 12.0%는 살인범죄, 5.9%는 절도범죄, 5.7%는 가정폭력, 4.9%는 강도, 3.5%는 뺑소니 교통사고, 1.4%는 공갈, 0.6%는 횡령피해자였다(앞의 문헌 : 23).

10) 먼저 1차적 범죄피해자화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43.0%가 평생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고, 신체적 측면에서는 40.1%가 그런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정신적 측면에서는 62.1%가 그랬다고 평가하였다(앞의 문헌 : 230). 정신적 피해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겪었던 고통이었으며, 38.0%는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앞의 문헌 : 231). 조사된 범죄유형 중 상대적 피해 심각성(혹은 피해 후유증)이 가장 높았던 살인범죄피해자(가족)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64.9%가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신체적 피해에서는 48.2%, 정신적 피해에서는 89.5%가 높은 심각성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60.0%가 평생 회복할 수 없을 수준의 신체적 피해를 보고하였고, 87.9%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앞의 문헌 : 232). 한편, 2차적 범죄피해자화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 그리고 신체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나 심리적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앞의 문헌 : 235).

센터 등을 포함한 각종 상담기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더 나아가 이들 기관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 역할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셋째,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비교적 자신의 거주지 및 친숙한 장소(대략 85% 가량)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대략 60% 가량)가 많다는 점(앞의 문헌 : 229)과 더불어, 그와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가해자가 인척관계이거나 친구·직장동료·이웃집 사람과 같은 근린관계인 경우에 피해후유증이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앞의 문헌 : 232). 이 결과가 주는 중요한 함의는 많은 범죄피해에서 형사화해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는 피해회복의 속도가 빠르면서도(앞의 문헌 : 237) 동시에 회복에 실패하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후유증이 다른 경우보다도 더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있다는 결과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여자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이별한 사람과 전세나 월세 등에서 사는 사람, 동거자가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무직자, 그리고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피해, 신체적 피해,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앞의 문헌 : 236). 이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적은 사람일수록, 혹은 쉽게 이야기해서 상대적으로 “기댈 곳이 적은”은 사람들의 범죄피해 후유증이 더 크다는 말로써, 개인적 차원의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해 범죄피해 후유증을 회복하는데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사회단체가 “기댈 곳”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적어도 당시 조사연구의 상황에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호·지원방안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경험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앞의 문헌 : 239). 물론 이는 본격적인 의미의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률(“범죄피해자보호법”)이 당시에 갖 태어났고 그와 연관된 사회적 차원의 노력 역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려던 참에 실시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 및 범죄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를 피해자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앞의 문헌 : 239)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후의 연구들에서 그와 같은 홍보가 얼마만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평가들과 기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요약 및 의의

2006년도에 실시된 조사연구 이후에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논의의 확대와 더불어 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확장된 연구의 필요성 역시 확대되었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원을 주된 취지로 삼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입법이 논의되던 시점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범죄피해보다는 강력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절실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했던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 강력범죄피해의 비중이 적었다¹¹⁾는 한계와 맞물리면서 2009년도에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박형민, 2009)가 수행되었다.

2009년의 조사연구에서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들만을 조사대상¹²⁾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고려¹³⁾와 함께 양적 조사연구에 덧붙여 질적 사례연구까지 포함한 것이라

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유형의 범죄피해, 가령, 사기범죄가 22.2%(491건 중 109건), 일반 폭력범죄가 21.8%(107건)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강도와 살인범죄는 합쳐서 16.9%(491건 중 살인 59건, 강도 24건)에 지나지 않았다(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 89).

12) 총 172명의 조사대상에서 살인이 56명(31.5%), 강도살인 3명(1.7%), 강간살인 2명(1.1%), 방화살인 4명(2.2%), 살인미수 10명(5.6%), 강도 36명(20.2%), 강도강간 6명(3.4%), 강도 및 방화 1명 (0.6%), 성범죄(강간) 46명(25.8%), 성범죄 및 방화 1명(0.6%), 방화는 13명(7.3%)이었다(김지영·박형민, 2009 : 83).

13)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3조 제1항 제1호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

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통계자료를 덧붙인 것도 이전 선행연구와는 다른 점이다.

2009년도 조사연구에서는 강력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56.4%)이 가족이·친척, 친구·애인 등 평소 알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지영·박형민, 2009 : 193), 이는 대략적으로 2006년도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도 조사결과와 역시 유사하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의 약 40% 가량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며 살고 있다는 결과¹⁴⁾(앞의 문헌 : 193-194)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정교한 심리학적 척도를 이용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의 정신건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집단보다 높고 정신질환자집단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앞의 문헌 : 93-102)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¹⁵⁾.

한편, 2009년도 조사연구는 2006년도에 나타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보호기관에 대한 인지의 정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사실(앞의 문헌 : 196)을 확인하는 연구이기도 하였다. 특히 학력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위에 위치한 계층에서의 인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¹⁶⁾(앞의 문

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정의에 범죄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들의 가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도 조사(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에서도 살인 범죄의 경우엔 부득불 조사대상을 피해자의 가족으로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좀 더 본격적인 의미에서 피해자 가족까지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9년 조사연구에서도 양적연구의 경우엔 피해자와 그 가족을 구분하지 않기는 하였다. 단, 질적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지영·박형민, 2009 : 126-191).

- 14) 또한 이 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심리적 상처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려주었다(앞의 문헌 : 126-143).
- 15) 이와 같은 결과 말고도 2009년도 조사연구는 20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2006년도 조사연구에 비해—여러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주었다(앞의 문헌 : 194-195)고 할 수 있다.
- 16) 이와 같은 결과는 2006년도 조사연구 결과(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 207)와 대체로 유

현 : 196). 하지만, 이 조사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범죄피해지원 내용이 피해자의 “신변보호”¹⁷⁾와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나(앞의 문헌 : 197) “상담이나 대화 등 정신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던 2006년도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그와 같은 차이는 2009년도 조사연구가 오로지 강력범죄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지원욕구와 기타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지원욕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 조사연구들의 제한점

선행 조사연구들이 가진 제한점들에 대해 함부로 논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이 가진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다.

첫째, 기존의 두 선행조사연구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이라고 보기에는 표본수가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선행 연구자들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체가 그 자체로 일종의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워낙 어려운 조사라서 결과적으로 부득불 그렇게 된 것일 뿐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표본수의 문제는 범죄유형별로 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욕구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생기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논의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해야 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

사하다.

17) 특히 살인과 방화범죄 피해자들은 경제적 지원과 신변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연구 내용에 포함되는 심층면접 사례 중에서는 가해자의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대되었던 사례들도 있었고, 또 다른 범죄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김지영·박형민, 2009 : 197). 이 같이 나타난 결과로 인해 2009년도 조사연구의 결론에서는 특별히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마련의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앞의 문헌 : 200).

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 조사연구들의 문제점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본 조사연구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실태 각각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파악을 결여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그도 그럴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자체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던 시점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파악 자체가 난망했을 것이긴 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보상이 논의되어 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추가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 있을 수 있는 조건적 질문들이 누락된 점이 있고, 그에 따라 일부 결론들의 의미는 다소 축소되거나 불분명하게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피해자의 응답과 가해자의 응답을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혹은 피해자가 당한 범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거나 재판에까지 이르렀다거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항들이 설문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특히 언론보도 사실 여부의 경우에 조사결과를 어느 정도 축소·왜곡시킬 개연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율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 간단히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은 본 조사연구가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짚어낸 것들일 뿐이다. 다시 말해, 본 조사연구가 선행연구에 대해 추가·확장·수정할 부분과 관련해서만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물론 본 조사연구까지 피하기 어려운 연구의 제한점들, 특히 표본추출 등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범죄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제대로 된 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제대로 된 확률표집을 수행해 내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은 구태여 문제로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보완 및 본 조사연구의 방법

1.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보강

앞서 지적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과 관련해 본 조사연구는 그와 같은 문제를 미약하게나마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조사연구는 범죄피해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유사 선행 연구들(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김지영·박형민, 2009)에 비해 조사표본수를 크게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볼 수 있는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실태에 대해 좀 더 내실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유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하지 않도록 하였다.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었고, 2009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오로지 폭력범죄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여러 범죄유형들에 따른 실태의 차이 및 피해지원 욕구의 차이를 변별해 내는 데 있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치우치지 않도록 강도, 방화, 살인범죄, 폭행·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표본 확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기타범죄 피해자에 대한 표본 확보 노력을 통해 각 범죄피해 유형별 분석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표집에 신경을 썼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대상 기관이 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피해자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피해지원 단체나 기관을 통해 피해자지원센터 이외의 사례를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지원욕구 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보완으로 본 조사연구가 시도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들의 피해 실태 분석 부분에 이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각각에 대해 가해자, 보험회사, 국가나 사회단체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통해 겪은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 시도를 추가해 보고자 하였다.

2. 조사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추출

본 조사연구는 선행조사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범죄피해자들까지도 인구비례로 조사대상으로 삼는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와는 달리 오로지 범죄피해 경험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범죄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경, 더 나아가 범죄피해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욕구나 희망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로지 범죄피해 경험자들만을 이념형적 모집단으로 삼을 경우,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범죄피해조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 경험자들만 별도로 추출해 내는 방법은 인구비례 또는 무작위로 일반인들을 뽑아 그 중에 범죄피해자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파악해 내는 방법보다 훨씬 어렵다. 범죄암수 혹은 숨은 범죄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대략적인 규모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그 규모를 안다고 억지로 가정한다고 해도, 그 범죄피해자들을 그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한 분포로 골고루 표본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범죄피해자 목록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등록하거나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상의 난점 때문에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부득불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에 없었다. 본 조사연구의 경우에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다만, 선행 조사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주로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하다가 피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그와 같은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을 다변화 하고 표본수를 늘리고자 애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그와 같은 시도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당초 연구계획상 목표 표본수는 2,000사례 이상이었는데, 9월 중순 부터 12월 초순까지 무려 석 달에 가까운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표본수의 절반 정도(1,158사례)밖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는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조사연구가 봉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어려움이란, 범죄피해자들, 특히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이 심각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범죄피해자들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커다란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범죄피해자들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설문조사 자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이미 2009년도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 역시 난점으로 작용하였다. 접근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9년도 응답자와 올해 조사연구의 응답자는 상당 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와 응답 거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 고려하여 조사시점을 최대한 연말로 늦추었음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일부 범죄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항의를 받아들여 조사가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조사가 재개되었지만, 3개월에 가까운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계획상의 목표표본수를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중단되었던 조사연구를 재개하기 위해 부득불 범죄피해자들로 하여금 설문 자체가 고통스러울 경우 전면적인 응답거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문에 응하더라도 부분적인 응답거부 역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응답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이거나 높게 나타나기도 함으로써 표본추출의 결과가 확률표집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¹⁸⁾. 또한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들 중에서도 무응답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었다. 이는 본 조사연구결과의 한계이자 앞으로 수행될 유사한 조사연구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조사연구에서는 전국의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검찰피해자 지원실, 각 경찰서의 범죄피해자 관련 민원실,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각종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망라하여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사례를 추출하였다.

표 2-1 조사대상기관 목록과 각 기관에서의 표본사례수

단위 : 명

조사대상기관	사례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속초,고성,양양)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춘천)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홍성)	2
YMCA(성남)	3
YMCA(안양)	4
YMCA가정폭력상담소(경기)	12
YMCA가정폭력상담소(대구)	11
YMCA여성상담센터(광양)	1
YWCA(안양)	4
가정법률상담소(제주)	2
가정폭력상담소(강남)	1
가정폭력상담소(강릉)	9
가정폭력상담소(거제)	7
가정폭력상담소(경기북부)	4
가정폭력상담소(경남)	8
가정폭력상담소(경북)	2
가정폭력상담소(군산)	4

18) 더 기본적으로는 범죄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서 확률표집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이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가정폭력상담소(사하)	11
가정폭력상담소(시흥)	6
가정폭력상담소(안동)	10
가정폭력상담소(예산)	4
가정폭력상담소(은평)	9
가정폭력상담소(익산)	1
가정폭력상담소(하남)	5
가정폭력상담소(홍성)	1
가족사랑(영남)	2
가족상담센터(공주)	7
가족상담소(경남)	3
가족상담소(홍천)	3
검찰피해자지원실(순천)	1
검찰피해자지원실(홍성)	1
경찰서(강남)	5
경찰서(강동)	3
경찰서(관악)	2
경찰서(동작)	1
경찰서(마포)	2
경찰서(방배)	3
경찰서(영등포)	2
경찰서(용산)	2
경찰서(은평)	1
광주여성민우회다솜누리(광주)	1
늘푸른상담센터(전남)	5
모자일시보호소(경남)	18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강릉)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기북부)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남)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고양,파주)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공주,청양)	8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군산,익산)	6
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천,구미)	13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남원,순창,장수)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경북)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서부)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밀양,창녕)	8
범죄피해자지원센터(부천,김포)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주,문경,예천)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산)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남부)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북부)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중앙센터)	1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속초,고성,양양)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원)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산,광명,시흥)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산지청)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양)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울산양산)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천)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흥)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남동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주)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제주)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청주)	1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춘천)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충남)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통영,거제,고성)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포항)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홍성)	13
법률구조공단(가평지소)	2
법률구조공단(강원)	3
법률구조공단(강진)	1
법률구조공단(거창)	1
법률구조공단(경기)	2
법률구조공단(경북)	8
법률구조공단(고양)	3
법률구조공단(광주)	7
법률구조공단(군산)	1
법률구조공단(김천)	1
법률구조공단(남원)	1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법률구조공단(남해)	4
법률구조공단(대구)	7
법률구조공단(대전)	5
법률구조공단(목포)	1
법률구조공단(무주)	1
법률구조공단(문경)	1
법률구조공단(밀양)	4
법률구조공단(부산)	7
법률구조공단(서울)	7
법률구조공단(서울남부)	6
법률구조공단(서울동부)	5
법률구조공단(서울북부)	2
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	11
법률구조공단(서천)	4
법률구조공단(속초)	1
법률구조공단(수원)	2
법률구조공단(안동)	1
법률구조공단(안양)	1
법률구조공단(여주출장소)	1
법률구조공단(영덕)	1
법률구조공단(영동)	2
법률구조공단(영월센터)	1
법률구조공단(영주)	1
법률구조공단(울산)	3
법률구조공단(울진)	1
법률구조공단(인천)	5
법률구조공단(장수)	4
법률구조공단(장흥)	1
법률구조공단(전남)	2
법률구조공단(전북)	1
법률구조공단(전주)	1
법률구조공단(정읍)	1
법률구조공단(제주)	4
법률구조공단(진주)	7
법률구조공단(진천)	2
법률구조공단(창원)	6

법률구조공단(천안)	4
법률구조공단(청송)	1
법률구조공단(청주)	1
법률구조공단(춘천)	5
법률구조공단(충청)	2
법률구조공단(해남)	1
법률구조공단(홍성센터)	1
변호사사무실	2
사이버수사대(전북)	1
생명의전화(울산)	3
살림 가정폭력 상담소(전북)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대구)	5
성폭력상담소(경남)	1
성폭력상담소(광주)	2
성폭력상담소(여수)	5
성폭력상담소(울산)	4
성폭력상담소(전남)	10
성폭력상담소(전북)	6
성폭력상담소(청주)	3
성폭력상담소(평택)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꿈밭에서사람들"	2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	5
여성긴급전화1366(전북)	2
여성노동자회(전북)	1
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광주)	1
여성상담센터(광양)	5
여성상담센터(목포)	5
여성상담센터(여수)	5
여성상담센터(영광)	11
여성의 쉼터(수원)	2
여성의전화(경기)	5
여성의전화(성남)	3
여성의전화(수원)	11
여성의전화(시흥)	2
여성의전화(안양)	11
여성의전화(청주)	7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여성의집(창원)	5
여성인권지역센터 '살림'(부산)	3
여성인권지원센터(전남)	1
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	2
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	11
여성종합상담소(구미)	3
원스톱지원센터(강원)	5
원스톱지원센터(경기)	29
원스톱지원센터(경남)	27
원스톱지원센터(경북)	19
원스톱지원센터(광주)	11
원스톱지원센터(서울)	36
원스톱지원센터(인천)	12
원스톱지원센터(전남)	19
원스톱지원센터(전북)	85
원스톱지원센터(제주)	5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인천)	13
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	6
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	5
장애인성폭력상담소(마산)	5
장애인성폭력상담소(성남)	3
장애인성폭력상담소(아산)	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남)	4
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남)	5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8
해바라기아동센터(강원)	8
해바라기아동센터(경남)	7
해바라기아동센터(광주)	7
해바라기아동센터(대구, 경북)	3
해바라기아동센터(부산)	20
해바라기아동센터(서울)	2
해바라기아동센터(인천)	5
해바라기아동센터(전남)	10
해바라기아동센터(전북)	12
해바라기아동센터(충청)	12
합계	1,158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거의 석 달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이 각 해당 기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접촉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고, 더 나아가 조사 자체가 자칫 범죄피해의 아픈 경험을 되살리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줄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와중에 실제로도 조사 진행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반발하거나 설문조사 자체를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태들도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여러 피해자 지원시설 및 기관을 통해 1,158명¹⁹⁾의 범죄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을 면접하여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의 경우, 애초에는 대규모 면접인원을 동원하여 범죄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면접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지원 기관에 가끔씩만 들르는 범죄피해자들과 일일이 대면면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결국엔 많은 경우 조사대상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조사방법을 써야만 했다. 이는 주로 피해지원 기관의 상담원이나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맡긴 다음 피해자들이 해당 기관을 찾아올 경우 설문지에 응답하게끔 한 뒤 그렇게 모인 설문지를 직접 수거해 오거나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협조뿐만 아니라 각 개별 기관의 협조를 별도로 얻어야만 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응답 거부 사례들과 더불어 대면면접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는 조사결과에서 무응답 사례가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사대행업체인 리서치21을 통해 일정 부분까지는 추후의 연락을 통해 무응답 사례의 수를 많이 줄이긴 하였으나,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무응답의 경우엔 그대로 인정하고 자료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3) 자료의 윤곽 및 분석의 기본틀

본 조사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윤곽을 몇 가지 표로 요약해서 제

19) 마감 이후에 들어온 설문지들도 제법 있으나 부득불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표 2-2>에는 본 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한 지역들의 분포이다. 표를 보면, 서울지역이 134명(11.6%), 부산이 52명(4.5%), 인천이 42명(3.6%), 대구가 42명(3.6%), 광주 35명(3.0%), 대전 10명(0.9%), 울산 15명(1.3%), 경기 164명(14.2%), 강원 65명(5.6%), 충북 45명(3.9%), 충남 63명(5.4%), 전북 154명(13.3%), 전남 111명(9.6%), 경북 79명(6.8%), 경남 126명(10.9%), 제주 21명(1.8%)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언뜻 보아도 지역별 인구 규모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어긋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차원에서 언급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범죄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때때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지역별로 분포하는 범죄피해자들의 수가 지역별 인구 규모와 어긋날 수 있다. 둘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응답 거부 및 기관차원에서의 조사협조 거부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몇몇 조건을 달아 조사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혹은 기관별로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의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2-2 조사지역

단위 : 명, %

조사지역	사례수	비율
서울	134	11.6
부산	52	4.5
인천	42	3.6
대구	42	3.6
광주	35	3.0
대전	10	0.9
울산	15	1.3
경기	164	14.2
강원	65	5.6
충북	45	3.9
충남	63	5.4
전북	154	13.3
전남	111	9.6
경북	79	6.8

경남	126	10.9
제주	21	1.8
합계	1,158	100.0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볼 때, 이상과 같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표본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의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유형별로 혹은 범죄피해자가 의탁하고 있는 기관별로 경험 및 태도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응답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들의 전체 의견은 그 자체로 일반화된 결론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만 제시하고, 주로 범죄유형별 혹은 기관별 응답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피해자들만 조사하는 경우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 연구들에서 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호적인 응답이 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았으니 그와 같은 우호적인 응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은 피해자를 수소문해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신 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을 표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 사이의 여러 가지 경험 및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음 <표 2-3>은 설문지에서의 조사 대상기관 분류방식에 대한 응답분포이다. 표본의 조사대상기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1,158명 중 283명)이고, 검찰 피해자지원실은 0.2%(2명), 경찰 인권 보호센터는 1.9%(22명), 법률구조공단은 13.7%(159명), 가정폭력 상담소는 18.4%(213명), 성폭력 상

답소는 5.7%(66명), 아동관련 상담소는 7.4%(86명), 기타는 28.2%(327명)이다.

표 2-3 조사대상기관

단위 : 명, %

조사대상기관	사례수	비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83	24.4
검찰(피해자지원실)	2	0.2
경찰(인권보호센터)	22	1.9
법률구조공단	159	13.7
가정폭력상담소	213	18.4
성폭력상담소	66	5.7
아동관련상담소	86	7.4
기타	327	28.2
합계	1,158	100.0

하지만,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위 <표 2-3>의 내용을 재분류하여 <표 2-4>와 같이 만든 다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여기서 국가기관 범주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포함되고, 상담소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아동관련상담소가 포함된다.

표 2-4 조사대상기관의 유형분포

단위 : 명(%)

조사대상유형	빈도(%)
피해자지원센터	283(24.4)
국가기관	183(15.8)
상담소	365(31.5)
기타	327(28.2)
합계	1,158(100)

한편, 본 조사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에 있어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들의 경험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체로

조사된 사례의 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그와 같은 시도의 의미가 많이 삭감되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범죄유형의 경우, 원래의 설문문항에는 강도, 폭행상해(가정폭력제외), 가정폭력, 살인, 성범죄, 방화, 유괴·납치·감금, 기타의 여덟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그 구체적인 분포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의 <표 3-1> 참조). 하지만, 각 유형별로 어떤 유형은 사례가 많고, 어떤 유형은 사례가 적었던 탓에 원래 설문문항의 분류와는 달리 다음 <표 2-5>와 같이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표 2-5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분포

단위 : 명(%)

범죄유형	빈도(%)
강력범죄	404(34.9)
가정폭력	178(15.4)
성폭력	372(32.1)
기타	204(17.6)
합계	1,158(100)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 가족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같은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인지 가족인지에 따라서 응답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범죄피해 당사자와 범죄피해자 가족의 응답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의견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응답자를 피해 당사자 본인과 피해자 가족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 <표 2-6>과 같은 분포로 나타난다.

<표 2-6>을 보면, 전체 1,158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범죄피해 당사자가 직접 응답한 경우는 731명(63.1%), 범죄피해자의 가족이 응답한 경우는 427명(36.9%)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응답자의 피해당사자 본인여부

단위 : 명(%)

본인여부	빈도(%)
본인	731(63.1)
가족	427(36.9)
합계	1,158(100)

끝으로, 피해당사자의 성별 분포는 <표 2-7>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대체로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남성피해자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다. 즉 성별이 확인된 응답자 1,114명 중에서 남자는 306명(27.5%), 여자는 808명(69.8%)이다. 이는 조사대상기관에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표본에 많이 포함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성별 분포는 그 자체로 모집단의 범죄피해자의 성별분포라고 보기 어렵고, 남녀간 응답 차이를 살펴보는 것 역시 그다지 의미 있는 분석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성별 차이보다는 범죄유형별 차이가 더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한다.

표 2-7 피해당사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본인여부	빈도(%)
남자	306(27.5)
여자	808(69.8)
합계	1,114(100)

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위 <표 2-4>, <표 2-5>, <표 2-6>에서의 분류방식은 본고에서의 주된 분석을 위한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거나 가족들이 주로 의탁하고 있는 기관들의 유형에 따른 분석, 범죄유형별 분석, 그리고 범죄피해자 당사자 혹은 가족에 따른 분석이 본 보고서의 주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중 범죄유형별 분석과 기관별 분석은 기관별로 어느 정도 범죄유형이 구별되는 양상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언뜻 서로 별다른 차

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양자가 중첩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관별 차이 검증은 기관별로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지원경험의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 후유증을 회복하거나 범죄피해지원 욕구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제3장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본 장에서는 범죄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의 실태 및 피해의 치료·회복 실태에 관해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범죄피해 경험을 범죄유형별, 연령별, 발생장소별, 가해자별 등으로 살펴보고, 제2절에서 제4절까지는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정도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난 다음, 제5절에서는 수사·재판과정 및 가해자·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실태를, 제6절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관계의 손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1절 범죄피해 경험

1. 설문문항의 범죄유형 및 범죄유형 재분류

본 조사연구는 범죄피해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유사 선행연구들(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김지영·박형민, 2009)에 비해 조사표본수를 크게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볼 수 있는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실태에 대해 좀 더 내실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범죄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그 각각의 내용들

에 대해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 <표 3-1>에는 조사에 응답한 피해자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범죄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1,158명의 응답자 중에서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을 응답하지 않은 30명을 제외하고 1,128명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범죄²⁰)로서 33%(372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폭행·상해²¹)로서 21.7%(245명)이다. 가정폭력²²)도 15.7%(177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폭력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1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분포

단위 : 명(%)

범죄유형	빈도(%)
강도	101 (9.0)
폭행상해(가정폭력 제외)	245 (21.7)
가정폭력	178 (15.7)
살인	54 (4.8)
성범죄	372 (33.0)
방화	5 (0.4)
유괴납치감금	2 (0.2)
기타	172 (15.2)
합계	1,128(100.0)

그 밖에 강도²³)(9%, 101명), 살인²⁴)(4.8%, 54명)의 비율도 낮지 않았다. 이처

20) 참고로, 2006년도 조사연구(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 89)에서는 조사대상에 성범죄피해자가 68명(13.8%)이 포함되었고, 2009년도 조사연구(김지영·박형민, 2009 : 83)에서는 46명(25.8%)이 포함되었다.

21)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 폭력범죄피해자가 107명(21.8%)이 포함되었고, 2009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 가정폭력범죄피해자가 28명(5.7%)이 포함되었고, 2009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3)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 강도범죄피해자가 24명(4.9%)이 포함되었고, 2009년도

럼 피해범죄유형은 대부분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기타가 172명으로 15.2%에 달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타²⁵⁾에는 사기(94명)와 절도(48명, 소매치기포함)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범죄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 <표 3-1>의 분류로는 여러 가지 분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범죄유형을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여 차후의 여러 분석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위 표에서 강도, 살인, 폭행·상해, 그리고 기타에 포함되어 있던 살인미수(4명)를 모두 합쳐 “강력범죄”(총 404명)라고 명명하였다. 이 범주에는 방화나 유괴·납치·감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본고에서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강력범죄”를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²⁶⁾. 한편, 가정폭력(178명)과 성범죄(372명)는 그 자체로 사례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표 3-1>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유형의 범죄들은 무응답까지 포함하여 기타(204명)로 포함하였다.

조사대상기관별로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재분류한 범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 유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기관별로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려준다.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행상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비율이 60.8%(172명)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도 17.3%(49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의 국가기관에

조사연구에서는 36명(20.2%)이 포함되었다.

- 24) 살인범죄피해자(응답자는 피해자의 가족)는 선행연구에서의 표본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59명(12.0%), 2009년도 조사에서는 56명(31.5%)의 살인범죄 피해자 가족이 포함되었다. 아마도 살인범죄피해가족 사례수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 25) 기타에는 이 밖에도 살인미수(2명), 과실치상(1명), 개인정보도용(2명), 협박(2명), 교통사고(14명), 권리방해(1명), 스토킹(1명), 임금체불(1명), 추락사(1명), 파손(1명), 횡령(1명) 등이 포함되었다.
- 26)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강력범죄”를 분류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이 주로 신체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서는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64.5%(118명)에 이르고 다음은 강력범죄로서 30.6%(56명)이다. 상담소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아동관련상담소 등이 해당하는데, 성폭력(46.8%, 171명)과 가정폭력(30.7%, 112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 조사대상기관과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범죄유형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강력범죄	172(60.8)	56(30.6)	70(19.2)	106(32.4)	404(34.9)
가정폭력	17 (6.0)	4 (2.2)	112(30.7)	45(13.8)	178(15.4)
성폭력	49(17.3)	5 (2.7)	171(46.8)	147(45.0)	372(32.1)
기타	45(15.9)	118(64.5)	12 (3.3)	29 (8.9)	204(17.6)
합계	283 (100)	183 (100)	365 (100)	327 (100)	1,158 (100)
카이제곱값	570.1(df=9) ***				

기타 기관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당한 피해유형으로는 성폭력(45%, 147명)과 강력범죄(32.4%, 106명)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타에 해당하는 기관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스톱지원센터가 248건으로서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대상기관별 차이는 많은 경우 조사를 시행한 기관의 성격이 특정 범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보면, 강력범죄는 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중첩되는 경향이 강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주로 상담소와 중첩되는 경향이 대체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강한 중첩성은 여전히 경향성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완전한 중첩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즉, 범죄피해자들이 주로 의탁하고 있는 기관과 범죄유형 사이의 완벽한 일치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범죄유형별 분석과 기관별 분석 사이에서 역시 완벽한 일치가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조사대상 범죄피해자들의 연령대

<표 3-3>에는 범죄사건의 피해를 당한 당시 피해자의 연령분포²⁷⁾가 제시되어 있다.

표 3-3 피해자의 피해당시 연령분포

단위 : 명(%)

연령대	빈도(%)
10세 미만	64 (5.7)
10대(10세 이상 20세 미만)	270 (24.0)
20대	286 (25.4)
30대	221 (19.6)
40대	161 (14.3)
50대 이상	125 (11.1)
합계	1,127(100.0)

주로 젊은 층에서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가 286명(25.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10대(24%)의 비율이 높았다. 피해당시 10세 이하²⁸⁾인 경우도 64건(5.7%)으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3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피해를 당한 비율이 낮아졌다.

<표 3-4>는 피해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범죄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평균 차이검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는 앞의 <표 3-3>의 응답범주에 10세 미만부터 50대 이상까지에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를 부여²⁹⁾

27) 본 조사에서는 범죄피해당사자의 범죄피해당시 연령과 응답자의 현재 연령을 모두 질문하였다. 응답자가 가족인 경우엔 범죄피해자와 응답자의 연령이 다를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표 3-3>에 제시한 연령분포는 응답자의 연령이 아니라 범죄피해 당사자들의 연령이다.

28) 본 조사연구에서는 아동범죄상담기관 등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피해자 사례가 선행연구보다 많이 표집되었다. 참고로, 2006년도 조사연구(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 82)에서는 10대가 22명(4.7%)이었고 10대 미만은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 2009년도 조사(김지영·박형민, 2009 : 79)에서는 10대가 25명(14.1%), 10세 미만이 6명(3.4%)이었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연구에서는 아동피해자 사례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아동피해자의 특성을 성인피해자의 특성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29) 이는 10세 미만 범주를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다.

한 것에 대한 평균값이다. 피해당시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가정폭력으로 4.14인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30세가 좀 넘는다는 의미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장 높은 연령분포를 보이는 것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아내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4 피해범죄유형별 피해당시 연령 차이검증 결과

단위 : 명(%)

범죄유형	사례수	피해당시 평균연령 (표준편차)
강력범죄	398	3.86 (1.38)
가정폭력	169	4.14 (1.05)
성폭력	365	2.46 (1.08)
기타	195	3.92 (1.35)
합계	1127	3.46 (1.42)
F값	119.36 ***	

※ 평균연령은 각 연령대에 부여된 점수의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이다.

다음으로 높은 연령평균을 보이는 것이 기타로서 3.92이다. 이는 20대 후반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연령평균을 보이는 것은 성폭력이다. 평균점수는 2.46인데, 이는 아동이 당한 성폭력도 포함되어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범죄피해 시기와 장소

<표 3-5>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기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표 3-5 범죄피해의 발생연도 분포

단위 : 명(%)

발생연도	빈도(%)
금년	496 (44.8)
3년 이내	349 (31.5)
3년 초과	262 (23.7)
합계	1,107(100.0)

조사년도인 올해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96건(44.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년 이내로서 349건(31.5%)이었으며, 피해를 당한지 3년이 초과한 경우도 262건(23.7%)에 이르렀다.

<표 3-6>에서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사건의 발생한 지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444건(39%)이었으며, 중소도시에서 발생한 사건도 466건(40.9%)으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응답은 228건으로 20.2%였다.

표 3-6 범죄피해 발생지역 분포

단위 : 명(%)

발생지역	빈도(%)
서울 수도권 위성도시,광역시	444 (39.0)
수도권 이외의 중소도시	466 (40.9)
농어촌지역	228 (20.0)
해외	1 (0.1)
합계	1,139(100.0)

<표 3-7>은 피해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분포를 보여준다.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430명으로 37.8%이며, 평소에 자주 다니던 곳(유치원, 학교, 직장, 단골 장소, 통근 통학길 등)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 그 다음으로서 327명(28.8%)이다. 그 밖에서 가끔 가는 곳(13.2%), 처음 간 장소(11.3%), 가해자의 집(8.9%)의 분포를 보였다.

표 3-7 범죄피해 발생장소 분포

단위 : 명(%)

피해장소	빈도(%)
피해자의 집 내부	430(37.8)
가해자의 집	101 (8.9)
평소에 자주 다니던 곳(유치원, 학교, 직장, 단골 장소, 통근 통학길 등)	327(28.8)
가끔 가는 곳	150(13.2)
처음 간 장소	129(11.3)
합계	1137(100)

<표 3-8>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범죄피해의 발생장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범죄유형별로 주로 피해를 당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강력범죄의 경우 평소에 자주 다니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36.6%(147명)이며,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곳이 피해자의 집 내부로서 27.6%(111명)이다. 가정폭력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압도적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가 높는데 86.2%(150명)이다. 성폭력은 평소에 다니던 곳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28.1%(103명)이며, 피해자의 집이 27%(99명)이다. 다른 유형의 범죄유형에 비해서 가해자의 집의 비율이 13.9%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기타 범죄의 경우 평소에 자주 다니던 곳이 37.9%(74명), 피해자의 집 내부가 35.9%(70명)로 가장 높았다.

표 3-8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 발생장소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피해장소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피해자의 집 내부	111(27.6)	150(86.2)	99(27.0)	70(35.9)	430(37.8)
가해자의 집	19 (4.7)	16 (9.2)	51(13.9)	15 (7.7)	101 (8.9)
평소 자주 다니던 곳	147(36.6)	3 (1.7)	103(28.1)	74(37.9)	327(28.8)
가끔 가는 곳	76(18.9)	4 (2.3)	49(13.4)	21(10.8)	150(13.2)
처음 간 장소	49(12.2)	1 (0.6)	64(17.5)	15 (7.7)	129(11.3)

합계	402 (100)	174 (100)	366 (100)	195 (100)	1,137 (100)
카이자승값	266.4(df=12) ***				

4.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 3-9>부터 <표 3-16>까지는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 <표 3-9>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준다.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823명으로 71.8%인 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323명으로 28.2%에 이른다.

표 3-9 사건 가해자의 인지여부

단위 : 명(%)

가해자 인지여부	빈도(%)
그렇다	823 (71.8)
아니다	323 (28.2)
합계	1,146(100.0)

<표 3-10>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를 알고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범죄유형별로 가해자를 인지하는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알고 있는 비율이 98.3%로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성폭력이 가해자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는데, 77.6%(287명)가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 강력범죄의 경우 64.2%(258명), 기타의 경우 53.5%(107명)가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

표 3-10 피해범죄유형과 사건 가해자의 인지여부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인지여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렇다	258(64.2)	171(98.3)	287(77.6)	107(53.5)	823(71.8)
아니다	144(35.8)	3(1.7)	83(22.4)	93(46.5)	323(28.2)
합계	402(100)	174(100)	370(100)	200(100)	1146(100)
카이자승값	111.0(df=3) ***				

<표 3-11>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가족 가운데 한사람이 33.3%(26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다음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사건 발생 시에 처음 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132명으로 16.3%이다. 안면 있는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114명으로 14.1%이고, 직장이나 학교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이 95명으로 11.7%이다

표 3-1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분포

단위 : 명(%)

관계	빈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	269(33.3)
친척 가운데 한 사람	22 (2.7)
친구나 애인	61 (7.5)
직장이나 학교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	95(11.7)
안면이 있는 동네사람	114(14.1)
가족이나 회사동료는 아니지만 잘 알고 지내던 사람	28 (3.5)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사건 발생 전에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63 (7.8)
전혀 모르는 사람(사건 발생시 처음 본 사람)	132(16.3)
기타	25 (3.1)
합계	809 (100)

<표 3-12>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 차이

를 보이는지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2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관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가족 가운데 한 사람	52(20.3)	158(93.5)	49(17.6)	10 (9.5)	269(33.3)
친척 가운데 한 사람	8 (3.1)	1 (0.6)	12 (4.3)	1 (1.0)	22 (2.7)
친구나 애인	24 (9.4)	6 (3.6)	20 (7.2)	11(10.5)	61 (7.5)
직장이나 학교관련 지인	29(11.3)	0 (0.0)	47(16.8)	19(18.1)	95(11.7)
안면이 있는 동네사람	46(18.0)	2 (1.2)	55(19.7)	11(10.5)	114(14.1)
기타 잘 알고 지내던 사람	14 (5.5)	0 (0.0)	10 (3.6)	4 (3.8)	28 (3.5)
몇 번 만난 적 있는 사람	24 (9.4)	0 (0.0)	23 (8.2)	16(15.2)	63 (7.8)
전혀 모르는 사람	57(22.3)	0 (0.0)	47(16.8)	28(26.7)	132(16.3)
기타	2 (0.8)	2 (1.2)	16 (5.7)	5 (4.8)	25 (3.1)
합계	256 (100)	169 (100)	279 (100)	105 (100)	809 (100)
카이자승값	392.3(df=24) ***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도가 상당히 높는데, 이는 가정폭력의 분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가운데 한 사람의 비율이 93.5%로서 다른 범죄유형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인다. 나머지 세 범죄유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강력범죄 22.3%, 성폭력 16.8%, 기타 26.7%), 안면이 있는 동네사람(강력범죄 18%, 성폭력 19.7%, 기타 10.5%), 직장이나 학교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비율(강력범죄 11.3%, 성폭력 16.8%, 기타 18.1%)이 다른 범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죄와 성폭력에서는 가족 가운데 한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이 20.3%와 17.6%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3>에서 가해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95.4%(768명)에 이르며, 여자의 비율은 4.6%(37명)에 불과하다.

표 3-13 가해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가해자 성별	빈도(%)
남자	768 (95.4)
여자	37 (4.6)
합계	805(100.0)

<표 3-14>에서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의 성별분포 차이를 보았다.

표 3-14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성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가해자 성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남자	247(96.9)	166(98.2)	272(97.5)	83(81.4)	768(95.4)
여자	8 (3.1)	3 (1.8)	7 (2.5)	19(18.6)	37 (4.6)
합계	255 (100)	169 (100)	279 (100)	102 (100)	805 (100)
카이자승값	52.9(df=3)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은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각각 96.9%, 98.2%, 97.5%로서 매우 높았지만 기타범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81.4%로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의 비율이 18.6%³⁰⁾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5>는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대략적인 연령의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서 240명으로 29.4%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30대로서 211명, 25.9%이다. 이러한 분포는 앞서 피해자의 연령대가 10대와 20대에 몰려 있던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로 30-40대가 10-20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30) 기타범죄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주된 요인은 교통사고와 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경우 유효응답자 52명 중 12명(23.1%)이 여성이었고, 교통사고의 경우엔 유효응답자 9명 중 3명(33.3%)이 여성이었다. 기타범죄로 분류된 이 외 나머지 범죄유형들에서는 남성 가해자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표 3-15 가해자의 연령대 분포

단위 : 명(%)

가해자연령	빈도(%)
10대	84 (10.3)
20대	94 (11.5)
30대	211 (25.9)
40대	240 (29.4)
50대	141 (17.3)
60대 이상	45 (5.5)
합계	815(100.0)

가해자의 연령대 분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의 연령대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3-16>에 제시되어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 40대(27.5%)와 30대(25.6%)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20대(16.3%)와 50대(15.5%)의 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 전반적으로 연령 분포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40대(38%)와 54(31.6%)에 집중되어 있지만 50대(23.4%)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3-16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연령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가해자연령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10대	24 (9.3)	2 (1.2)	50(17.7)	8 (7.8)	84(10.3)
20대	42(16.3)	2 (1.2)	39(13.8)	11(10.7)	94(11.5)
30대	66(25.6)	54(31.6)	60(21.2)	31(30.1)	211(25.9)
40대	71(27.5)	65(38.0)	76(26.9)	28(27.2)	240(29.4)
50대	40(15.5)	40(23.4)	37(13.1)	24(23.3)	141(17.3)
60대이상	15 (5.8)	8 (4.7)	21 (7.4)	1 (1.0)	45 (5.5)
합계	258 (100)	171 (100)	283 (100)	103 (100)	815 (100)
카이자승값	77.7(df=15) ***				

성폭력도 40대(26.9%)와 30대(21.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10대 가

해자의 비율이 17.7%로 상당히 높다는 점이 다른 범죄유형과 보이는 차이이다. 기타 범죄에서는 30대가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40대로서 27.3%이다.

5. 범죄피해의 언론보도

<표 3-17>은 피해를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실태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80.3%가 이에 해당한다³¹⁾.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합해서 8.1%로서 작게 보도되었다가 5.2%(58명),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가 2.9%(32명)이다.

표 3-17 피해사건의 언론보도 실태

단위 : 명(%)

언론보도 실태	빈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901 (80.3)
보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131 (11.7)
보도되기는 하였지만 작게 보도되었다	58 (5.2)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32 (2.9)
합계	1,122(100.0)

31) 선행연구들에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문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분석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언론보도로 인한 순수한 피해를 측정해 내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마치 언론에 보도되고도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오인될 소지를 만들어 주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2006년도 조사연구에서 언론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2%, 그렇지 않은 경우가 88.8%였는데(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 150), 이 중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한 88.8%에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도 피해가 없었던 사례와 언론보도 자체가 없었던 사례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2009년도 조사연구의 경우(김지영·박형민, 2009 : 119)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다.

<표 3-18>은 조사대상기관별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조한 사례는 11.1%가 언론에 작게 보도되었고, 4.3%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표 3-18 조사대상기관과 피해사건의 언론보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언론보도 실태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185(66.3)	150(84.3)	301(86.0)	265(84.1)	901(80.3)
정확히 잘 모르겠다	51(18.3)	16 (9.0)	30 (8.6)	34(10.8)	131(11.7)
작게 보도되었다	31(11.1)	6 (3.4)	12 (3.4)	9 (2.9)	58 (5.2)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12 (4.3)	6 (3.4)	7 (2.0)	7 (2.2)	32 (2.9)
합계	279 (100)	178 (100)	350 (100)	315 (100)	1,122 (100)
카이자승값	52.8(df=9) ***				

이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된 것에 비해서 언론에 보도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나머지 3유형의 기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작게 보도된 것과 크게 보도된 것을 합해서 국가기관은 6.8%, 상담소는 5.4%, 기타 기관은 5.1%가 피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9>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언론보도의 실태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3-19 피해범죄유형별과 피해사건의 언론보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언론보도 실태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320(80.4)	151(89.3)	266(74.1)	164(83.7)	901(80.3)
정확히 잘 모르겠다	44(11.1)	14 (8.3)	54(15.0)	19 (9.7)	131(11.7)
작게 보도되었다	24 (6.0)	2 (1.2)	27 (7.5)	5 (2.6)	58 (5.2)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10 (2.5)	2 (1.2)	12 (3.3)	8 (4.1)	32 (2.9)
합계	398 (100)	169 (100)	359 (100)	196 (100)	1,122 (100)
카이자승값	25.0(df=9) **				

성폭력이 10.8%(작게 보도되었다 7.5%, 크게 보도되었다 3.3%)로 보도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력범죄가 8.5%(작게 보도되었다 6%, 크게 보도되었다 2.5%)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가 2.4%로 보도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제2절 신체적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1. 신체적 피해의 정도

<표 3-20>은 범죄사건의 피해를 당함으로 어떤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 분포를 보여준다.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비율은 33.4%(375명)로 약 1/3 정도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당한 경우가 24.9%(279명)인 반면,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도 23.6%(265명)에 이르렀다. 입원이 필요한 중상을 당한 경우가 11.4%로 128명이었으며, 실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도 3.5%였다. 이러한 비율은 범죄피해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대략 15%정도가 됨을 보여준다.

표 3-20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분포

단위 : 명(%)

신체적 피해 정도	빈도(%)
신체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	375 (33.4)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	279 (24.9)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	265 (23.6)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수술 등 포함)	128 (11.4)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중상	30 (2.7)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 혹은 식물인간 상태	6 (0.5)
실제 사망	39 (3.5)
합계	1,122(100.0)

<표 3-21>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정도를 교차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통계적 유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된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18.1%(50명),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증상이 6.9%(19명), 실제로 사망한 경우도 12.3%(34명)으로서 38.4%가 상당히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 국가기관의 경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아서 62.4%(111명)에 이르며 가벼운 상해가 16.9%(30명)로서 대체로 신체적 피해가 없거나 가벼운 피해자들의 비율이 다른 기관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상담소의 경우 가벼운 상해가 31.7%(111명),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이 30%로서 이들의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높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보이고 있다.

표 3-21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신체적 피해 정도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신체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	63(22.8)	111(62.4)	91(26.0)	110(34.6)	375(33.4)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	40(14.5)	30(16.9)	111(31.7)	98(30.8)	279(24.9)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	67(24.3)	12 (6.7)	105(30.0)	81(25.5)	265(23.6)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수술 등 포함)	50(18.1)	18(10.1)	40(11.4)	20 (6.3)	128(11.4)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중상	19 (6.9)	3 (1.7)	2 (0.6)	6 (1.9)	30 (2.7)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 / 식물인간 상태	3 (1.1)	1 (0.6)	1 (0.3)	1 (0.3)	6 (0.5)
실제 사망	34(12.3)	3 (1.7)	0 (0.0)	2 (0.6)	39 (3.5)
합계	276(100)	178(100)	350(100)	318(100)	1122(100)
카이자승값	245.0(df=18) ***				

<표 3-22>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역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가 가장 적은 경우는 기타 범죄로서 75.6%가 피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다음이 성폭력으로 43%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강력범죄와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강력범죄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30.3%)의 비율과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도 8.5%로 높았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40.4%)이 가장 높고, 가벼운 상해(33.9%)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3-22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 당시 신체적 피해 정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신체적 피해 정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신체적 피해 없음	65(16.3)	10 (5.8)	154(43.0)	146(75.6)	375(33.4)
가벼운 상해	91(22.8)	58(33.9)	112(31.3)	18 (9.3)	279(24.9)
통원치료 필요 중경상	121(30.3)	69(40.4)	69(19.3)	6 (3.1)	265(23.6)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72(18.0)	28(16.4)	19 (5.3)	9 (4.7)	128(11.4)
장애 정도의 중상	13 (3.3)	3 (1.8)	3 (0.8)	11 (5.7)	30 (2.7)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	4 (1.0)	1 (0.6)	0 (0.0)	1 (0.5)	6 (0.5)
실제 사망	34 (8.5)	2 (1.2)	1 (0.3)	2 (1.0)	39 (3.5)
합계	400(100)	171(100)	358(100)	193(100)	1122(100)
카이자승값	382.5(df=18)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적 피해가 많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와 가정폭력임을 알 수 있다.

2. 신체적 피해의 회복기간

<표 3-23>은 신체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신체적 피해의 회복에 걸

린 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피해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123명으로 19%였으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5%(275명)가 1개월 이내에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3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분포

단위 : 명(%)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빈도(%)
신체적 피해가 있었지만 치료는 받지 못했다	123 (19.0)
1개월 미만	275 (42.5)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128 (19.8)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51 (7.9)
6개월 이상	70 (10.8)
합계	647(100.0)

다음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시간이 걸린 경우로서 19.8%(128명)였다. 회복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사람들도 70명으로서 10.8%에 이른다.

<표 3-24>는 조사대상기관별로 신체적 회복에 걸린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신체적 피해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담소(24.2%)와 기타(21.2%)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피해자지원센터와 국가기관에 회복의 기간이 오래 걸린 피해자의 비율이 높는데,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1.8%, 6개월 이상이 20.4%로 가장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고, 국가기관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1.3%, 6개월 이상이 12.9%로서 다른 두 기관의 경우보다 높았다.

표 3-24 조사대상기관과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치료를 못 받음	15 (9.9)	9(14.5)	58(24.2)	41(21.2)	123(19.0)
1개월 미만	52(34.2)	29(46.8)	104(43.3)	90(46.6)	275(42.5)
1개월-3개월	36(23.7)	9(14.5)	45(18.8)	38(19.7)	128(19.8)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3개월-6개월	18(11.8)	7(11.3)	15 (6.3)	11 (5.7)	51 (7.9)
6개월 이상	31(20.4)	8(12.9)	18 (7.5)	13 (6.7)	70(10.8)
합계	152 (100)	62 (100)	240 (100)	193 (100)	647 (100)
카이자승값	41.4(df=12) ***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지원센터와 국가기관의 경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상담소와 기타 기관의 경우 회복에 걸린 시간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앞의 두 기관에 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표 3-25>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회복에 걸린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강력범죄의 경우 80%정도가 3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 반면에 가정폭력은 그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림을 의미한다. 앞서 <표 3-22>에서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 신체적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성폭력과 기타 범죄의 경우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표 3-25>는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폭력과 기타 범죄는 합계의 숫자가 <표 3-22>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표 3-25 피해범죄유형과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신체적 피해 회복에 걸린 시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치료를 못 받음	47(16.4)	23(16.1)	48(26.8)	5(12.8)	123(19.0)
1개월 미만	119(41.6)	67(46.9)	77(43.0)	12(30.8)	275(42.5)
1개월-3개월	65(22.7)	42(29.4)	16 (8.9)	5(12.8)	128(19.8)
3개월-6개월	31(10.8)	5 (3.5)	9 (5.0)	6(15.4)	51 (7.9)
6개월 이상	24 (8.4)	6 (4.2)	29(16.2)	11(28.2)	70(10.8)
합계	286 (100)	143 (100)	179 (100)	39 (100)	647 (100)
카이자승값	64.0(df=12) ***				

그렇지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피해자가

성폭력은 16.2%(29명), 기타는 28.2%(11명)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양 극단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3. 신체적 피해 치료비용

<표 3-26>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자신이 부담한³²⁾ 치료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의 분포를 보여준다. 10만원 이하가 들었다는 비율이 30.7%(166명)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30.3%(164명)로 그 다음이다. 즉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 중에서 60%이상이 50만원 이하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그렇지만 300만원-1000만원이 31명(5.7%),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14명(2.6%)로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 엄청난 치료비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6 자비부담 치료비용 분포

단위 : 명(%)

자비부담	비율(%)
10만원이하	166 (30.7)
50만원이하	164 (30.3)
100만원이하	92 (17.0)
300만원이하	74 (13.7)
1000만원이하	31 (5.7)
1000만원초과	14 (2.6)
합계	541(100.0)

<표 3-27>은 앞으로 받을 치료까지 포함해서 치료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금액의 분포이다. 전반적으로 <표 3-26>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분포를 보이고 있다. 10만원 이하(15%), 50만원 이하(24.1%)의

32) 이는—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국한하여—국가나 사회단체의 지원 또는 보험 등으로 지급된 비용을 뺀 순수한 자기 부담 치료비용을 측정한 것이다.

비율이 줄어들었고, 300만원 이하(21.4%)와 1000만원 이하(15.5%), 1000만원 초과(8.5%)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치료비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용의 예상도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7 치료에 필요한 총비용 예상액 분포

단위 : 명(%)

예상금액	비율(%)
10만원이하	83 (15.0)
50만원이하	134 (24.1)
100만원이하	86 (15.5)
300만원이하	119 (21.4)
1000만원이하	86 (15.5)
1000만원초과	47 (8.5)
합계	555(100.0)

<표 3-28>은 조사대상기관별로 현재까지 자비부담한 치료비와 예상치료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3-27>에서 범주에 위에서부터 1부터 6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표 3-28 조사대상기관별 자비부담치료비 및 총비용예상액 차이검증결과

조사대상기관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자비부담	2.87(1.37)	2.84(1.55)	2.15(1.16)	2.04(1.21)	2.41(1.34)	15.62 ***
치료총비용	3.80(1.52)	3.54(1.51)	3.07(1.48)	2.75(1.46)	3.24(1.54)	14.97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현재까지 자비부담한 치료비의 기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현재까지 자비부담한 치료비에서 가장 많은 것은 피해지원센터이며 그 다음이 국가기관이다. 상담소와 기타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료부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총치료비용의 조사대상기관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는데, 치료비용이 높은 순서는 피해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기관의 순서였으며, 기관간의 평균차이가 자비부담 치료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치료비와 치료비 예상액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범죄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의 경우 기타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강력범죄의 순서이다. 성폭력이 가장 낮은 치료비가 들었다.

표 3-29 피해범죄유형별 자비부담치료비 및 총비용예상액 차이검증결과

피해범죄유형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자비부담	2,66(1.34)	2,16(1.14)	1,93(1.29)	2,79(1.53)	2,41(1.34)	10.91 ***
치료총비용	3,41(1.55)	2,71(1.46)	3,18(1.43)	3,78(1.74)	3,24(1.54)	7.37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치료총비용은 순서가 좀 달라진다. 기타범죄가 강력범죄가 높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사용된 치료비는 가장 적지만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표 3-30>부터 <표 3-38>까지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 보험회사, 국가나 공동단체에서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표 3-30>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80.2%(556명)에 이르러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대부분 가해자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보상해준 경우가

7.9%(55명), 절반 이상을 보상받은 경우가 6.1%(42명)이며,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은 경우가 5.8%(40명)에 불과하였다.

표 3-30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분포

단위 : 명(%)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비율(%)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556 (80.2)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보상해 주었다	55 (7.9)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 주었다	42 (6.1)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었다	40 (5.8)
합계	693(100.0)

<표 3-31>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이 달라지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기관별로는 보상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카이자승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건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표 3-31 조사대상기관과 가해자의 신체적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결과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당소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151(79.5)	49(76.6)	203(82.5)	153(79.3)	556(80.2)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보상해 주었다	17 (8.9)	2 (3.1)	18 (7.3)	18 (9.3)	55 (7.9)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 주었다	15 (7.9)	7(10.9)	12 (4.9)	8 (4.1)	42 (6.1)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었다	7 (3.7)	6 (9.4)	13 (5.3)	14 (7.3)	40 (5.8)
합계	190(100)	64(100)	246(100)	193(100)	693(100)
카이자승값	12.0(df=9), Not Significant.				

<표 3-32>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앞의 경우와는 달리 범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표 3-32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신체적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229(73.9)	127(79.9)	168(92.3)	32(76.2)	556(80.2)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보상해 주었다	35(11.3)	11 (6.9)	7 (3.8)	2 (4.8)	55 (7.9)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 주었다	25 (8.1)	11 (6.9)	1 (0.5)	5(11.9)	42 (6.1)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었다	21 (6.8)	10 (6.3)	6 (3.3)	3 (7.1)	40 (5.8)
합계	310(100)	159(100)	182(100)	42(100)	693(100)
카이자승값	30.3(df=9) ***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은 성폭력이 가장 높아서 92.3%(168명)가 가해자로부터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나머지 강력범죄, 가정폭력, 기타범죄는 75-80%사이에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적기는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였다.

<표 3-33>은 범죄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정도를 보여준다. 85.7%인 592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받은 경우가 7.8%(54명), 절반 이상 받은 경우가 4.5%(31명), 전액을 받은 경우가 2%(14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 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3-33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분포

단위 : 명(%)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비율(%)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592 (85.7)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급해 주었다	54 (7.8)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급해 주었다	31 (4.5)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급해 주었다	14 (2.0)
합계	691(100.0)

<표 3-34>에서 조사대상기관별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은 정도를 비교해볼 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담소에서 응답한 사람(90.7%)이 가장 많았다.

표 3-34 조사대상기관과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148(79.1)	49(76.6)	225(90.7)	170(88.5)	592(85.7)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보상해 주었다	18 (9.6)	9(14.1)	15 (6.0)	12 (6.3)	54 (7.8)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 주었다	15 (8.0)	3 (4.7)	6 (2.4)	7 (3.6)	31 (4.5)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었다	6 (3.2)	3 (4.7)	2 (0.8)	3 (1.6)	14 (2.0)
합계	187(100)	64(100)	248(100)	192(100)	691(100)
카이자승값	21.5(df=9) *				

국가기관에서 응답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76.6%로서, 그나마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전액을 보상받은 피해자의 비율도 국가기관(4.7%)이 가장 높고, 다음이 피해자지원센터(3.2%)였다.

<표 3-35>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비율을 분석한 결과로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3-35 피해범죄유형과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보험회사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253(81.9)	142(89.3)	171(94.5)	26(61.9)	592(85.7)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급해 주었다	30 (9.7)	11 (6.9)	5 (2.8)	8(19.0)	54 (7.8)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 을 지급해 주었다	21 (6.8)	3 (1.9)	3 (1.7)	4 (9.5)	31 (4.5)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급해 주었다	5 (1.6)	3 (1.9)	2 (1.1)	4 (9.5)	14 (2.0)
합계	309(100)	159(100)	181(100)	42(100)	691(100)
카이자승값	43.8(df=9) ***				

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성폭력으로서 94.5%(171명)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가정폭력의 경우도 89.3%(142명)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기타 범죄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는데, 약 40%정도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에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신체적 피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도를 보여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3-36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 피해 치료비 지원 정도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 피해 치료비 지원	비율(%)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400(58.1)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52 (7.5)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60 (8.7)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	177(25.7)
합계	689(100)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치료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58.1%로서, 앞의 두 경우보다 받지 못한 비율이 낮다. 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받은 경우가 25.7%(177명)이며, 절반이하를 지원받은 경우가 7.5%(52명), 8.7%(60명)이다.

<표 3-37>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정도가 조사대상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치료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비율은 국가기관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높았는데, 90.6%에 이른다. 치료비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사람들이다. 거의 전액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23%(42명)에 이르고, 절반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20.2%(37명), 절반 이하를 지원받은 경우가 10.4%(19명)이다. 상담소와 기타 기관의 경우도 응답자들의 분포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표 3-37 조사대상기관과 국가·공공단체의 신체적피해치료비 지원 교차분석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 피해 치료비 지원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85(46.4)	58(90.6)	149(60.3)	108(55.4)	400(58.1)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19(10.4)	3 (4.7)	15 (6.1)	15 (7.7)	52 (7.5)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혹은 감면)	37(20.2)	1 (1.6)	9 (3.6)	13 (6.7)	60 (8.7)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로 치료	42(23.0)	2 (3.1)	74(30.0)	59(30.3)	177(25.7)
합계	183(100)	64(100)	247(100)	195(100)	689(100)
카이자승값	76.1(df=9) ***				

<표 3-38>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에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강력범죄로서 69.3%(212명)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반면 성폭력은 전혀 지원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낮아 41.5%(76명)였다.

표 3-38 피해범죄유형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피해 치료비 지원 교차분석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신체적 피해 치료비 지원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212(69.3)	88(55.3)	76(41.5)	24(58.5)	400(58.1)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 해 주었다	29 (9.5)	12 (7.5)	8 (4.4)	3 (7.3)	52 (7.5)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 상을 지원(혹은 감면)	28 (9.2)	16(10.1)	13 (7.1)	3 (7.3)	60 (8.7)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로 치료	37(12.1)	43(27.0)	86(47.0)	11(26.8)	177(25.7)
합계	306(100)	159(100)	183(100)	41(100)	689(100)
카이자승값	74.9(df=9) ***				

전액을 지원받은 비율은 성폭력이 가장 높아 47%(86명)가 전액을 지원받거나 무료로 치료를 받았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가 12.1%(37명)로 가장 낮았다.

제3절 육체적·정신적 피해 후유증과 치료실태

1. 피해범죄유형별 피해 후유증

<표 3-39>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정도의 분포를 보여준다. 범죄피해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5.7%(17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범죄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것은 뚜렷한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항목으로서 57.8%(636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생리불순 등의 신체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들도 12.5%(138명)에 이른다. 아직도 상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6.2%(68명)에 이르며,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3.6%(40명)에 이르고 있다.

표 3-39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정도 분포

단위 : 명(%)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빈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모두 전혀 없다	173 (15.7)
뚜렷한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불안·우울 등의 정신적 후유증은 남아 있다	636 (57.8)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소화불량·두통·불면증·생리불순 등의 신체증상이 있다	138 (12.5)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이 남아 있다	46 (4.2)
신체적 상해 부위가 지금까지도 아프다 (단, 심한 신체장애는 아닌 경우)	68 (6.2)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인 장애(신체 일부의 손실, 신체기능의 큰 손상)가 있다	40 (3.6)
합계	1,101(100.0)

<표 3-40>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지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도가 상당히 높았다.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가기관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32.2% 57명)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소에서 조사한 사람들의 비율(7%, 25명)이 가장 낮았다.

표 3-40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정도

단위 : 명(%)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모두 전혀 없다	32(12.5)	57(32.2)	25 (7.0)	59(18.8)	173(15.7)
뚜렷한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불안·우울 등의 정신적 후유증은 남아 있다	134(52.3)	92(52.0)	237(66.8)	173(55.3)	636(57.8)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소화불량·두통·불면증·생리불순 등의 신체증상이 있다	27(10.5)	15 (8.5)	60(16.9)	36(11.5)	138(12.5)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이 남아 있다	11 (4.3)	4 (2.3)	11 (3.1)	20 (6.4)	46 (4.2)
신체적 상해 부위가 지금까지도 아프다 (단, 심한 신체장애는 아닌 경우)	26(10.2)	5 (2.8)	20 (5.6)	17 (5.4)	68 (6.2)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인 장애(신체 일부의 손실, 신체기능의 큰 손상)가 있다	26(10.2)	4 (2.3)	2 (0.6)	8 (2.6)	40 (3.6)
합계	256(100)	177(100)	355(100)	313(100)	1101(100)
카이자승값	125.3(df=15) ***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응답은 상담소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6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현재까지 상해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비율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아서 각각 10.2%(26명)에 이른다.

<표 3-41>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도가 높았다.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타 범죄가 32%(63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강력범죄로서 17.6%(66명)이며, 가정폭력이 3.5%(6명)로 가장 낮았다. 성폭력의 경우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비율이 69.5%(248명)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가 신체적 상해부위가 아직 통증이 있다는 비율이 15.1%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며,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인 장애는 강력범죄가 5.6%(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이 남아있다는 응답은 강력범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30명, 8.0%)으로 나타났다.

표 3-41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정도

단위 : 명(%)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모두 전혀 없다	66(17.6)	6 (3.5)	38(10.6)	63(32.0)	173(15.7)
뚜렷한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불안·우울 등의 정신적 후유증은 남아 있다	188(50.1)	103(59.9)	248(69.5)	97(49.2)	636(57.8)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소화불량·두통·불면증·생리불순 등의 신체증상이 있다	42(11.2)	27(15.7)	51(14.3)	18 (9.1)	138(12.5)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이 남아 있다	30 (8.0)	7 (4.1)	8 (2.2)	1 (0.5)	46 (4.2)
신체적 상해 부위가 지금까지도 아프다(단, 심한 신체장애는 아닌 경우)	28 (7.5)	26(15.1)	6 (1.7)	8 (4.1)	68 (6.2)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인 장애(신체 일부의 손실, 신체기능의 큰 손상)가 있다	21 (5.6)	3 (1.7)	6 (1.7)	10 (5.1)	40 (3.6)
합계	375(100)	172(100)	357(100)	197(100)	1101(100)
카이자승값	145.3(df=15) ***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치료 경험

<표 3-42>는 범죄피해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의 정도를 보여준다. 절반이 조금 넘는 52%(577명)가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두 번 상담을 받은 경우가 233명으로 21%이며,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도 11.9%인 132명에 이른다.

표 3-42 피해자의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와 상담 정도 분포

단위 : 명(%)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와 상담	빈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577 (52.0)
한두 번 받은 적이 있다	233 (21.0)
몇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167 (15.1)
자주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	132 (11.9)
합계	1,109(100.0)

<표 3-43>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정신과의사나 상담가와 상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교차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기기관의 응답자들이 상담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87.2%(157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담소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32.7%에 불과하다. 이는 상담소라는 기관의 특징이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피해자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의 경우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표 3-42>에서 살펴본 전체적 분포와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보인다.

표 3-43 조사대상기관과 피해자의 정신과의사 카운슬러와 상담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와 상담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138(53.3)	157(87.2)	117(32.7)	165(52.9)	577(52.0)
한두 번 받은 적이 있다	60(23.2)	15 (8.3)	91(25.4)	67(21.5)	233(21.0)
몇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42(16.2)	8 (4.4)	73(20.4)	44(14.1)	167(15.1)
자주 지속적인 상담	19 (7.3)	0 (0.0)	77(21.5)	36(11.5)	132(11.9)
합계	259(100)	180(100)	358(100)	312(100)	1109(100)
카이자승값	160.8(df=9) ***				

<표 3-44>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상담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기타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83.3%(165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성폭력의 경우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25.8%로 가장 낮다.

표 3-44 피해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정신과의사 카운슬러와 상담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와 상담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255(66.9)	64(37.6)	93(25.8)	165(83.3)	577(52.0)
한두 번 받은 적이 있다	65(17.1)	44(25.9)	108(30.0)	16 (8.1)	233(21.0)
몇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38(10.0)	44(25.9)	72(20.0)	13 (6.6)	167(15.1)
자주 지속적인 상담 중	23 (6.0)	18(10.6)	87(24.2)	4 (2.0)	132(11.9)
합계	381(100)	170(100)	360(100)	198(100)	1109(100)
카이자승값	250.2(df=9) ***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비율도 성폭력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24.2%(87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유형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는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지만 강력범죄나 기타범죄는 상담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3. 상담치료 시간 및 비용

<표 3-45>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치료를 받은 시간 분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는 10시간 미만(5시간 미만 45.6%와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4.8%)의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50시간 이상 상담을 받은 사람들도 8.4%(41명)를 차지했다.

표 3-45 피해자의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분포

단위 : 명(%)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	빈도(%)
5시간 미만	222 (45.6)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21 (24.8)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66 (13.6)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 (4.5)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5 (3.1)
50시간 이상	41 (8.4)
합계	487(100.0)

<표 3-46>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상담치료를 받은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46 조사대상기관과 피해자의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 교차분석

단위 : 명(%)

상담치료 받은 시간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5시간 미만	65(56.0)	9(47.4)	86(39.8)	62(45.6)	222(45.6)
5시간 - 10시간 미만	31(26.7)	1 (5.3)	47(21.8)	42(30.9)	121(24.8)
10시간 - 20시간 미만	8 (6.9)	3(15.8)	37(17.1)	18(13.2)	66(13.6)
20시간 - 30시간 미만	6 (5.2)	3(15.8)	9 (4.2)	4 (2.9)	22 (4.5)
30시간 - 50시간 미만	1 (0.9)	2(10.5)	9 (4.2)	3 (2.2)	15 (3.1)
50시간 이상	5 (4.3)	1 (5.3)	28(13.0)	7 (5.1)	41 (8.4)
합계	116(100)	19(100)	216(100)	136(100)	487(100)
카이자승값	38.5(df=15) **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들이 10시간 미만의 비율이 83% 정도로 상담치료를 받은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담치료를 오랜 시간동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시간 이상 상담을 받은 비율은 상담소가 13%(28명)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표 3-47>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상담치료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상담시간은 범죄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폭력의 경우 상담시간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분포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47 피해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상담(정신과)치료 받은 시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상담(정신과) 치료시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5시간 미만	65(54.6)	48(50.0)	92(38.0)	17(56.7)	222(45.6)
5시간 - 10시간 미만	26(21.8)	25(26.0)	64(26.4)	6(20.0)	121(24.8)
10시간 - 20시간 미만	13(10.9)	14(14.6)	33(13.6)	6(20.0)	66(13.6)
20시간 - 30시간 미만	4 (3.4)	3 (3.1)	15 (6.2)	0 (0.0)	22 (4.5)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30시간 - 50시간 미만	2 (1.7)	3 (3.1)	10 (4.1)	0 (0.0)	15 (3.1)
50시간 이상	9 (7.6)	3 (3.1)	28(11.6)	1 (3.3)	41 (8.4)
합계	119(100)	96(100)	242(100)	30(100)	487(100)
카이자승값	22.3(df=15), Not Significant.				

<표 3-48>은 상담치료를 위해서 피해자의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의 분포를 보여준다.

10만원 이하가 63.5%(172명)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23.2%(63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밖에 100만원 이하가 5.5%(15명), 300만원 이하가 5.9%(16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치료비로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하였다는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86.7%가 50만원 이하의 상담치료비를 부담하였다.

표 3-48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분포

단위 : 명(%)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빈도(%)
10만원이하	172 (63.5)
50만원이하	63 (23.2)
100만원이하	15 (5.5)
300만원이하	16 (5.9)
1000만원이하	5 (1.8)
합계	271(100.0)

<표 3-49>는 조사대상기관별로 상담치료비에 있어서 보이는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나타난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은 실제 상담치료비용을 평균과 표준편차값이 아니라, 10만원 이하에 1점, 50만원 이하에 2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의 평균과 표준편차값이다. 이를 보면, 국가기관에서 응답한 피해자들이 상담치료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지원센터, 상담소, 기타 기관의 순서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49 조사대상기관별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차이검증 결과

조사대상기관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사례수	74	15	107	75	271	3.53 *
자비부담	1.81(1.14)	2.00(1.13)	1.53(0.82)	1.39(0.88)	1.59(0.96)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 상담치료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표 3-50>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이다. 표를 보면, 가장 많은 상담치료비를 지불한 것은 강력범죄의 피해자이며, 나머지 세 범죄의 피해자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50 피해범죄유형별 자비부담 상담치료비 차이검증 결과

피해범죄유형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사례수	75	55	124	17	271	4.81 **
자비부담	1.92(1.11)	1.60(0.93)	1.40(0.82)	1.59(1.00)	1.59(0.96)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4. 상담치료에 관한 보상·지원

<표 3-51>은 피해자의 상담치료비 중에서 가해자가 부담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가해자가 상담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8%(408명)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은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상담비 전액을 부담해주었다는 경우는 7.1%(34명)에 불과하다.

표 3-51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분포

단위 : 명(%)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빈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408 (84.8)
상담비의 절반 이하를 부담해 주었다	23 (4.8)
전액에는 못 미치나, 상담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주었다	16 (3.3)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해 주었거나 현재도 부담해주고 있다	34 (7.1)
합계	481(100.0)

<표 3-52>는 조사대상기관별로 가해자가 상담치료비를 부담한 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조사대상기관에 따라서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52 조사대상기관과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101 (87.1)	14 (73.7)	180 (84.9)	113 (84.3)	408 (84.8)
상담비의 절반 이하를 부담해 주었다	9 (7.8)	1 (5.3)	7 (3.3)	6 (4.5)	23 (4.8)
전액에는 못 미치나, 상담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주었다	2 (1.7)	2 (10.5)	8 (3.8)	4 (3.0)	16 (3.3)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해 주었거나 현재도 부담해주고 있다	4 (3.4)	2 (10.5)	17 (8.0)	11 (8.2)	34 (7.1)
합계	116 (100)	19 (100)	212 (100)	134 (100)	481 (100)
카이자승값	10.5(df=9), Not Significant.				

<표 3-53>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가 상담치료비를 부담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해자가 상담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유형은 성폭력

(89.1%), 가정폭력(84%), 기타 범죄(83.3%), 강력범죄(77.3%)의 순서이다. 즉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상담치료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였다.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해 준 경우에는, 성폭력(8.8%)이 상대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3-53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정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가해자의 상담치료비 부담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92(77.3)	79(84.0)	212(89.1)	25(83.3)	408(84.8)
상담비의 절반 이하를 부담해 주었다	11 (9.2)	7 (7.4)	3 (1.3)	2 (6.7)	23 (4.8)
전액에는 못 미치나, 상담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주었다	8 (6.7)	5 (5.3)	2 (0.8)	1 (3.3)	16 (3.3)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해 주었거나 현재도 부담해주고 있다	8 (6.7)	3 (3.2)	21 (8.8)	2 (6.7)	34 (7.1)
합계	119(100)	94(100)	238(100)	30(100)	481(100)
카이자승값	26.8(df=9) **				

<표 3-54>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상담치료비를 지원한 정도를 보여준다. 상담치료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비율은 35.9%로서 앞에서 살펴본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인 58.1%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들이 신체적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원보다는 상담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상담비를 지원받거나 무료로 상담을 받는 비율이 51.2%(242명)로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표 3-54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분포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빈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170(35.9)
상담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33 (7.0)
전액에는 못 미치나, 상담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28 (5.9)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242(51.2)
합계	473(100)

<표 3-55>는 상담치료비를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정도가 조사대상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기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상담소나 기타 기관의 경우 무료로 상담을 해주거나 상담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피해지원센터(37.1%)나 국가기관(16.7%)은 상대적으로 상담비를 전액지원받거나 무료상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55 조사대상기관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45(38.8)	11(61.1)	73(35.1)	41(31.3)	170(35.9)
상담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14(12.1)	1 (5.6)	9 (4.3)	9 (6.9)	33 (7.0)
전액에는 못 미치나, 상담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혹은 감면)	14(12.1)	3 (16.7)	6 (2.9)	5 (3.8)	28 (5.9)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 상담 지속	43(37.1)	3 (16.7)	120(57.7)	76(58.0)	242(51.2)
합계	116(100)	18(100)	208(100)	131(100)	473(100)
카이자승값	37.5(df=9) ***				

<표 3-56>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국가나 공공단체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3-56 피해범죄유형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상담치료비 지원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56(47.1)	38(40.9)	56(24.1)	20(69.0)	170(35.9)
상담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16(13.4)	5 (5.4)	9 (3.9)	3(10.3)	33 (7.0)
전액에는 못 미치나, 상담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혹은 감면)	11 (9.2)	8 (8.6)	7 (3.0)	2 (6.9)	28 (5.9)
상담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 상담을 지속	36(30.3)	42(45.2)	160(69.0)	4(13.8)	242(51.2)
합계	119(100)	93(100)	232(100)	29(100)	473(100)
카이자승값	73.5(df=9) ***				

범죄유형별로 상담치료비 지원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타 범죄(69%), 강력범죄(47.1%)가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받거나 무료로 지원받는 비율이 69%에 이르러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경제적 피해실태 및 회복실태

1.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표 3-57>은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이 입은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실제로 빼앗긴 현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망가졌거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액도 포함된다.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이 39.3%(409명)이다. 10만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10.5%(109명)인 반면에,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26%(270명)에 이르렀다.

표 3-57 범죄피해로 인한 현금이나 물건 피해액 분포

단위 : 명(%)

현금이나 물건 피해액	빈도(%)
현금이나 물건 등의 피해는 없었다	409 (39.3)
10만원 미만	109 (10.5)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96 (9.2)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92 (8.8)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64 (6.2)
100만원 이상	270 (26.0)
합계	1,040(100.0)

<표 3-58>은 조사대상기관별로 경제적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는 분석

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가 없었던 비율은 상담소가 50%(159명)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기타 기관(42.2%)과 피해자지원센터(41.9%)로 비슷하고, 국가기관이 가장 낮아서 11.4%(20%)에 불과하였다.

표 3-58 조사대상기관별

단위 : 명(%)

현금이나 물건 피해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현금·물건 피해 없음	106(41.9)	20(11.4)	159(50.0)	124(42.2)	409(39.3)
10만원 미만	30(11.9)	26(14.9)	26 (8.2)	27 (9.2)	109(10.5)
10만원 - 30만원 미만	19 (7.5)	11 (6.3)	28 (8.8)	38(12.9)	96 (9.2)
30만원 - 50만원 미만	25 (9.9)	20(11.4)	17 (5.3)	30(10.2)	92 (8.8)
50만원 - 100만원 미만	14 (5.5)	12 (6.9)	24 (7.5)	14 (4.8)	64 (6.2)
100만원 이상	59(23.3)	86(49.1)	64(20.1)	61(20.7)	270(26.0)
합계	253(100)	175(100)	318(100)	294(100)	1040(100)
카이자승값	110.5(df=15) ***				

이는 국가기관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1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비율이 국가기관의 응답자 경우 거의 절반인 49.1%(86명)에 이르러 다른 기관들의 20% 초반 대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자가 국가기관(법률구조공단)의 피해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신체적 피해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측하여볼 수 있다.

<표 3-59>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59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로 인한 현금이나 물건 피해액 교차분석

단위 : 명(%)

현금·물건 피해액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현금·물건 피해 없음	106(28.0)	61(38.4)	228(72.2)	14 (7.5)	409(39.3)
10만원 미만	65(17.2)	10 (6.3)	17 (5.4)	17 (9.1)	109(10.5)
10만원 - 30만원 미만	53(14.0)	18(11.3)	17 (5.4)	8 (4.3)	96 (9.2)
30만원 - 50만원 미만	41(10.8)	17(10.7)	9 (2.8)	25(13.4)	92 (8.8)
50만원 - 100만원 미만	27 (7.1)	21(13.2)	4 (1.3)	12 (6.4)	64 (6.2)
100만원 이상	86(22.8)	32(20.1)	41(13.0)	111(59.4)	270(26.0)
합계	378(100)	159(100)	316(100)	187(100)	1040(100)
카이자승값	344.1(df=15)***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범죄유형별로 피해액의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성폭력으로서 72.2%(228명)가 경제적 피해가 없었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38.4%), 강력범죄(28%) 순이며, 기타 범죄의 경우 피해가 없는 비율이 7.5%에 불과하다. 기타 범죄의 경우 사기와 절도가 많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비율도 기타 범죄가 가장 높아서 59.4%(111명)에 이르렀다.

2.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지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3-60>이다. 많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그 비율은 79%(443명)에 이른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였는데 거의 전액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경우가 6.2%(3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절반이하가 9.3%, 절반이상이 5.5%에 불과하다.

표 3-60 가해자의 현금이나 물건 피해에 대한 보상 정도 분포

단위 : 명(%)

가해자의 현금이나 물건 피해에 대한 보상	빈도(%)
아무런 피해 보상도 없었다	443 (79.0)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52 (9.3)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31 (5.5)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35 (6.2)
합계	561(100.0)

<표 3-61>은 조사대상기관별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응답자들이 조사한 기관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1 조사대상기관과 가해자의 현금·물건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가해자의 현금이나 물건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아무런 피해 보상도 없었다	92(74.2)	104(81.3)	115(77.7)	132(82.0)	443(79.0)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22(17.7)	7 (5.5)	11 (7.4)	12 (7.5)	52 (9.3)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5 (4.0)	7 (5.5)	11 (7.4)	8 (5.0)	31 (5.5)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5 (4.0)	10 (7.8)	11 (7.4)	9 (5.6)	35 (6.2)
합계	124(100)	128(100)	148(100)	161(100)	561(100)
카이자승값	16.9(df=9), Not Significant.				

<표 3-62>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해자에 의한 경제적 피해의 보상은 범죄유형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62 피해범죄유형과 가해자의 현금·물건피해에 대한 보상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가해자의 현금이나 물건 피해에 대한 보상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아무런 피해 보상도 없었다	159(71.9)	79(81.4)	73(88.0)	132(82.5)	443(79.0)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29(13.1)	7 (7.2)	4 (4.8)	12 (7.5)	52 (9.3)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17 (7.7)	4 (4.1)	3 (3.6)	7 (4.4)	31 (5.5)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16 (7.2)	7 (7.2)	3 (3.6)	9 (5.6)	35 (6.2)
합계	221(100)	97(100)	83(100)	160(100)	561(100)
카이자승값	13.5(df=9), Not Significant.				

<표 3-63>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있었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현금이나 물건,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공공단체로부터 보상이나 지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90.7%에 해당하는 496명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았다고 한 경우는 8명으로서 1.5%에 불과하였다.

표 3-63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정도분포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빈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496(90.7)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30 (5.5)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13 (2.4)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8 (1.5)
합계	547(100)

<표 3-64>는 조사대상기관별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3-64 조사대상기관과 국가·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당소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91(75.2)	126(98.4)	131(92.3)	148(94.9)	496(90.7)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21(17.4)	0 (0.0)	5 (3.5)	4 (2.6)	30 (5.5)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지원보상	5 (4.1)	1 (0.8)	5 (3.5)	2 (1.3)	13 (2.4)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4 (3.3)	1 (0.8)	1 (0.7)	2 (1.3)	8 (1.5)
합계	121(100)	128(100)	142(100)	156(100)	547(100)
카이자승값	54.2(df=9)***				

국가기관(98.4%), 상당소(92.3%), 기타(94.9%)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임에 반해서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5.2%(91명)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보상을 받은 경우도 절반 이하를 받은 경우가 17.4%(21명)로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표 3-65>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재산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받은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표 3-65 피해범죄유형과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정도 교차분석

단위 : 명(%)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피해 보상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192(91.0)	83(87.4)	75(90.4)	146(92.4)	496(90.7)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13 (6.2)	6 (6.3)	3 (3.6)	8 (5.1)	30 (5.5)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지원 보상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5 (2.4)	4 (4.2)	2 (2.4)	2 (1.3)	13 (2.4)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지원 보상이 있었다	1 (0.5)	2 (2.1)	3 (3.6)	2 (1.3)	8 (1.5)
합계	211(100)	95(100)	83(100)	158(100)	547(100)
카이자승값	7.6(df=9), Not Significant.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 중에서 특정 유형만 재산적 피해를 지원해주는 식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5절 수사재판과정 · 가해자 · 언론으로 인한 2차피해

1. 수사 ·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표 3-66>은 범죄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³³⁾.

표 3-66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단위 : 명(%)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599(54.8)	408(37.3)	86 (7.9)	1,093(100)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	743(68.8)	265(24.5)	72 (6.7)	1,080(100)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	723(66.7)	274(25.3)	87 (8.0)	1,084(100)
피해가족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	849(78.8)	155(14.4)	73 (6.8)	1,077(100)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결과가 부당했다	734(68.0)	234(21.7)	112(10.4)	1,080(100)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	818(75.5)	196(18.1)	69 (6.4)	1,083(100)

33) 본 조사연구에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데, 그런 경우 수사과정 자체를 경험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해당 사례들을 제외하고 분석해도 위 표와 대체로 비슷한 분포가 나타났다.

수사과정과 관련해서 6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 보았다.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에 이르며, 사건에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3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는 응답도 33.3%로 적지 않았다. 피해자나 가족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2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가 부당하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32%에 이르렀다. 또한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2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문항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대체로 1/2에서 1/3에 이르는 응답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표 3-67>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어려움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조사대상기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67 조사대상기관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단위 : 명(%)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0.58 (0.64)	0.42 (0.59)	0.55 (0.66)	0.53 (0.63)	0.53 (0.64)	2.57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	0.42 (0.64)	0.28 (0.54)	0.42 (0.64)	0.36 (0.57)	0.38 (0.61)	2.58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	0.47 (0.67)	0.31 (0.57)	0.43 (0.63)	0.41 (0.64)	0.41 (0.64)	2.29
피해가족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	0.28 (0.58)	0.25 (0.56)	0.34 (0.62)	0.24 (0.55)	0.28 (0.58)	1.74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결과가 부당했다	0.41 (0.66)	0.42 (0.70)	0.46 (0.70)	0.39 (0.63)	0.42 (0.67)	0.56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	0.28 (0.56)	0.29 (0.57)	0.38 (0.65)	0.26 (0.54)	0.31 (0.58)	2.76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34) 2009년도 조사연구(김지영·박형민, 2009 : 119)에서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하지만, 그 조사는 오로지 강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응답문항 중 단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를 모두 “피해있음”으로 계산하였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사료된다.

즉 어느 기관에서 응답한 사람들이건 수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는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들이 있었다. <표 3-68>에 따르면 1번째와 2번째 그리고 5번째 문항에서 범죄유형에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68 피해범죄유형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단위 : 명(%)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0.62 (0.65)	0.29 (0.52)	0.63 (0.66)	0.39 (0.59)	0.53 (0.64)	16.73***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	0.45 (0.64)	0.26 (0.49)	0.40 (0.61)	0.31 (0.60)	0.38 (0.61)	4.79 **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	0.47 (0.65)	0.40 (0.61)	0.36 (0.58)	0.41 (0.71)	0.41 (0.64)	1.83
피해가족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	0.31 (0.58)	0.33 (0.61)	0.22 (0.53)	0.29 (0.63)	0.28 (0.58)	2.01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했다	0.46 (0.66)	0.37 (0.66)	0.39 (0.66)	0.46 (0.73)	0.42 (0.67)	1.29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	0.39 (0.61)	0.36 (0.63)	0.21 (0.49)	0.30 (0.62)	0.31 (0.58)	6.24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문항에서는 성폭력(0.63)과 강력범죄(0.62)의 피해자들의 더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든 문항에 대해서도 강력범죄(0.45)와 성폭력(0.40)의 피해자들이 더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반면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강력범죄(0.39)와 가정폭력(0.36)의 피해자가 더 심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로 강력범죄의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표 3-69>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의 정도를 보여준

다.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해서 어려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1.7%이며,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문항에 대해서 16.5%의 응답자들의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수사과정보다 낮은 것은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69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단위 : 명(%)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	828(78.3)	168(15.9)	62(5.9)	1,058(100)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879(83.5)	136(12.9)	38(3.6)	1,053(100)

참고로, 본 조사에서 수집된 사례 중에서는 255사례(22.9%)가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들 사례들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표를 다시 작성해 볼 경우 다음 <표 3-7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표 3-70 <재판사건에 국한>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단위 : 명(%)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	606(74.9)	151(18.7)	52(6.4)	809(100)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651(80.5)	123(15.2)	35(4.3)	809(100)

표를 보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제외되면서 재판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가해자 대면, 그리고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표 3-69>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다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만하다. 즉, <표 3-69>에 비해 <표 3-70>에서는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분포의 차이는 대체로 유사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3-71>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평균차이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 두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문항 모두에서 상담소와 기타 기관의 응답자들이 나머지 두 기관에 비해서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 상담소는 0.32, 기타 기관은 0.30의 평균으로 높았고,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상담소가 0.27, 기타 기관이 0.21로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3-71 조사대상기관별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	피해자지원 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	0.27 (0.53)	0.15 (0.43)	0.32 (0.61)	0.30 (0.59)	0.28 (0.56)	3.81**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0.18 (0.43)	0.09 (0.36)	0.27 (0.57)	0.21 (0.48)	0.20 (0.48)	5.34***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3-72>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한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두 문항 모두에서 범죄유형에 따라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강력범죄(0.31)와 성폭력(0.32)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강력범죄(0.24)와 성폭력(0.22)이 다른 두 범죄유형에 비해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은 강력범죄와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3-72 피해범죄유형별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차이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	0.31 (0.56)	0.27 (0.54)	0.32 (0.63)	0.15 (0.44)	0.28 (0.56)	3.96 **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0.24 (0.50)	0.19 (0.44)	0.22 (0.52)	0.09 (0.37)	0.20 (0.48)	4.64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2.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표 3-73>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건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지 분포를 보여준다.

표 3-73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단위 : 명(%)

가해자로 인한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653 (59.8)	245 (22.4)	194 (17.8)	1,092 (100)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889 (82.9)	133 (12.4)	51 (4.8)	1,073 (100)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	723 (67.1)	194 (18.0)	161 (14.9)	1,078 (100)

가해자나 그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는 문항에 대해서 40.2%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가해자측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17.2%가, 가해자나 가족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32.9%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가해자측의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촉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범죄피해 이후 원치 않은 접촉으로 인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이다.

<표 3-74>는 조사대상기관별로 가해자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74 조사대상기관별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

가해자로 인한 어려움	피해자지원 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0.48 (0.72)	0.30 (0.62)	0.78 (0.82)	0.61 (0.78)	0.58 (0.77)	17.61***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0.21 (0.49)	0.11 (0.36)	0.26 (0.56)	0.25 (0.56)	0.22 (0.52)	3.52 *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	0.39 (0.69)	0.26 (0.60)	0.72 (0.82)	0.42 (0.71)	0.48 (0.74)	19.61***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3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해자나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는 문항에 대해서 상담소(0.78)와 기타 기관(0.78)이 다른 두 기관보다 훨씬 높은 평균을 보여서 기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역시 상담소와 기타 기관이 0.56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흘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담소가 0.72의 평균으로 다른 세 기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볼 때 상담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타 기관도 상담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표 3-75>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어려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3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75 피해범죄유형별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

가해자로 인한 어려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0.54 (0.75)	0.77 (0.82)	0.67 (0.82)	0.33 (0.61)	0.58 (0.77)	12.61***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0.27 (0.55)	0.20 (0.47)	0.24 (0.56)	0.10 (0.35)	0.22 (0.52)	4.50 **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	0.44 (0.71)	0.76 (0.83)	0.53 (0.78)	0.22 (0.51)	0.48 (0.74)	16.96***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는 문항에 대해서 가정폭력(0.77)과 성폭력(0.67)이 높은 점수를 보여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와 성폭력이 각각 0.27과 0.24의 점수로 높았다.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0.76)과 성폭력(0.53)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무래도 범죄유형의 특성상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나쁜 소문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인다.

3.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표 3-76>은 언론보도로 인해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언론보도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고하였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의 보도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5.6%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는 5.9%,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는 5.8%, 언론취재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7.6%, 언론보도로 신분이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가 8.4%로 나타났다.

표 3-76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분포

단위 : 명(%)

언론보도로 인한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나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	970(94.4)	41(4.0)	16(1.6)	1027(100)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958(94.1)	44(4.3)	16(1.6)	1018(100)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	954(94.2)	44(4.3)	15(1.5)	1013(100)
언론취재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 받았다	942(92.4)	55(5.4)	22(2.2)	1019(100)
언론보도 때문에 나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931(91.6)	61(6.0)	24(2.4)	1016(100)

그런데, 위 <표 3-76>에서는 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따로 집계해서 위와 같은 표를 다시 만든다면 어떻게 나올까? 아래의 <표 3-77>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에 국한했을 때,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위 <표 3-76>에서 나타난 분포와는 크게 달라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보도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34.5%,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는 35.8%,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는 30.9%, 언론취재로 일상생활에 방해 받은 경험은 43.4%, 언론보도로 신분이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는 47.0%에 달했다.

표 3-77 <언론보도사건국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언론보도로 인한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나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	53(65.4)	18(22.2)	10(12.3)	81(100.0)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52(64.2)	18(22.2)	11(13.6)	81(100.0)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	56(69.1)	16(19.8)	9(11.1)	81(100.0)
언론취재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 받았다	47(56.6)	20(24.1)	16(19.3)	83(100.0)
언론보도 때문에 나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44(53.0)	26(31.3)	13(15.7)	83(100.0)

선행연구들(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 150; 김지영·박형민, 2009 : 11 935)에서는 <표 3-76>과 같은 결과만을 제시하고 <표 3-77>과 같은 결과는 —언론보도 여부를 묻는 문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제시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의도치 않게 범죄피해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해 겪는 2차 피해를 일정 정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볼 경우 대략 피해자의 35% 이상이 언론보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3-78>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언론보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로서 5문항 중에서 3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을 중심으로 피해정도의 차이를 살펴볼 때, 세 문항 모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였다. 이들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나머지 세

35) 2009년도 조사연구(김지영·박형민, 2009)의 경우엔, 오로지—언론에 보도될 확률이 높은—강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탓에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율이 상당히 높게(평균 31%) 나타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만약 언론보도 사건에 국한된 분석을 했더라면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율이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09년도 조사연구는 여러 문항 중에서 한 문항에서라도 ‘예’라는 응답이 나왔을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간주하는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동시에 언론보도 사건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본 조사가 강력범죄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무려 51%(80명 중 46명)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두 조사에서의 해당 질문 및 질문의 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 언론보도 사건에 국한하여 계산할 경우, 살인은 18명 중 14명(77.8%, 언론보도 사건에 국한되지 않은 2009년도 조사의 경우 39.7%), 강도는 7명 중 4명(57.1%, 2009년도 21.6%), 성범죄는 33명 중 19명(57.6%, 2006년도 19.5%)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기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3-78 조사대상기관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이

언론보도로 인한 어려움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나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	0.10 (0.38)	0.05 (0.26)	0.07 (0.29)	0.07 (0.30)	0.07 (0.31)	0.90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0.13 (0.43)	0.05 (0.29)	0.06 (0.26)	0.06 (0.26)	0.07 (0.32)	3.38*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	0.10 (0.37)	0.06 (0.31)	0.06 (0.27)	0.07 (0.31)	0.07 (0.31)	1.13
언론취재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0.16 (0.44)	0.06 (0.31)	0.08 (0.32)	0.08 (0.36)	0.10 (0.36)	3.18**
언론보도 때문에 나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0.20 (0.52)	0.08 (0.33)	0.09 (0.32)	0.07 (0.31)	0.11 (0.38)	6.70***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3-79>에서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언론보도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 차이를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문항 중에서 3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범죄보도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에서 2집단으로 분류되는데, 강력범죄와 성폭력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가정폭력과 기타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 3-79 피해범죄유형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정도차이

언론보도로 인한 어려움	강력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나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	0.09 (0.34)	0.06 (0.28)	0.08 (0.32)	0.04 (0.25)	0.07 (0.31)	0.93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0.11 (0.40)	0.04 (0.21)	0.07 (0.28)	0.04 (0.25)	0.07 (0.32)	2.50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	0.11 (0.40)	0.04 (0.19)	0.06 (0.28)	0.04 (0.22)	0.07 (0.31)	3.67*
언론취재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0.14 (0.41)	0.04 (0.22)	0.12 (0.41)	0.04 (0.22)	0.10 (0.36)	4.73**

언론보도 때문에 나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0.14 (0.43)	0.04 (0.21)	0.13 (0.43)	0.05 (0.27)	0.11 (0.38)	4.02**
---------------------------	----------------	----------------	----------------	----------------	----------------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제6절 사회적 관계의 손실 및 기타

1.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장애 및 가족관계의 변화

범죄피해로 인해서 피해당사자나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이나 위기를 <표 3-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피해당사자가 심한 공포감과 대인기피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64.9%였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경우가 64.5%, 자살을 기도한 경우가 23.9%였다. 반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심한 공포감과 대인기피를 경험한 비율은 43.1%이며,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은 42.6%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12.5%였다. 전체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가족이 겪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가족들도 적지 않은 비율이 공포감, 대인기피, 우울증 등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표 3-80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 분포

단위 : 명(%)

정신적 어려움	없었다	있었다	합계
범죄피해 당사자의 심한 공포감·대인기피	380(35.1)	704(64.9)	1,084(100)
범죄피해 당사자의 극심한 우울증	386(35.6)	699(64.4)	1,085(100)
범죄피해 당사자의 자살기도	801(76.1)	251(23.9)	1,052(100)
피해자 가족성원의 심한 공포감·대인기피	611(56.9)	462(43.1)	1,073(100)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극심한 우울증	616(57.4)	458(42.6)	1,074(100)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자살기도	919(87.5)	131(12.5)	1,050(100)

<표 3-81>은 조사대상기관별로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6문항 모두에 대해서 조사대상기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³⁶⁾ 피해당사자의 심한 공포감과 대인기피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상담소의 응답자(0.77)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0.65)였다. 당사자의 극심한 우울증 경험 역시 상담소의 응답자가 0.8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기타 기관의 응답자로서 0.63이다. 당사자의 자살기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담소 응답자(0.28)였고, 기타 기관의 응답자도 0.2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 가족의 심한 공포감과 대인기피는 상담소 응답자가 0.53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피해자지원센터 응답자로 0.49이다. 가족의 우울증 경험도 상담소 응답자가 0.54로 가장 높고 다음이 피해자지원센터 응답자로 0.49이다. 가족의 자살기도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가 가장 높았는데 0.18이며, 다음이 상담소 응답자로 0.14이다.

표 3-81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 차이검증 결과

정신적 어려움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범죄피해 당사자의 심한 공포감 · 대인기피	0.65 (0.48)	0.43 (0.50)	0.77 (0.42)	0.64 (0.48)	0.65 (0.48)	21.14 ***
범죄피해 당사자의 극심한 우울증	0.61 (0.49)	0.41 (0.49)	0.80 (0.40)	0.63 (0.48)	0.64 (0.48)	29.08 ***
범죄피해 당사자의 자살기도	0.25 (0.43)	0.10 (0.30)	0.28 (0.45)	0.27 (0.44)	0.24 (0.43)	8.15 ***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심한 공포감 · 대인기피	0.49 (0.50)	0.27 (0.44)	0.53 (0.50)	0.36 (0.48)	0.43 (0.50)	14.99 ***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극심한 우울증	0.49 (0.50)	0.26 (0.44)	0.54 (0.50)	0.34 (0.48)	0.43 (0.49)	17.14 ***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자살기도	0.18 (0.38)	0.06 (0.23)	0.14 (0.34)	0.11 (0.31)	0.12 (0.33)	5.10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3-82>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정신적 어려움에 있어서 차이를 보는지 검증한 결과인데, 6문항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상당히 높았다. 범죄피

36) 응답범주가 없다 있다 등의 0과 1일 때 그 변인의 평균값은 1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표에서 평균점수의 차이는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해 당사자가 심한 공포감과 대인기피를 경험한 것은 가정폭력이 가장 높아서 평균이 0.74이며, 다음이 성폭력으로 0.71이다. 당사자의 극심한 우울증 역시 가정폭력이 가장 높아서 0.81이며, 다음이 성폭력으로 0.71이다. 당사자의 자살기도 역시 가정폭력이 0.36으로 가장 높은데 두 번째는 강력범죄로서 0.25이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당사자에게 가장 큰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며, 그 다음이 성폭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심한 공포감과 대인기피를 경험한 것은 가정폭력이 0.51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강력범죄로 0.46이며, 성폭력도 0.45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가족의 극심한 우울증 역시 가정폭력이 가장 높아서 0.54이며, 강력범죄와 성폭력이 유사해서 0.44와 0.45이다. 가족의 자살기도 역시 가정폭력으로 0.20이며, 다음이 강력범죄로 0.24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강력범죄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가정폭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3-82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 차이검증 결과

정신적 어려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범죄피해 당사자의 심한 공포감·대인기피	0.67 (0.47)	0.74 (0.44)	0.71 (0.45)	0.41 (0.49)	0.65 (0.48)	21.85 ***
범죄피해 당사자의 극심한 우울증	0.61 (0.49)	0.81 (0.39)	0.71 (0.46)	0.45 (0.50)	0.64 (0.48)	20.97 ***
범죄피해 당사자의 자살기도	0.25 (0.43)	0.36 (0.48)	0.24 (0.43)	0.12 (0.32)	0.24 (0.43)	9.90 ***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심한 공포감·대인기피	0.46 (0.50)	0.51 (0.50)	0.45 (0.50)	0.27 (0.44)	0.43 (0.50)	8.80 ***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극심한 우울증	0.44 (0.50)	0.54 (0.50)	0.45 (0.50)	0.26 (0.44)	0.43 (0.49)	10.24 ***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자살기도	0.14 (0.35)	0.20 (0.40)	0.10 (0.30)	0.07 (0.26)	0.12 (0.33)	5.42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3-83>은 범죄사건의 피해 이후에 가정 내에서 겪은 변화와 어려움의 정도를 4문항으로 측정한 분포이다.

표 3-83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 분포

단위 : 명(%)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626(56.8)	357(32.4)	119(10.8)	1,102(100)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	756(69.2)	255(23.4)	81 (7.4)	1,092(100)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686(62.9)	305(28.0)	99 (9.1)	1,090(100)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아졌다	447(40.4)	406(36.7)	253(22.9)	1,106(100)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 4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30.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7.1%가,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9.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적지 않은 가정이 범죄피해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가족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증가였으며, 가족관의 대화의 단절, 다툼의 증가, 서로간의 비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가 피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84>는 조사대상기관별로 가정 내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4문항 모두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는데,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 상담소가 0.7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기타 기관과 피해자지원센터가 0.52와 0.51로 비슷한 평균점수를 보였다.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상담소가 0.53으로 가장 높고, 기타 기관과 피해자지원센터가 0.35와 0.32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상담소가 0.64로 가장 높고, 기타 기관과 피해자지원센터가 0.39로 비

숫한 점수이다. 그렇지만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담소가 1.06으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피해자지원센터로 0.86의 점수이다.

표 3-84 조사대상기관별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차이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0.51 (0.64)	0.28 (0.55)	0.71 (0.71)	0.52 (0.70)	0.54 (0.68)	17.11***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	0.32 (0.58)	0.24 (0.54)	0.53 (0.65)	0.35 (0.63)	0.38 (0.62)	10.84***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0.39 (0.63)	0.28 (0.55)	0.64 (0.68)	0.42 (0.66)	0.46 (0.66)	15.09***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아졌다	0.86 (0.77)	0.50 (0.69)	1.06 (0.73)	0.71 (0.79)	0.82 (0.78)	25.40***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전체적으로 상담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이후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의 응답자가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 3-85>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에 따라서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이다. 4문항 모두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 범죄유형별로 가정내 어려움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0.83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다음이 강력범죄와 성폭력으로 0.53이다.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유형보다 훨씬 높은 0.68의 점수를 보였으며,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서 가정폭력이 0.7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성폭력으로 0.52의 점수를 보였다.

표 3-85 피해범죄유형별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차이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0.53 (0.68)	0.83 (0.76)	0.53 (0.63)	0.32 (0.62)	0.54 (0.68)	18.22***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했다	0.32 (0.57)	0.68 (0.75)	0.37 (0.59)	0.27 (0.56)	0.38 (0.62)	17.56***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0.37 (0.59)	0.71 (0.79)	0.52 (0.65)	0.33 (0.59)	0.46 (0.66)	14.18***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아졌다	0.81 (0.78)	1.17 (0.80)	0.85 (0.75)	0.51 (0.66)	0.82 (0.78)	23.63***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많아졌다는 문항에 대하여 가정폭력이 1.1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성폭력과 강력범죄가 0.85와 0.81의 점수를 보였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다. 이는 가정폭력이란 행위의 특성상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폭력인데 이 역시 성폭력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 분란 가져올 여지가 많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사회적 곤란 및 사회적관계의 손실

<표 3-86>은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에 범죄피해로 인하여 겪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5개 문항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표 3-86 범죄피해 이후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 분포

단위 : 명(%)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생계가 범죄피해 이전보다 곤란해졌다	301(27.4)	301(27.4)	298(27.1)	198(18.0)	1,098(100)
소송비용의 부담이 컸다	521(50.0)	262(25.1)	177(17.0)	82 (7.9)	1,042(100)
정신적·신체적 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	289(27.0)	272(25.4)	330(30.8)	181(16.9)	1,072(100)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18.3)	197(18.1)	414(37.9)	280(25.7)	1,091(100)
사건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나빠졌다	230(21.2)	306(28.2)	340(31.4)	208(19.2)	1,084(100)

생계가 범죄피해 이전보다 곤란해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생계가 곤란해진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54.8%로 어려워졌다는 응답비율 45.2%보다 조금 높았다. 소송비용의 부담이 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75.1%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적·신체적 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이 52.4%, 그렇다는 응답이 47.7%로 거의 비슷하다.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서 63.6%가 범죄피해로 인해서 직장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나빠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데 49.4%와 50.6%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어려움은 겪는 비율과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비율이 비슷하게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지 범죄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일이나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7>은 조사대상기관별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는데, 5문항 모두에 대해서 조사대상기관별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7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 차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생계가 범죄피해 이전보다 곤란해졌다	2.74(1.05)	2.28(1.03)	2.35(1.06)	2.08(1.01)	2.36(1.07)	19.51***
소송비용의 부담이 컸다	1.98(0.99)	1.75(0.93)	1.80(0.99)	1.77(0.97)	1.83(0.98)	2.79*
정신·신체적 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	2.69(1.02)	2.22(1.07)	2.35(1.05)	2.22(1.03)	2.38(1.05)	11.71***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음	2.90(1.00)	2.50(1.09)	2.86(0.97)	2.50(1.07)	2.71(1.04)	12.23***
사건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나빠졌다	2.64(1.02)	2.13(0.96)	2.64(0.98)	2.38(1.07)	2.49(1.03)	12.92***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기관별로 보면 피해지원센터가 5개 문항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높은 점수는 범죄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지원센터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범죄피해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담소에서 응답한 사람들도 나머지 두 기관에 비해서 5문항 모두에서 사회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8>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5문항 모두 범죄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88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차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생계가 범죄피해 이전보다 곤란해졌다	2.49(1.03)	2.56(1.08)	2.08(1.05)	2.38(1.06)	2.36(1.07)	12.08***
소송비용의 부담이 컸다	1.92(1.01)	1.87(1.06)	1.68(0.89)	1.87(0.97)	1.83(0.98)	3.75 *
정신적·신체적 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	2.59(1.02)	2.50(0.99)	2.16(1.08)	2.21(1.03)	2.38(1.05)	12.75***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2.83(1.03)	2.76(1.03)	2.65(1.04)	2.51(1.04)	2.71(1.04)	4.61**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나빠졌다	2.50(1.02)	2.53(1.04)	2.59(1.02)	2.22(1.01)	2.49(1.03)	5.54***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문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문항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2.56)이며 다음이 강력범죄의 피해자(2.49)였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강력범죄의 피해자(1.92)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이 가정폭력과 기타 범죄로 1.87의 동일한 평균점수를 보였다. 치료비용으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은 것은, 강력범죄 피해자(2.59)였으며 다음이 가정폭력의 피해자(2.5)였다.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은 것은 강력범죄 피해자(2.83)이며,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2.76)였다. 대인관계가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성폭력으로 2.59의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다음이 가정폭력(2.53) 피해자였다.

<표 3-89>는 범죄피해와 관련해서 이사하거나 도피하거나 이직이나 실직의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범죄피해로 인해서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3%이며, 임시도피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3%이다. 직장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이며,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9%였다. 범죄피해로 인해서 임시로 피해있었던 피해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사와 실직, 이직 등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89 범죄피해와 관련한 이사, 도피, 이직, 실직 등의 경험 분포

단위 : 명(%)

이사·도피·실직·이직 경험	없었다	있었다	합계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이사의 경험	795(72.7)	298(27.3)	1,093(100)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임시 도피의 경험	712(64.7)	388(35.3)	1,100(100)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실직의 경험	858(79.0)	228(21.0)	1,086(100)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이직의 경험	866(80.1)	215(19.9)	1,081(100)

<표 3-90>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이사, 도피, 이직, 실직 등의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조사대상기관에 따라서 경험의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가 높았는데 0.36과 0.31의 평균값을 보였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0과 1로 구성된 변인의 평균값은 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기 때문에 상담소는 36%, 피해자지원센터는 31%가 이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도피의 경험은 상담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0.53에 이른다. 실직의 경험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상담소가 0.28로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직 경험은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가 .027과 0.22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범죄피해로 인해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주로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범죄피해자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3-90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 관련 이사·도피·이직·실직 등 경험차이

경험내용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이사의 경험	0.31(0.46)	0.15(0.36)	0.36(0.48)	0.22(0.41)	0.27(0.45)	11.11***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임시대피경험	0.30(0.46)	0.11(0.32)	0.53(0.50)	0.33(0.47)	0.35(0.48)	34.76***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실직의 경험	0.28(0.45)	0.10(0.30)	0.28(0.45)	0.14(0.34)	0.21(0.41)	13.86***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이직의 경험	0.22(0.41)	0.12(0.32)	0.27(0.45)	0.15(0.36)	0.20(0.40)	7.93***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3-91>에서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이사, 도피, 이직, 실직 등의 경험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다. 4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91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 관련 이사·도피·이직·실직 등 경험차이

경험내용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이사의 경험	0.26(0.44)	0.38(0.49)	0.28(0.45)	0.19(0.39)	0.27(0.45)	5.40***
범죄피해결과로 인한 임시도피 경험	0.31(0.46)	0.62(0.49)	0.39(0.49)	0.13(0.34)	0.35(0.48)	35.05***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실직의 경험	0.26(0.44)	0.32(0.47)	0.14(0.34)	0.14(0.34)	0.21(0.41)	12.50***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이직의 경험	0.22(0.41)	0.27(0.45)	0.17(0.38)	0.15(0.36)	0.20(0.40)	3.80**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범죄피해의 결과로 이사를 경험이 가장 많았던 범죄유형은 가정폭력으로 0.38 이고, 다음이 성폭력으로 0.28이다. 임시 도피의 경험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0.62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이 성폭력으로 0.39이다. 피해로 인한 실직의 경험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0.32로 가장 높지만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강력범죄로서 0.26이다. 이직의 경험은 가정폭력이 0.27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강력범죄로 0.22이다. 주거나 직업과 관련해서 범죄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높은 것은 주거와 직업이 나누는데, 주거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직업관련 문제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3. 가해자에 대한 감정 및 범죄피해의 회복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 어렵다. <표 3-92>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의 분포를 4문항으로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한 응답은 36%(390명)이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이른다.

표 3-92 가해자에 대한 감정 분포

단위 : 명(%)

가해자에 대한 감정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390(36.0)	405(37.4)	289(26.7)	1,084(100)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	354(32.5)	404(37.1)	330(30.3)	1,088(100)
상대방이 밉다	128(11.6)	356(32.3)	617(56.0)	1,101(100)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217(20.3)	348(32.5)	505(47.2)	1,070(100)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2.5%(354명)가 전혀 아니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67.5%는 여전히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밉다는 문항에 대해서 11.6%만이 전혀 아니라고 응답하였는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56%에 이르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문항에 대해서 20.3%(217명)만이 전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47.2%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해자가 더 심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포는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과 미움, 복수의 감정이 남아 있고 상대방이 더 강하게 처벌되길 원하는 마음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의 치료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93>은 조사대상기관별로 가해자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검증한 것인데, 4개의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서 상담소와 기타 기관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평균점수는 1.06과 0.92이다. 이들 기관의 이용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강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들 기관에 이러한 측면의 도움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93 조사대상기관별 가해자에 대한 감정 차이검증 결과

가해자에 대한 감정	피해자지원 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0.85(0.79)	0.68(0.77)	1.06(0.74)	0.92(0.81)	0.91(0.79)	9.56***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	0.95(0.79)	0.51(0.67)	1.21(0.74)	1.01(0.80)	0.98(0.79)	33.10***
상대방이 밉다	1.42(0.67)	1.30(0.75)	1.60(0.60)	1.38(0.74)	1.44(0.69)	9.36***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1.21(0.79)	1.13(0.81)	1.41(0.70)	1.24(0.80)	1.27(0.78)	6.31***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상담소와 기타 기관이 높은 점수는 보이는데, 1.21과 1.01에 이른다. 상대방이 밉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상담소가 1.60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나머지 기관은 1.3에서 1.4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상담소가 1.4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94>는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가해자에 대한 감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인데, 4문항 모두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준다.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성폭력으로 1.14의 평균점수이며, 다음은 강력범죄와 가정폭력으로 0.83이다. 이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장 많이 힘들어한다는 점을 알게 한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1.24와 1.22로 비슷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들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해가 끝났음에도 가해자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상대방이 밉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1.58과 1.52의 높은 점수를 보인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1.43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다음이 가정폭력(1.25), 강력범죄(1.21)의 순서이다.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더 강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 감정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3-94 피해범죄유형별 가해자에 대한 감정 차이검증 결과

가해자에 대한 감정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0.83(0.76)	0.83(0.74)	1.14(0.78)	0.69(0.79)	0.91(0.79)	17.40 ***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	0.90(0.78)	1.24(0.75)	1.22(0.74)	0.45(0.65)	0.98(0.79)	51.97 ***
상대방이 밉다	1.33(0.70)	1.52(0.68)	1.58(0.65)	1.35(0.72)	1.44(0.69)	10.16 ***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1.21(0.78)	1.25(0.78)	1.43(0.71)	1.11(0.82)	1.27(0.78)	8.81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가정폭력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감정적 고통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피해자들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95>는 사건발생 전과 비교해서 범죄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경제적 형편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비율은 24.3%(264명)이며, 나머지는 아직 회복 중이었다.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비율도 18.9%,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비율도 22.2%에 이른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완전히 회복된 비율이 더 적어진다. 16.6%(185명)만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4.1%(604명)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9.3%는 전혀 또는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29.6%(328명)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2.4%(580명)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거의 또는 전혀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18%였다.

표 3-95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단위 : 명(%)

회복정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합계
경제적 형편	264(24.3)	376(34.6)	205(18.9)	241(22.2)	1,086(100)
정신적 건강상태	185(16.6)	604(54.1)	212(19.0)	115(10.3)	1,116(100)
신체적 건강상태	328(29.6)	580(52.4)	122(11.0)	77(7.0)	1,107(100)

이러한 분포는 범죄피해로부터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낮지 않았다. 회복이 가장 더딘 것은 경제적 형편이었으며, 다음이 정신적 건강상태였고, 비교적 회복이 빠른 것이 신체적 건강상태였다.

<표 3-96>은 조사대상기관별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의 회복 정도 차이를 보여준다.

표 3-96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차이분석결과

회복정도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경제적 형편	2.45(1.08)	2.17(1.07)	2.65(1.03)	2.17(1.08)	2.39(1.08)	13.72 ***
정신적 건강상태	2.23(0.89)	1.97(0.88)	2.41(0.74)	2.18(0.85)	2.23(0.85)	11.66 ***
신체적 건강상태	2.06(0.86)	1.74(0.87)	2.06(0.76)	1.86(0.82)	1.95(0.83)	8.64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3개 항목 모두에서 기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형편은 상담소의 응답자들이 2.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로 2.45이다. 여기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 건강상태 역시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가 2.41과 2.23으로 높았다. 신체적 건강상태도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가 2.06과 1.74로 높았다.

터가 2.06으로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피해자지원센터와 상담소를 이용하는 범죄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97>은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별로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3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형편은 가정폭력이 2.8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세 범죄유형의 피해자들은 그보다 낮지만 비슷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가 2.44와 2.36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회복이 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체적 건강상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2.11과 2.01로서 다른 두 범죄유형보다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97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정도 차이분석결과

회복정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경제적 형편	2.29(1.11)	2.85(0.99)	2.34(1.02)	2.27(1.11)	2.39(1.08)	13.18 ***
정신적 건강상태	2.12(0.90)	2.44(0.70)	2.36(0.80)	2.01(0.87)	2.23(0.85)	13.66 ***
신체적 건강상태	1.89(0.82)	2.11(0.67)	2.01(0.85)	1.85(0.90)	1.95(0.83)	4.47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제7절 피해실태 특징 요약 및 논의

우선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응답자들과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곱씹어 보기로 하겠다. 둘 중에서는 비록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좀 더 심각한 편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역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제2절의 <표 3-21> 참조).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중 다수는 가정폭력 상담소 소속 응답자와 성폭력 상담소 응답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가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비교적 유사한 분포

를 나타내 보였다(제2절의 <표 3-22> 참조).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신체적 피해의 치료와 그 후유증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도 처방의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즉 신체적 피해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반대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처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처우 사이의 상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의 유사성을 가정했을 때, 이 두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둘 다 매우 낮음)의 차이는 없으나(제2절의 <표 3-31>에서 <표 3-35>까지 참조)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의 지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표 3-37> 및 <표 3-38> 참조)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 비해 적어도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반적으로는 상담소가 피해자지원센터에 비해서는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점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기관별 처우의 차이도 나타났다. 정신적 후유증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제3절의 <표 3-40> 및 <표 3-41> 참조),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와 상담소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의 차이는 현격할 정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낮았다. 더 나아가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상담소들이야 원래 그와 같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담소에 있는 피해자들보다 결코 많이 적은 것은 아님에

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후유증 치료 기능이 현저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치료 기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담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해나가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사건의 언론보도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으로 각 피해자들의 2차 피해실태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었는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언론보도 여부를 통제한 뒤 그 피해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적어도 선행연구들에서보다는 그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제5절 <표 3-77> 참조).

제4장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지원 욕구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지원 욕구

본 장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지원욕구와 피해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의 정도, 이용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해 다섯 개의 절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범죄피해 회복·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지 및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범죄피해 지원방안의 우선순위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정보통지 경험과 그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난 다음, 제5절에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및 그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범죄피해 회복·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 태도

1. 범죄피해 회복·지원에 대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반적 태도

범죄피해의 회복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 설문항목과 그 각각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만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의 필요성³⁷⁾에 대해서는—대체로 혹은 다소—필요하다는 의견이 41.4%(476명),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20.6%(236명)으로 합계 62.0%(712명)가 이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사건의 종결 후에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근황 등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합계)은 76.7%(87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 조처의 필요성 분포

단위 : 명(%)

세부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원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만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188(16.4)	247(21.6)	474(41.4)	236(20.6)	1145(100)	2.66(0.98)
사건의 종결 후에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근황 등을 챙기는 것	96(8.4)	169(14.9)	553(48.6)	320(28.1)	1138(100)	2.96(0.88)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54(4.8)	150(13.3)	557(49.4)	367(32.5)	1128(100)	3.10(0.80)

사실 위 표에 제시된 세부 질문문항처럼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윤리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경우엔 긍정적인 응답이 대체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응답 결과가 아니라 세

37) 이 질문은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회복적사법의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응답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 응답의 차이를 보자면, 세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첫 번째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필요치 않다에 1점, 필요치 않다에 2점, 필요하다에 3점, 매우 필요하다에 4점을 부여하고 그 평균을 구하면, 첫 번째 응답의 평균점수는 2.66점, 두 번째는 2.96점, 세 번째는 3.10점이다.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상대적인 수준에서 가해자와의 합의와 화해보다는 누군가 범죄피해 결과에 대해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해자의 개선이나 회개보다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더 큰 방점을 두는 문화가 지배적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4-2>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위 응답결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하위질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엔 분산분석결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응답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의 차이가 발생한 두 번째 응답의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3.08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조사대상기관별 국가기관의 조처에 대한 필요성인식 차이검증결과

세부문항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당소	기타	합계	F값
원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만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2.70(0.89)	2.73(0.90)	2.67(1.04)	2.58(1.04)	2.66(0.98)	1.17
사건의 종결 후에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근황 등을 챙기는 것	3.08(0.76)	2.88(0.89)	2.98(0.85)	2.89(0.97)	2.96(0.88)	3.06*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3.08(0.73)	3.18(0.68)	3.05(0.85)	3.12(0.87)	3.10(0.80)	1.18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3>은 피해범죄유형별로 위 응답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의견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평균 2.85)와 기타범죄 피해자(2.74)가 나머지 범죄피해유형들에 비해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혹은 범죄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유형의 경우 가해자와의 화해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거나 피해후유증이 심각한 강력범죄(2.66) 또는 성폭력범죄(2.53)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화해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덜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의 범죄피해 악몽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피해범죄유형별 차이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어떤 범죄유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표 4-3 피해범죄유형별 국가기관의 조처에 대한 필요성인식 차이검증결과

세부문항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원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만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2.66(0.93)	2.85(1.03)	2.53(1.05)	2.74(0.90)	2.66(0.98)	4.87 **
사건의 종결 후에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근황 등을 챙기는 것	2.99(0.81)	2.97(0.92)	2.96(0.88)	2.91(0.95)	2.96(0.88)	0.42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3.12(0.75)	3.06(0.88)	3.02(0.85)	3.22(0.71)	3.10(0.80)	2.93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한편,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우에도 피해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 경우엔 강력범죄 피해자(3.12)와 기타범죄 피해자(3.22)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던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3.06)와 성폭력 피해자(3.02)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응답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해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책망하는 경

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4-4>에서는 응답자가 범죄피해 당사자인지 혹은 그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이와 같은 응답의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4 응답자의 본인여부별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인식 차이검증

세부문항	본인	가족	합계	F값
원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만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2.72(0.98)	2.57(0.97)	2.66(0.98)	6.25*
사건의 종결 후에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근황 등을 챙기는 것	2.95(0.86)	3.00(0.89)	2.96(0.88)	0.85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3.09(0.79)	3.11(0.81)	3.10(0.80)	0.34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이 경우엔, 두 번째와 세 번째 응답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첫 번째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해자와 만나고 가해자를 용서하며 가해자와 화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범죄피해 당사자(2.72)보다 범죄피해자 가족(2.57)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³⁸⁾.

2.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치 경험 및 만족도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사회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피해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피

38) 범죄피해자보다 피해자 가족의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표본사례에서 피해자가족의 상당수는 살인범죄피해자 가족 혹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개연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도외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제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적 토대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형사사법기관으로 받은 조치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전에, <표 4-5>에서는 범죄피해 이후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 응답분포를 먼저 파악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에서는 응답자의 88.7%가 경찰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79.1%는 검찰로부터의 조치 경험, 77.1%는 법원의 조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피해이후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조치여부

단위 : 명(%)

사법기관의 조치	경찰	검찰	법원
조치 없음	129(11.3)	235(20.9)	255(22.9)
조치 있음	1,014(88.7)	890(79.1)	860(77.1)
합계	1,143(100)	1,125(100)	1,115(100)

<표 4-6>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각각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 혹은 피해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경찰의 조치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합쳐서 26.0%(1,014명 중 264명)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6.6%(361명)로 나타나, 중간의견(38.4%, 389명)을 제외할 경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검찰의 조치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6.0%(890명 중 232명)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2.7%(291명)로 나타나, 역시 불만족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법원의 경우에도 만족 의견이 24.3%, 불만족 의견이 32.4%로 불만족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도 경찰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각 기관의 평균점으로 판단하면 큰 격차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4-6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분포

단위 : 명(%)

만족도	경찰	검찰	법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44(14.2)	111(12.5)	109(12.7)
거의 만족하지 못한다	217(21.4)	180(20.2)	169(19.7)
그저 그렇다	389(38.4)	367(41.2)	373(43.4)
어느 정도 만족한다	209(20.6)	182(20.4)	173(20.1)
매우 만족한다	55 (5.4)	50 (5.6)	36 (4.2)
합계	1,014(100)	890(100)	860(100)
평균(표준편차)	2.82(1.08)	2.87(1.06)	2.83(1.02)

<표 4-7>은 사법기관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대상기관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피해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고, 특히 검찰 조치의 경우에 이 범주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평균 3.17, 표준편차 1.07)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기관별 만족도 차이는 법원의 경우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 경찰과 검찰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기관 범주, 즉 경찰(인권보호센터 등), 검찰(피해자지원실 등),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경찰(평균 2.56)과 검찰(평균 2.63)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특별히 낮게 나타났다.

표 4-7 조사대상기관별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사법기관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당소	기타	합계	F값
경찰	2.87 (0.99)	2.56 (1.10)	2.76 (1.03)	2.98 (1.18)	2.82 (1.08)	5.88***
검찰	3.17 (1.07)	2.63 (1.13)	2.82 (0.98)	2.73 (1.00)	2.87 (1.06)	11.16***
법원	2.87 (0.97)	2.81 (1.13)	2.89 (1.01)	2.75 (1.01)	2.83 (1.02)	0.96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8>은 피해범죄유형별로 사법기관 조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

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검찰과 법원 조치의 경우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 조치의 경우엔 차이가 나타났다. 강력범죄 피해자(평균 2.65, 표준편차 1.00)와 기타범죄 피해자들(평균 2.61)은 가정폭력 피해자(평균 2.79)와 성폭력 피해자(평균 3.13)들에 비해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4-8 피해범죄유형별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사법기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경찰	2.65 (1.00)	2.79 (1.13)	3.13 (1.05)	2.61 (1.14)	2.82 (1.08)	14.67***
검찰	2.86 (1.02)	2.93 (0.93)	2.93 (1.07)	2.71 (1.19)	2.87 (1.06)	1.63
법원	2.81 (1.00)	3.03 (0.98)	2.82 (1.01)	2.77 (1.12)	2.83 (1.02)	1.69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범죄피해당사자와 범죄피해자 가족 사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9 응답자 본인여부별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사례수	본인	가족	합계	F값
	643	371	1,014	
경찰	2.83(1.08)	2.80(1.09)	2.82(1.08)	0.23
검찰	2.82(1.03)	2.95(1.10)	2.87(1.06)	3.13
법원	2.88(1.02)	2.76(1.02)	2.83(1.02)	2.62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및 경험

1.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표 4-10>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 총 15개의 하위 질문 중 비교적 인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80.1%, 1,158명 중 927명이 안다고 응답),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61.0%),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서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58.3%),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절차를 설명 받을 수 있다는 것’(50.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지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23.4%),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30.6%),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30.2%), ‘피해자가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31.9%),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39.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가 오로지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지율은 아직까지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훨씬 더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다.

표 4-10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분포

단위 : 명(%)

세부분항	인지여부		합계
	모른다	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578(49.9)	580(50.1)	1158(100)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887(76.6)	271(23.4)	1158(100)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599(51.7)	559(48.3)	1158(100)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789(68.1)	369(31.9)	1158(100)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584(50.4)	574(49.6)	1158(100)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667(57.6)	491(42.4)	1158(100)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685(59.2)	473(40.8)	1158(100)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83(59.0)	475(41.0)	1158(100)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808(69.8)	350(30.2)	1158(100)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231(19.9)	927(80.1)	1158(100)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452(39.0)	706(61.0)	1158(100)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598(51.6)	560(48.4)	1158(100)
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697(60.2)	461(39.8)	1158(100)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804(69.4)	354(30.6)	1158(100)
피해자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483(41.7)	675(58.3)	1158(100)

<표 4-11>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위 표에서 살펴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분석에 있어 교차표를 이용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할 경우 표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각 응답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지원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을 경우 0점으로, 안다고 했을 경우 1점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표에 나타난 수치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과 같게 된다³⁹⁾. 참고로, 괄호 안의 수치들은 표준편차이다.

표 4-11 조사대상기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차이검증결과

세부문항	피해자지원 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0.55(0.50)	0.40(0.49)	0.51(0.50)	0.50(0.50)	0.50(0.50)	3.69*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22(0.42)	0.16(0.37)	0.22(0.41)	0.30(0.46)	0.23(0.42)	4.87**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0.48(0.50)	0.55(0.50)	0.41(0.49)	0.52(0.50)	0.48(0.50)	4.23**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0.27(0.45)	0.26(0.44)	0.36(0.48)	0.34(0.47)	0.32(0.47)	3.24*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0.42(0.50)	0.49(0.50)	0.56(0.50)	0.48(0.50)	0.50(0.50)	4.34**

39) 가령,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제도에 대한 합계 인지도 점수는 위 <표 4-11>에서 0.23인데, 이는 유효 응답자의 23%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0.61(0.49)	0.43(0.50)	0.34(0.47)	0.36(0.48)	0.42(0.49)	19.47***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0.39(0.49)	0.51(0.50)	0.39(0.49)	0.39(0.49)	0.41(0.49)	3.35*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59(0.49)	0.43(0.50)	0.35(0.48)	0.31(0.46)	0.41(0.49)	19.84***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42(0.50)	0.34(0.47)	0.27(0.44)	0.22(0.41)	0.30(0.46)	11.85***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0.79(0.41)	0.74(0.44)	0.88(0.32)	0.75(0.43)	0.80(0.40)	8.78***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0.79(0.41)	0.57(0.50)	0.60(0.49)	0.49(0.50)	0.61(0.49)	20.38***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0.53(0.50)	0.58(0.49)	0.47(0.50)	0.40(0.49)	0.48(0.50)	6.48***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0.58(0.49)	0.33(0.47)	0.33(0.47)	0.35(0.48)	0.40(0.49)	18.66***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34(0.47)	0.19(0.39)	0.34(0.47)	0.31(0.46)	0.31(0.46)	5.25***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0.51(0.50)	0.44(0.50)	0.69(0.46)	0.61(0.49)	0.58(0.49)	13.46***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의 맨 오른쪽에서 분산분석 결과인 F값을 확인해 보면, 15개 문항 모두에서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범주 및 기타범주에서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6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보였고, 기타범주의 경우엔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보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항목들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가령 가정폭력상담소나 아동상담소와 같은 상담소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영상녹화 등을 통한 증언 가능’에 대한 평균적 인지도가 특별히 높았다(0.56점, 나머지 범주들은 모두 0.5점 미만임). 이는 아동범죄피해 관련 상담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지 않나 싶다.

한편, <표 4-12>는 피해범죄유형별로 인지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총 15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피해범죄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범죄유형별 차이가 나타난 10개 항목 중에서 전반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차이가 유의미한 10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는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인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되는 듯싶다. 피해가 상습적이다 보니,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타범죄의 경우엔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유의미한 10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다.

표 4-12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여부 차이검증결과

인지여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0.44(0.50)	0.52(0.50)	0.61(0.49)	0.40(0.49)	0.50(0.50)	11.52***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17(0.37)	0.31(0.47)	0.29(0.46)	0.19(0.39)	0.23(0.42)	8.92***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0.46(0.50)	0.44(0.50)	0.47(0.50)	0.58(0.49)	0.48(0.50)	3.46*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0.26(0.44)	0.34(0.47)	0.41(0.49)	0.25(0.44)	0.32(0.47)	8.76***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0.42(0.49)	0.47(0.50)	0.62(0.49)	0.46(0.50)	0.50(0.50)	11.84***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0.43(0.50)	0.40(0.49)	0.41(0.49)	0.47(0.50)	0.42(0.49)	0.70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0.38(0.49)	0.37(0.48)	0.44(0.50)	0.44(0.50)	0.41(0.49)	1.56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42(0.49)	0.36(0.48)	0.44(0.50)	0.37(0.48)	0.41(0.49)	1.81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32(0.47)	0.27(0.45)	0.29(0.46)	0.32(0.47)	0.30(0.46)	0.57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0.75(0.44)	0.90(0.29)	0.85(0.36)	0.73(0.44)	0.80(0.40)	10.83***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0.61(0.49)	0.62(0.49)	0.63(0.48)	0.56(0.50)	0.61(0.49)	0.87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 받을 수 있다.	0.47(0.50)	0.61(0.49)	0.43(0.50)	0.50(0.50)	0.48(0.50)	5.24***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0.45(0.50)	0.40(0.49)	0.38(0.49)	0.32(0.47)	0.40(0.49)	3.65*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28(0.45)	0.42(0.49)	0.32(0.47)	0.24(0.43)	0.31(0.46)	5.32***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0.47(0.50)	0.76(0.43)	0.68(0.47)	0.49(0.50)	0.58(0.49)	24.24***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피해범죄유형의 특성이 인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는데(평균 0.45, 나머지 유형들에서는 모두 0.4점 이하임), 이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주로 강력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에 대한 인지도(평균 0.42점, 나머지 유형들은 0.32점 이하임)와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한 보호시설 이용에 대한 인지도(0.76점)가 특별히 높았는데, 이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여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13>은 응답자가 범죄피해 당사자 본인인지 혹은 그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원방안들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 총 15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10개 항목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와 관련해 다소 흥미로운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피해자 가족의 인지도가 피해자 본인의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4개의 항목은 ‘영상매체를 통한 증언’, ‘검찰청 내 피해자 상담실 이용’,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활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용’이다. 이 중 ‘영상매체를 통한 증언’에 대한 피해 가족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아동성폭력 피해자 부모 등의 영향일 수 있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활용’에 대한 피해 가족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살인범죄피해자 가족들의 영향일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가족의 인지도가 피해당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딸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특히 강력범죄피해자들의 경우—범죄피해당사자들이 범죄피해 직후 차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이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범죄피해자센터를 수소문해 찾아내는 역할은 주로 그 가족이 담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표 4-13 응답자 본인여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인지도부 차이검증결과

인지여부	본인	가족	합계	F값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0.49(0.50)	0.51(0.50)	0.50(0.50)	0.39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24(0.43)	0.22(0.41)	0.23(0.42)	0.73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0.47(0.50)	0.51(0.50)	0.48(0.50)	2.46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0.30(0.46)	0.34(0.48)	0.32(0.47)	2.04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0.44(0.50)	0.58(0.49)	0.50(0.50)	21.0***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0.39(0.49)	0.48(0.50)	0.42(0.49)	7.35**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0.41(0.49)	0.41(0.49)	0.41(0.49)	0.01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38(0.49)	0.46(0.50)	0.41(0.49)	8.05**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28(0.45)	0.34(0.47)	0.30(0.46)	3.93 *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	0.82(0.39)	0.77(0.42)	0.80(0.40)	3.25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0.58(0.49)	0.66(0.47)	0.61(0.49)	6.69**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0.50(0.50)	0.45(0.50)	0.48(0.50)	2.71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0.38(0.49)	0.42(0.49)	0.40(0.49)	1.88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33(0.47)	0.27(0.45)	0.31(0.46)	3.70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0.61(0.49)	0.54(0.50)	0.58(0.49)	4.37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2.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 경험 실태

<표 4-14>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들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4-14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분포

단위 : 명(%)

세부분항	경험여부		합계
	없다	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780(67.4)	378(32.6)	1158(100)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037(89.6)	121(10.4)	1158(100)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1012(87.4)	146(12.6)	1158(100)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042(90.0)	116(10.0)	1158(100)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955(82.5)	203(17.5)	1158(100)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950(82.0)	208(18.0)	1158(100)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948(81.9)	210(18.1)	1158(100)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945(81.6)	213(18.4)	1158(100)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060(91.5)	98(8.5)	1158(100)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632(54.6)	526(45.4)	1158(100)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782(67.5)	376(32.5)	1158(100)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879(75.9)	279(24.1)	1158(100)
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999(86.3)	159(13.7)	1158(100)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48(90.5)	110(9.5)	1158(100)
피해자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862(74.4)	296(25.6)	1158(100)

총 15개의 항목 중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대체로 비교적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정 피해자가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45.4%, 참고로, 해당항목에 대한 인지율은 80.1%였음, <표 4-10> 참조),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를 설명 받을 수 있다는 것’(32.6%, 인지율은 50.1%),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32.5%, 인지율은 6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피해자들이 좀처럼 잘 이용하지 못한 지원방안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8.5%, 인지율은 30.2%), ‘피해자가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10.0%, 인지율은 31.9%),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12.6%, 인지율은 48.3%로 인지율과 경험률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임)', '범죄피해로 사망·장애·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13.7%, 인지율은 39.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경험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표 4-15 조사대상기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차이검증결과

세부문항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사례수	283	183	365	327	1,158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0.38(0.49)	0.19(0.39)	0.31(0.46)	0.37(0.48)	0.33(0.47)	8.12 ***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11(0.31)	0.07(0.25)	0.09(0.29)	0.14(0.35)	0.10(0.31)	2.56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0.15(0.36)	0.06(0.24)	0.13(0.34)	0.13(0.34)	0.13(0.33)	3.10 *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0.09(0.28)	0.05(0.23)	0.13(0.33)	0.11(0.31)	0.10(0.30)	2.5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0.13(0.34)	0.08(0.27)	0.25(0.43)	0.18(0.39)	0.18(0.38)	10.10 ***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0.41(0.49)	0.09(0.28)	0.10(0.30)	0.12(0.32)	0.18(0.38)	52.85 ***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0.20(0.40)	0.21(0.41)	0.16(0.37)	0.16(0.37)	0.18(0.39)	1.28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38(0.49)	0.10(0.31)	0.15(0.36)	0.09(0.29)	0.18(0.39)	35.75 ***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16(0.37)	0.05(0.22)	0.07(0.25)	0.06(0.24)	0.08(0.28)	9.25 ***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0.34(0.47)	0.11(0.31)	0.71(0.45)	0.46(0.50)	0.45(0.50)	81.29 ***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0.61(0.49)	0.13(0.33)	0.28(0.45)	0.24(0.43)	0.32(0.47)	57.49 ***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 받을 수 있다.	0.28(0.45)	0.32(0.47)	0.21(0.41)	0.20(0.40)	0.24(0.43)	4.43 **
범죄피해로 사망·장애·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0.29(0.45)	0.04(0.21)	0.10(0.31)	0.09(0.29)	0.14(0.34)	27.57 ***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12(0.32)	0.04(0.19)	0.10(0.30)	0.10(0.31)	0.09(0.29)	2.93 *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0.19(0.39)	0.05(0.22)	0.37(0.48)	0.31(0.46)	0.26(0.44)	27.06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 경험이 있는 경우를 1점으로 부여하고 난 다음, 각 평균값을 계산하여 이들 평균값들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표의 맨 오른쪽 분산분석 결과인 F값을 보면, 총 15개의 항목 중에서 2개의 항목(신변보호, 기록열람)을 뺀 나머지 13개 항목에서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이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편이라고 할 만하다.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13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이들의 평균은 최고치였다. 반면,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의 경우, 13개 중 10개 항목에서 최저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표 4-15>는 피해범죄유형별로 경험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총 15개의 항목 중 배상명령제도를 제외한 14개 항목에서 범죄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용 경험률이 높고, 기타범죄의 이용 경험률이 낮은 형세라고 할 만하다. 특히, 기타범죄는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14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최저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 이용,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활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구조금 수령 등의 경험률이 타집단에 비해 높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제도, 신변보호 요청, 상담소 이용,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통지, 주거지원, 보호시설 사용 등의 경험률이 타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사건처리 및 절차에 대한 설명 청취,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 출석 거부, 영상매체를 통한 증언, 소송기록 열람 등의 경험률이 타집단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차이검증결과

인지여부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사례수	404	178	372	204	1,158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0.30(0.46)	0.33(0.47)	0.42(0.49)	0.19(0.39)	0.33(0.47)	12.16***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08(0.28)	0.17(0.38)	0.10(0.31)	0.09(0.28)	0.10(0.31)	3.41 *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0.15(0.36)	0.21(0.41)	0.09(0.29)	0.06(0.24)	0.13(0.33)	8.62***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0.08(0.27)	0.04(0.21)	0.17(0.38)	0.05(0.22)	0.10(0.30)	12.49***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0.12(0.32)	0.08(0.28)	0.35(0.48)	0.05(0.22)	0.18(0.38)	44.33***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0.23(0.42)	0.12(0.33)	0.19(0.39)	0.12(0.33)	0.18(0.38)	4.77**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0.20(0.40)	0.12(0.32)	0.21(0.41)	0.15(0.36)	0.18(0.39)	3.00*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24(0.43)	0.15(0.36)	0.16(0.37)	0.13(0.34)	0.18(0.39)	5.08**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11(0.31)	0.06(0.23)	0.07(0.26)	0.09(0.28)	0.08(0.28)	2.01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0.32(0.47)	0.71(0.46)	0.65(0.48)	0.13(0.34)	0.45(0.50)	89.95***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0.39(0.49)	0.31(0.47)	0.35(0.48)	0.16(0.37)	0.32(0.47)	11.29***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 받을 수 있다.	0.27(0.44)	0.35(0.48)	0.16(0.37)	0.24(0.43)	0.24(0.43)	9.45***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0.22(0.41)	0.11(0.32)	0.10(0.30)	0.07(0.25)	0.14(0.34)	12.95***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11(0.31)	0.13(0.34)	0.08(0.28)	0.05(0.23)	0.09(0.29)	2.94*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0.18(0.39)	0.44(0.50)	0.35(0.48)	0.07(0.25)	0.26(0.44)	35.18***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17>은 응답자가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그 가족 여부에 따라 피해자 지원방안들에 대한 경험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전체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이다.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경험, 영상매체

를 통한 증언의 경험,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 이용 경험,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이용 경험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보다 피해자의 가족들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상담소의 이용,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통지, 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한 보호시설 활용 경험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 가족들보다 피해자 본인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응답자 본인여부별 피해자 지원방안의 경험여부 차이검증결과

경험여부	본인	가족	합계	F값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0.34(0.47)	0.30(0.46)	0.33(0.47)	1.48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11(0.31)	0.10(0.30)	0.10(0.31)	0.02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0.13(0.34)	0.12(0.32)	0.13(0.33)	0.27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0.08(0.27)	0.14(0.35)	0.10(0.30)	10.92 ***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0.13(0.34)	0.25(0.43)	0.18(0.38)	25.40 ***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0.15(0.36)	0.23(0.42)	0.18(0.38)	10.45 ***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0.19(0.39)	0.16(0.37)	0.18(0.39)	1.78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16(0.37)	0.22(0.41)	0.18(0.39)	5.18 *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07(0.26)	0.11(0.31)	0.08(0.28)	3.77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0.50(0.50)	0.38(0.49)	0.45(0.50)	14.50 ***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0.31(0.46)	0.36(0.48)	0.32(0.47)	3.02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0.27(0.45)	0.19(0.39)	0.24(0.43)	10.70 ***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0.12(0.33)	0.16(0.37)	0.14(0.34)	2.75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10(0.30)	0.08(0.27)	0.09(0.29)	1.33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0.29(0.45)	0.19(0.40)	0.26(0.44)	13.46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의 우선 순위

1. 피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

<표 4-18>은 앞에서 살펴본 15가지 피해자 지원 항목들 중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 세 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후 나타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항목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137명의 유효 응답자 중 214명(18.8%)이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거의 유사한 수의 응답자수인 213명(18.7%)이 ‘신변보호’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1순위 선택 중 세 번째는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는 것’으로 110명(9.7%)이 이를 선택하였다.

2순위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 및 안정을 위한 보호시설 사용이 1,125명의 유효 응답자 중 129명(11.5%)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범죄피해자구조금(127명, 11.5%), 신변보호(113명, 10.0%) 등의 순이었다.

3순위의 경우, 보호시설 사용(1,105명 중 215명, 19.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구조금(112명, 10.1%), 신변보호(98명, 8.9%)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하여 중복 빈도를 살펴볼 경우,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보호시설 사용’(452명)이었고, 그 다음은 ‘신변보호’(424명), ‘피해자구조금’(349명)의 순이었다. 단, 여기서 피해자구조제도를 좀 더 넓게 생각할 경우엔 포괄적인 의미의 피해자구조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총 544명이 되어 가장 높은 빈도로 올라서게 된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 가지⁴⁰⁾는 피해자들이 가장

40) 2009년도 조사연구(김지영·박형민, 2009 : 170)에 대체로 유사한 분석결과가 존재한다. 아니, 본 조사가 이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신뢰도를 높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09년도 연구에서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 모두 합쳐 중복응답빈도를 산출했을 때 신변보호(21.0%)가 첫 번째, 피해자구조제도(16.0%)가 두 번째, 사건처리결과통지(12.3%)가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구조방안들이라는 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8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중요도 인지분포

단위 : 명(%)

중요도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214(18.8)	68 (6.0)	73 (6.6)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54 (4.7)	65 (5.8)	43 (3.9)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13(18.7)	113(10.0)	98 (8.9)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70 (6.2)	71 (6.3)	53 (4.8)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18 (1.6)	50 (4.4)	45 (4.1)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13 (1.1)	37 (3.3)	35 (3.2)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12 (1.1)	28 (2.5)	33 (3.0)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1 (5.4)	70 (6.2)	64 (5.8)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3 (2.0)	37 (3.3)	48 (4.3)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	92 (8.1)	102(9.1)	84 (7.6)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54 (4.7)	85 (7.6)	63 (5.7)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24 (2.1)	41 (3.6)	51 (4.6)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10 (9.7)	127(11.3)	112(10.1)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71 (6.2)	102 (9.1)	88 (8.0)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08 (9.5)	129(11.5)	215(19.5)
합계	1,137(100)	1,125(100)	1,105(100)

<표 4-19>는 앞의 <표 4-18>에서 오로지 1순위에 해당되는 응답분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기관별로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표 4-19 조사대상기관과 첫 번째 중요한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1순위 응답에 국한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67(23.8)	56(30.9)	41(11.5)	50(15.6)	214(18.8)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8(2.8)	8(4.4)	18(5.1)	20(6.3)	54(4.7)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42(14.9)	34(18.8)	74(20.8)	63(19.7)	213(18.7)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8(2.8)	8(4.4)	25(7.0)	29(9.1)	70(6.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1(0.4)	1(0.6)	9(2.5)	7(2.2)	18(1.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5(1.8)	2(1.1)	3(0.8)	3(0.9)	13(1.1)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2(0.7)	2(1.1)	3(0.8)	5(1.6)	12(1.1)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9(10.3)	6(3.3)	15(4.2)	11(3.4)	61(5.4)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1.4)	8(4.4)	5(1.4)	6(1.9)	23(2.0)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12(4.3)	4(2.2)	47(13.2)	29(9.1)	92(8.1)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33(11.7)	7(3.9)	5(1.4)	9(2.8)	54(4.7)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5(1.8)	13(7.2)	4(1.1)	2(0.6)	24(2.1)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9(13.9)	19(10.5)	22(6.2)	30(9.4)	110(9.7)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3.6)	3(1.7)	40(11.3)	18(5.6)	71(6.2)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6(5.7)	10(5.5)	44(12.4)	38(11.9)	108(9.5)
합계	281(100)	181(100)	355(100)	320(100)	1137(100)
카이자승값	218.3(df=42) ***				

먼저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설명 청취 (67명, 23.8%)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변보호(42명,

14.9%), 피해자구조금(39명, 13.9%) 등의 순이었다. 경찰·검찰·법률구조공단 등의 국가기관의 경우, 역시 사건처리 절차 통보(56명, 30.9%)가 가장 많았고, 신변보호(34명, 18.8%), 구조금(10.5%) 등의 순이었다. 이 두 기관에서의 응답자들의 응답분포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띄고 있는 듯하다.

한편,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의 신변보호(74명, 20.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담소의 활용(47명, 13.2%), 보호시설 사용(44명, 12.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관의 경우엔, 신변보호(63명, 19.7%), 사건처리절차 통보(50명, 15.5%), 보호시설 사용(38명, 11.9%) 등의 순이었다.

네 개의 범주를 대략 두 그룹으로 재분류해도 좋을 정도로, 피해자지원센터와 국가기관에서의 응답분포가 서로 유사하고 상담소와 기타 기관에서의 응답분포 역시 다소나마 서로 유사한 동시에, 앞의 두 기관과 뒤의 두 기관의 응답분포의 차이는 제법 두드러진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간 차이로 인해 카이제곱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은 앞의 <표 4-18>에서 오로지 1순위에 해당되는 응답분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범죄유형먼저 강력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설명(89명, 22.3%)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변보호(67명, 16.8%), 범죄피해자 구조금(53명,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피해자의 신변보호(36명, 20.7%)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담소 이용(27명, 15.5%),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14.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엔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변보호(70명, 19.1%)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다음 순위는 달랐는데,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사건처리 및 절차에 대한 설명(51명, 13.9%),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위한 보호시설의 사용(49명, 13.4%) 등의 순이었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표 4-20 피해범죄유형과 첫 번째 중요한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1순위 응답에 국한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89(22.3)	17(9.8)	51(13.9)	57(28.8)	214(18.8)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8(4.5)	13(7.5)	17(4.6)	6(3.0)	54(4.7)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67(16.8)	36(20.7)	70(19.1)	40(20.2)	213(18.7)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29(7.3)	4(2.3)	29(7.9)	8(4.0)	70(6.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4(1.0)	0(0.0)	12(3.3)	2(1.0)	18(1.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6(1.5)	2(1.1)	2(0.5)	3(1.5)	13(1.1)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3(0.8)	0(0.0)	4(1.1)	5(2.5)	12(1.1)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3(5.8)	9(5.2)	20(5.5)	9(4.5)	61(5.4)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5(1.3)	0(0.0)	10(2.7)	8(4.0)	23(2.0)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22(5.5)	27(15.5)	40(10.9)	3(1.5)	92(8.1)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5(6.3)	2(1.1)	15(4.1)	12(6.1)	54(4.7)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8(2.0)	3(1.7)	2(0.5)	11(5.6)	24(2.1)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53(13.3)	19(10.9)	20(5.5)	18(9.1)	110(9.7)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4.8)	25(14.4)	25(6.8)	2(1.0)	71(6.2)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8(7.0)	17(9.8)	49(13.4)	14(7.1)	108(9.5)
합계	399(100)	174(100)	366(100)	198(100)	1137(100)
카이자승값	171.0(df=42) ***				

마지막으로 기타범죄의 경우엔, 사건처리절차 설명(57명, 28.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변보호(40명, 20.2%), 피해자 구조금(18명, 9.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신변보호 항목은 거의 모든 피해범죄유형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이라는 점 등 약간의 공통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집단 간에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정도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 표에서는 각 피해범죄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엔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구조금 문제가 중요할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엔 신변보호와 함께 임시적인 거처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신변보호와 함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중요시할 만한 피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각 피해범죄유형별 특성들이 반영되어 각 유형별로 조금씩 서로 다른 응답분포가 나오게 됨에 따라 이 교차표 분석은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21>은 앞의 <표 4-18>에서 오로지 1순위에 해당되는 응답분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 여부에 따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가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본인인 경우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135명, 18.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하는 보호시설(75명, 10.4%), 범죄피해자 구조금(74명, 10.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응답자가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엔,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112명, 26.7%)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78명, 18.6%), 범죄피해자 구조금(36명,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응답자 본인여부와 첫 번째 중요한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1순위 응답에 국한	본인	가족	합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102(14.2)	112(26.7)	214(18.8)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7 (5.2)	17 (4.1)	54 (4.7)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135(18.8)	78(18.6)	213(18.7)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43 (6.0)	27 (6.4)	70 (6.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12 (1.7)	6 (1.4)	18 (1.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10 (1.4)	3 (0.7)	13 (1.1)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8 (1.1)	4 (1.0)	12 (1.1)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7 (5.2)	24 (5.7)	61 (5.4)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3 (1.8)	10 (2.4)	23 (2.0)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	61 (8.5)	31 (7.4)	92 (8.1)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36 (5.0)	18 (4.3)	54 (4.7)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17 (2.4)	7 (1.7)	24 (2.1)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74(10.3)	36 (8.6)	110 (9.7)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58 (8.1)	13 (3.1)	71 (6.2)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75(10.4)	33 (7.9)	108 (9.5)
합계	718(100)	419(100)	1,137(100)
카이자승값	39.1(df=14) ***		

아무래도 피해자 가족인 경우엔 사건처리에 크게 관여할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변보호

가 우선시될 여지가 크고, 동시에 그와 어느 정도 연관하여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욕구 역시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그런 연유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2.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원방안

<표 4-22>는 앞에서 살펴본 15가지 피해자 지원방안 항목들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지원방안 세 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후 나타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피해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먼저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항목은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혹은 아동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경우’로 664명의 유효 응답자 중 212명(31.9%)이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84명(12.7%)이 ‘안전·심리적 안정·치료 등을 위한 보호시설 이용’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1순위 선택 중 세 번째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용’으로 97명(14.6%)이 이를 선택하였다.

2순위의 경우에도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은 상담소 이용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492명의 유효 응답자 중 117명(23.8%)가 이 항목을 2순위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치료 및 안정을 위한 보호시설 사용이 173명(14.8%)을 차지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용(55명, 11.2%)이 세 번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의 경우, 보호시설 사용(361명 중 54명, 15.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지원센터 이용(47명, 13.0%), 각종 상담소 이용(42명, 11.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가장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순서 분포

단위 : 명(%)

가장 도움이 된 것	1순위	2순위	3순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73(11.0)	44 (8.9)	38(10.5)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2 (1.8)	12 (2.4)	15 (4.2)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1 (3.2)	9 (1.8)	17 (4.7)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8 (1.2)	7 (1.4)	6 (1.7)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24 (3.6)	27 (5.5)	23 (6.4)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24 (3.6)	16 (3.3)	14 (3.9)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12 (1.8)	24 (4.9)	20 (5.5)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9 (2.9)	27 (5.5)	22 (6.1)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0.6)	2 (0.4)	3 (0.8)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	212(31.9)	117(23.8)	42(11.6)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97(14.6)	55(11.2)	47(13.0)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51 (7.7)	45 (9.1)	42(11.6)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9 (2.9)	20 (4.1)	8 (2.2)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0.6)	14 (2.8)	10 (2.8)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84(12.7)	73(14.8)	54(15.0)
합계	664(100)	492(100)	361(100)

요컨대 1·2·3순위 모두 상담소 이용, 피해자지원센터 이용,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 이용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피해자 지원방안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해자 지원방안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나는 너무 특수한 종류의 지원방안의 경우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구조금 같은 경우엔 그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는 아직까지 구조기금 자체가 적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구조기금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범죄피해자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일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상담소나 피해자지원센터 혹은 각종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양적으로—보다 특수한 지원방식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한 정도로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요구 사항 중 어떤 것들은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가령, 앞에서 피해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경우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순위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경찰력 등의 한계로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신변이 모두 보호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⁴¹⁾. 다시 말해, 피해자들은 어쩌면 사법기관의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각종 피해자 상담소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각종 피해자 보호시설들의 긍정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해석이다.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이 기관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즉, 어떤 다른 거창한 형태의 피해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지 잠시의 피신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상담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쩌면 실제로도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

41) 이는 사건처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사법기관의 설명 욕구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엔 그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중요도에 비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그리 적지만은 않았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무튼 위 세 가지 해석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복합적인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4-23>은 앞의 <표 4-22>에서 오로지 1순위에 해당되는 응답분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기관별로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23 조사대상기관과 첫 번째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단위 : 명(%)

1순위 응답에 국한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16(8.7)	11(14.1)	14(5.9)	32(19.3)	73(11.0)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0(0.0)	2(2.6)	3(1.3)	7(4.2)	12(1.8)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4(2.2)	6(7.7)	3(1.3)	8(4.8)	21(3.2)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0.5)	1(1.3)	3(1.3)	3(1.8)	8(1.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2(1.1)	4(5.1)	8(3.4)	10(6.0)	24(3.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19(10.4)	3(3.8)	1(0.4)	1(0.6)	24(3.6)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2(1.1)	6(7.7)	0(0.0)	4(2.4)	12(1.8)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2(6.6)	3(3.8)	4(1.7)	0(0.0)	19(2.9)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1.6)	1(1.3)	0(0.0)	0(0.0)	4(0.6)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17(9.3)	5(6.4)	128(54.0)	62(37.3)	212(31.9)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83(45.4)	1(1.3)	7(3.0)	6(3.6)	97(14.6)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4(2.2)	33(42.3)	12(5.1)	2(1.2)	51(7.7)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5(8.2)	1(1.3)	2(0.8)	1(0.6)	19(2.9)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0(0.0)	1(1.3)	3(1.3)	0(0.0)	4(0.6)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5(2.7)	0(0.0)	49(20.7)	30(18.1)	84(12.7)
합계	183(100)	78(100)	237(100)	166(100)	664(100)
카이자승값	575.9(df=42) ***				

먼저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지원센터 이용(85명, 45.4%)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등과 같은 각종 상담소 이용(17명, 9.3%), 검찰청 내 피해자 상담실 이용(19명, 10.4%) 등의 순이었다. 경찰·검찰·법률구조공단 등의 국가기관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통지(33명, 42.3%)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건처리 절차 통보(11명, 14.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상담소의 경우엔, 각종 피해자 관련 상담소 이용(128명, 54.0%)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이용(49명, 20.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관의 경우엔, 역시 범죄피해 관련 상담소 이용(62명, 37.3%)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건처리절차 통보(32명, 19.3%), 보호시설 사용(30명, 18.1%) 등의 순이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다소간의 집단간 차이로 인해 카이자승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는 앞의 <표 4-22>에서 오로지 1순위에 해당되는 응답분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범죄유형별로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59명, 25.4%)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각종 범죄피해 관련 상담소 이용(38명, 16.4%),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설명(26명,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피해범죄유형과 첫 번째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방안의 교차분석

단위 : 명(%)

1순위 응답에 국한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26(11.2)	10(7.8)	26(11.4)	11(14.7)	73(11.0)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9)	4(3.1)	3(1.3)	3(4.0)	12(1.8)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9(3.9)	3(2.3)	5(2.2)	4(5.3)	21(3.2)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3(1.3)	0(0.0)	5(2.2)	0(0.0)	8(1.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10(4.3)	0(0.0)	12(5.2)	2(2.7)	24(3.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17(7.3)	0(0.0)	2(0.9)	5(6.7)	24(3.6)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5(2.2)	0(0.0)	2(0.9)	5(6.7)	12(1.8)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8(3.4)	4(3.1)	5(2.2)	2(2.7)	19(2.9)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9)	0(0.0)	0(0.0)	2(2.7)	4(0.6)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38(16.4)	59(46.1)	110(48.0)	5(6.7)	212(31.9)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59(25.4)	6(4.7)	21(9.2)	11(14.7)	97(14.6)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17(7.3)	9(7.0)	4(1.7)	21(28.0)	51(7.7)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3(5.6)	2(1.6)	1(0.4)	3(4.0)	19(2.9)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4)	3(2.3)	0(0.0)	0(0.0)	4(0.6)
피해자의 안전·심리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2(9.5)	28(21.9)	33(14.4)	1(1.3)	84(12.7)
합계	232(100)	128(100)	229(100)	75(100)	664(100)
카이자승값	243.2(df=42)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피해 관련 상담소 이용(59명, 46.1%)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호시설 이용(28명, 21.9%),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사건처리 과정 통보 혹은 설명(10명, 7.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상담소 이용(110명, 48.0%)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순위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위한 보호시설의 사용(33명, 14.4%), 사건처리 과정 및 절차의 통보(26명, 11.4%) 등의 순이었다. 기타범죄의 경우엔, 다른 피해범죄유형과는 달리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통지(21명, 28.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11명, 14.7%) 혹은 사건처리 과정 및 절차의 통보(11명, 14.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와 같은 다소간의 집단 간 차이로 인해 카이자승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는 앞의 <표 4-22>에서 오로지 1순위에 해당되는 응답분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 여부에 따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25 응답자 본인여부와 첫 번째 도움이 되는 피해자 자원방안의 교차분석

단위 : 명(%)

1순위 응답에 국한	본인	가족	합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42 (9.7)	31(13.5)	73(11.0)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8 (1.8)	4 (1.7)	12 (1.8)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12 (2.8)	9 (3.9)	21 (3.2)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4 (0.9)	4 (1.7)	8 (1.2)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9 (2.1)	15 (6.6)	24 (3.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10 (2.3)	14 (6.1)	24 (3.6)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10 (2.3)	2 (0.9)	12 (1.8)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5 (3.4)	4 (1.7)	19 (2.9)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0 (0.0)	4 (1.7)	4 (0.6)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	152(34.9)	60(26.2)	212(31.9)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51(11.7)	46(20.1)	97(14.6)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41 (9.4)	10 (4.4)	51 (7.7)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4 (3.2)	5 (2.2)	19 (2.9)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0.5)	2 (0.9)	4 (0.6)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65(14.9)	19 (8.3)	84(12.7)
합계	435(100)	229(100)	664(100)
카이자승값	50.7(df=14) ***		

응답자가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본인인 경우엔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은 각종 범죄피해 관련 상담소를 이용(435명 중 152명, 34.9%)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위한 보호시설의 이용(65명, 14.9%),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이용(51명, 11.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응답자가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엔, 범죄피해 당사자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피해 관련 상담소를 이용(229명 중 60명, 26.2%)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 응답에서는 가족의 경우와 달랐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용(46명, 20.1%)이 그 다음이었고, 사건처리 및 절차에 대한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설명 혹은 통보(31명, 31.5%)가 그 다음 순서였던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다소간의 집단 간 차이로 인해 카이자승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정보통지 경험

앞서 제3절에서 분석한 내용 중에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판단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적어도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그 부분을 따로 확대하여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필요성 인식 정도와 경험 여부 등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를 피해범죄유형별, 조사대상기관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의 필요성 인지

<표 4-26>에서는 조사대상 범죄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받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를 보면 한 눈에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앞 절에서 언급한 것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대로, 거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가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88.1%(992명)로 그나마 가장 적은 편이었고, 나머지 모든 사항들, 즉 범행사실의 구체적 내용(94.4%, 1,068명), 가해자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 여부(94.5%, 1,065명), 수사진행 정도(95.4%, 1,078명), 가해자 상대방이 재판 중인지 아닌지의 여부(94.6%, 1,063명), 재판 장소와 시간(92.6%, 1,040명), 재판참여와 방청 방법(91.8%, 1,030명), 보석이나 석방 등 상대방의 신변 변동 상태(93.1%, 1,048명), 재판 판결 결과(96.5%, 1,087명),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소개(96.1%, 1,089명) 등에 대해 90% 이상 95%에 근접한 비율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사법기관의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단위 : 명(%)

필요성인지	필요없다	필요하다	합계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63(5.6)	1,068(94.4)	1,131(100)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134(11.9)	992(88.1)	1,126(100)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62(5.5)	1,065(94.5)	1,127(100)
수사진행 정도	52(4.6)	1,078(95.4)	1,130(100)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61(5.4)	1,063(94.6)	1,124(100)
재판 장소와 시간	83(7.4)	1,040(92.6)	1,123(100)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92(8.2)	1,030(91.8)	1,122(100)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78(6.9)	1,048(93.1)	1,126(100)
재판 판결결과	39(3.5)	1,087(96.5)	1,126(100)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44(3.9)	1,089(96.1)	1,133(100)

다음 <표 4-27>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통지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0점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1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안의 수치)를 산출한 연후에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의견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이 정보통지의 필요성에 대해 워낙 압도적인 의견을 표출한 탓에 조사대상기관별 필요성 인지도의 차이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총 10개의 항목 중에서 9개의 항목들은 조사대상기관별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오로지 ‘가해자의 신변 변동 상태’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27 조사대상기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차이검증

필요성	피해지원 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0.93 (0.26)	0.96 (0.19)	0.94 (0.24)	0.95 (0.21)	0.94 (0.23)	0.93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0.87 (0.34)	0.91 (0.29)	0.88 (0.32)	0.87 (0.33)	0.88 (0.32)	0.77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0.93 (0.25)	0.97 (0.18)	0.95 (0.22)	0.94 (0.24)	0.94 (0.23)	0.96
수사진행 정도	0.94 (0.23)	0.97 (0.16)	0.96 (0.20)	0.95 (0.22)	0.95 (0.21)	0.84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0.93 (0.25)	0.95 (0.22)	0.96 (0.20)	0.94 (0.24)	0.95 (0.23)	0.91
재판 장소와 시간	0.92 (0.27)	0.91 (0.29)	0.94 (0.24)	0.92 (0.27)	0.93 (0.26)	0.61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0.90 (0.30)	0.91 (0.29)	0.94 (0.23)	0.91 (0.29)	0.92 (0.27)	1.57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0.91 (0.28)	0.96 (0.21)	0.95 (0.21)	0.91 (0.29)	0.93 (0.25)	3.16 *
재판 판결결과	0.97 (0.18)	0.98 (0.13)	0.97 (0.17)	0.95 (0.22)	0.97 (0.18)	1.42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0.97 (0.17)	0.97 (0.18)	0.96 (0.19)	0.95 (0.22)	0.96 (0.19)	0.91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의견 차이가 나타난 항목(가해자의 신변 변동 상태 통지의 필요성)을 자세히 보자면,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상담소의 피해자들의 평균이 각각 0.96점과 0.95점이었던 것에 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의 피해자들의 평균은 각각 0.9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그룹간의 평균차이로 인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이와 같은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위 표만을 가지고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다. 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 남편의 신변 변동 상태에 좀 더 민감할 것이란 추측도 일단은 가능하지만, 다음 <표 4-28>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

<표 4-28>은 피해범죄유형별로 수사재판 관련 정보 통지의 필요성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의 인지 정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인지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변 변동 상태에 특별히 더 민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8 피해범죄유형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차이검증

필요성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0.95 (0.21)	0.93 (0.26)	0.94 (0.24)	0.95 (0.22)	0.94 (0.23)	0.45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0.89 (0.31)	0.87 (0.34)	0.88 (0.33)	0.87 (0.33)	0.88 (0.32)	0.22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0.95 (0.21)	0.91 (0.28)	0.94 (0.23)	0.96 (0.20)	0.94 (0.23)	1.68
수사진행 정도	0.97 (0.16)	0.94 (0.25)	0.94 (0.23)	0.95 (0.21)	0.95 (0.21)	1.79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0.97 (0.18)	0.94 (0.25)	0.93 (0.25)	0.93 (0.25)	0.95 (0.23)	1.75
재판 장소와 시간	0.95 (0.22)	0.93 (0.26)	0.91 (0.29)	0.91 (0.28)	0.93 (0.26)	1.85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0.93 (0.26)	0.94 (0.25)	0.91 (0.29)	0.91 (0.29)	0.92 (0.27)	0.64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0.94 (0.24)	0.93 (0.26)	0.91 (0.29)	0.95 (0.21)	0.93 (0.25)	1.59
재판 판결결과	0.98 (0.15)	0.95 (0.21)	0.95 (0.21)	0.97 (0.16)	0.97 (0.18)	1.48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0.97 (0.18)	0.94 (0.24)	0.96 (0.19)	0.97 (0.17)	0.96 (0.19)	1.18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29>에서는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피해자의 가족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다.

표 4-29 응답자 본인여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의 필요성 인지 차이

필요성	본인	가족	합계	F값
범행사실의 구체적 내용	0.94(0.24)	0.95(0.21)	0.94(0.23)	0.91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0.89(0.32)	0.87(0.33)	0.88(0.32)	0.55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0.94(0.24)	0.95(0.21)	0.94(0.23)	1.23
수사진행 정도	0.95(0.21)	0.95(0.21)	0.95(0.21)	0.02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0.94(0.23)	0.95(0.21)	0.95(0.23)	0.60

재판 장소와 시간	0.92(0.26)	0.93(0.26)	0.93(0.26)	0.06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0.92(0.28)	0.92(0.27)	0.92(0.27)	0.12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0.93(0.26)	0.94(0.25)	0.93(0.25)	0.24
재판 판결결과	0.96(0.20)	0.97(0.16)	0.97(0.18)	1.45
국가·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0.96(0.20)	0.97(0.17)	0.96(0.19)	1.14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2.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 수신 경험

앞서 범죄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관련 정보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바, 이제부터는 범죄피해자들이 실제로 그와 관련된 통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4-30>은 범죄피해자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표이다. 표를 보면, 범행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통지 받았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814명 중 460명으로 56.5%를 차지했고, 가해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는 43.3%(345명), 가해자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 여부를 통지 받은 경우는 55.6%(440명),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는 45.5%(375명), 가해자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42.7%(313명), 가해자의 재판 장소와 시간은 49.4%(349명), 재판참여와 방청방법은 40.2%(281명), 상대방의 신변 변동 상태는 34.2%(234명), 재판결과는 52.6%(366명), 피해지원제도를 소개 받았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48.5%(375명)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략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30 사법기관의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단위 : 명(%)

통지여부	알려주지 않음	알려줌	합계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354(43.5)	460(56.5)	814(100)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451(56.7)	345(43.3)	796(100)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351(44.4)	440(55.6)	791(100)
수사진행 정도	449(54.5)	375(45.5)	824(100)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420(57.3)	313(42.7)	733(100)
재판 장소와 시간	358(50.6)	349(49.4)	707(100)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418(59.8)	281(40.2)	699(100)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450(65.8)	234(34.2)	684(100)
재판 판결결과	330(47.4)	366(52.6)	696(100)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398(51.5)	375(48.5)	773(100)

다음 <표 4-31>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범죄피해자들의 수사재판관련 정보 통지 수신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통지 수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수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안의 수치)를 산출한 연후에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의견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표를 보면, 총 10개의 항목 중에서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통지 수신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항목에서 집단 간 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범주에서의 평균값을 볼 경우, 집단 간의 차이는 주로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범주와 나머지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일괄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4-31 조사대상기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차이검증결과

통지여부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 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0.61 (0.49)	0.52 (0.50)	0.54 (0.50)	0.57 (0.50)	0.57 (0.50)	0.94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0.39 (0.49)	0.34 (0.47)	0.51 (0.50)	0.45 (0.50)	0.43 (0.50)	4.07**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0.60 (0.49)	0.34 (0.48)	0.60 (0.49)	0.60 (0.49)	0.56 (0.50)	9.61***
수사진행 정도	0.44 (0.50)	0.36 (0.48)	0.46 (0.50)	0.51 (0.50)	0.46 (0.50)	2.76*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0.43 (0.50)	0.25 (0.43)	0.51 (0.50)	0.44 (0.50)	0.43 (0.49)	7.30***
재판 장소와 시간	0.50 (0.50)	0.34 (0.48)	0.54 (0.50)	0.53 (0.50)	0.49 (0.50)	4.62**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0.41 (0.49)	0.24 (0.43)	0.47 (0.50)	0.42 (0.50)	0.40 (0.49)	5.40***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0.37 (0.48)	0.17 (0.37)	0.38 (0.49)	0.38 (0.49)	0.34 (0.47)	6.58***
재판 판결결과	0.52 (0.50)	0.42 (0.50)	0.56 (0.50)	0.56 (0.50)	0.53 (0.50)	2.68*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0.65 (0.48)	0.24 (0.43)	0.43 (0.50)	0.50 (0.50)	0.49 (0.50)	19.98***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32>는 피해범죄유형별로 범죄피해자들의 수사재판 관련 정보 통지 수신 경험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것이다. 이 경우엔, 10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죄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기타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의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실, 그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은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 모두에서 그 평균점수가 다른 어떤 범죄유형들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표 4-32 피해범죄유형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차이검증결과

통지여부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0.53 (0.50)	0.41 (0.49)	0.67 (0.47)	0.53 (0.50)	0.57 (0.50)	7.98***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0.34 (0.47)	0.57 (0.50)	0.53 (0.50)	0.33 (0.47)	0.43 (0.50)	11.38***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0.54 (0.50)	0.54 (0.50)	0.67 (0.47)	0.35 (0.48)	0.56 (0.50)	13.24***
수사진행 정도	0.39 (0.49)	0.44 (0.50)	0.57 (0.50)	0.35 (0.48)	0.46 (0.50)	9.36***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0.38 (0.49)	0.51 (0.50)	0.52 (0.50)	0.26 (0.44)	0.43 (0.49)	9.88***
재판 장소와 시간	0.47 (0.50)	0.61 (0.49)	0.55 (0.50)	0.33 (0.47)	0.49 (0.50)	6.93***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0.37 (0.48)	0.54 (0.50)	0.45 (0.50)	0.25 (0.43)	0.40 (0.49)	7.43***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0.31 (0.46)	0.44 (0.50)	0.41 (0.49)	0.22 (0.41)	0.34 (0.47)	5.95***
재판 판결결과	0.48 (0.50)	0.67 (0.47)	0.59 (0.49)	0.38 (0.49)	0.53 (0.50)	7.88***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지원제도	0.48 (0.50)	0.58 (0.50)	0.54 (0.50)	0.29 (0.46)	0.49 (0.50)	8.81***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단, 이상과 같은 피해범죄유형별 차이는 각 유형별로 사법기관이—범죄의 심각성이나 경중 등의 기준에 따라—정보를 통지해 주는 정도가 달라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이 경우, 기타 범죄가 비교적 경미범죄이며 그에 따라 그 평균이 낮아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어찌면 그것보다도 각 유형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해자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적어도 부분적으로는—그 영향 때문에 <표 4-32>와 같은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4-33>에서는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피해자의 가족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표 4-33 응답자 본인여부별 수사재판관련 정보의 통지 수신여부 차이검증결과

통지여부	본인	가족	합계	F값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0.55(0.50)	0.59(0.49)	0.57(0.50)	1.81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0.48(0.50)	0.36(0.48)	0.43(0.50)	11.79***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0.54(0.50)	0.58(0.49)	0.56(0.50)	1.15
수사진행 정도	0.45(0.50)	0.47(0.50)	0.46(0.50)	0.31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0.41(0.49)	0.45(0.50)	0.43(0.49)	1.14
재판 장소와 시간	0.51(0.50)	0.47(0.50)	0.49(0.50)	0.90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0.40(0.49)	0.40(0.49)	0.40(0.49)	0.00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0.35(0.48)	0.33(0.47)	0.34(0.47)	0.15
재판 판결결과	0.54(0.50)	0.50(0.50)	0.53(0.50)	1.23
국가·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제도	0.49(0.50)	0.48(0.50)	0.49(0.50)	0.09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를 보면, 총 10개의 항목 중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외의 나머지 9개의 항목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정보 수신 평균값이 가족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1. 최초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

<표 4-34>는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이 최초로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표이다. 표를 보면, 경찰의 인권보호센터가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최초의 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9%(1,158명 중 288명)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15.9%(184명), 가정폭력상담소가 15.7%(182명), 성폭력 상담소가 10.9%(126명), 법률구조공단이 9.8%(114명), 각종 아동관련 상담소가 4.8%(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13.9%(161명)이었다. 참고로, 기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사례는 원스톱센

터(87건)였는데, 이 사례들을 경찰 범주에 합산하면 피해자들이 최초로 접한 피해지원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34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분포

단위 : 명(%)

기관명	빈도(%)
경찰(인권보호센터)	288 (24.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4 (15.9)
가정폭력상담소	182 (15.7)
성폭력상담소	126 (10.9)
법률구조공단	114 (9.8)
아동관련상담소	56 (4.8)
검찰(피해자지원실)	43 (3.7)
법무부(구조지원과)	4 (0.3)
기타	161 (13.9)
합계	1,158(100.0)

단, 이 표에 대한 해석상 유의해야 할 점은 본 조사가 확률표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포가 전체 범죄피해자들의 분포와 정확히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분포,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의 비중은 실제와도 어느 정도 부합될 것이라 판단해 보기는 한다.

<표 4-35>는 피해자들이 최초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접한 기관을 조사대상기관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표 4-35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 교차분석결과

단위 : 명(%)

기관명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60(56.5)	6 (3.3)	7 (1.9)	11 (3.4)	184(15.9)
검찰(피해자지원실)	32(11.3)	3 (1.6)	3 (0.8)	5 (1.5)	43 (3.7)
경찰(인권보호센터)	54(19.1)	71(38.8)	51(14.0)	112(34.3)	288(24.9)
법무부(구조지원과)	2 (0.7)	0 (0.0)	1 (0.3)	1 (0.3)	4 (0.3)

법률구조공단	9 (3.2)	87(47.5)	14 (3.8)	4 (1.2)	114 (9.8)
가정폭력상담소	9 (3.2)	3 (1.6)	129(35.3)	41(12.5)	182(15.7)
성폭력상담소	12 (4.2)	2 (1.1)	79(21.6)	33(10.1)	126(10.9)
아동관련상담소	1 (0.4)	0 (0.0)	49(13.4)	6 (1.8)	56 (4.8)
기타	4 (1.4)	11 (6.0)	32 (8.8)	114(34.9)	161(13.9)
합계	283(100)	183(100)	365(100)	327(100)	1,158(100)
카이자승값	1254.2(df=24) ***				

이 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기관과 최초로 서비스를 접한 기관이 일치하는 정도가 꽤 높다는 점 일 것이다. 현재 의탁 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경우, 최초 서비스 기관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경우(56.5%, 283명 중 160명)가 가장 많았다. 현재 의탁 기관이 경찰, 검찰,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인 경우엔, 최초로 피해지원을 받게 된 기관이 경찰(38.8%)과 법률구조공단(47.5%)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현재 의탁 기관이 상담소인 경우엔, 최초 지원 기관이 가정폭력상담소(35.3%)와 성폭력상담소(21.6%)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중첩성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서비스를 받은 기관으로서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범주에서 모두 적지 않게 골고루 나타났다.

<표 4-36>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을 피해범죄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표 4-36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 교차분석

단위 : 명(%)

기관명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9(24.5)	11 (6.2)	42(11.3)	32(15.7)	184(15.9)
검찰(피해자지원실)	31 (7.7)	2 (1.1)	5 (1.3)	5 (2.5)	43 (3.7)
경찰(인권보호센터)	130(32.2)	22(12.4)	58(15.6)	78(38.2)	288(24.9)
법무부(구조지원과)	3 (0.7)	1 (0.6)	0 (0.0)	0 (0.0)	4 (0.3)
법률구조공단	43(10.6)	8 (4.5)	4 (1.1)	59(28.9)	114 (9.8)
가정폭력상담소	65(16.1)	102(57.3)	11 (3.0)	4 (2.0)	182(15.7)
성폭력상담소	11 (2.7)	4 (2.2)	110(29.6)	1 (0.5)	126(10.9)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아동관련상담소	3 (0.7)	2 (1.1)	48(12.9)	3 (1.5)	56 (4.8)
기타	19 (4.7)	26(14.6)	94(25.3)	22(10.8)	161(13.9)
합계	404(100)	178(100)	372(100)	204(100)	1,158(100)
카이자승값	792.7(df=24) ***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처음 서비스를 받은 기관이 경찰(32.2%)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24.5%), 가정폭력상담소(16.1%)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엔, 최초 서비스 기관이 가정폭력상담소(57.3%)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기타(14.6%) 및 경찰(12.4%)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엔, 최초 서비스를 받은 기관이 성폭력상담소(29.6%)였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25.3%), 경찰(15.6%), 아동관련상담소(12.9%), 범죄피해자지원센터(11.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은 피해자들이 최초로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을 범죄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 표이다.

표 4-37 응답자 본인여부와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 교차분석

단위 : 명(%)

기관명	본인	가족	합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13.7)	84(19.7)	184(15.9)
검찰(피해자지원실)	21 (2.9)	22 (5.2)	43 (3.7)
경찰(인권보호센터)	169(23.1)	119(27.9)	288(24.9)
법무부(구조지원과)	2 (0.3)	2 (0.5)	4 (0.3)
법률구조공단	69 (9.4)	45(10.5)	114 (9.8)
가정폭력상담소	162(22.2)	20 (4.7)	182(15.7)
성폭력상담소	84(11.5)	42 (9.8)	126(10.9)
아동관련상담소	11 (1.5)	45(10.5)	56 (4.8)
기타	113(15.5)	48(11.2)	161(13.9)
합계	731(100)	427(100)	1158(100)
카이자승값	114.9(df=8) ***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엔, 최초 서비스 지원 기관이 경찰(23.1%)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2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13.7%), 성폭력상담소(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가 가족인 경우엔, 최초 서비스 지원 기관이 경찰(27.9%)인 경우가 역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9.7%), 법률구조공단(10.5%) 및 아동관련 상담소(10.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가족인 경우 중에는 피해 당사자가 살인범죄로 인해 사망했거나 혹은 어린 자녀(아동성폭력의 경우)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동관련 상담소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와 같은 다소간의 집단 간 차이로 인해 카이제곱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범죄피해지원 기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표 4-38>은 응답자들이 여러 종류의 범죄피해지원 기관을 이용했던 경험에 관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엔 전체 응답자의 40.4%(462명)가, 검찰 피해자지원실의 경우엔 23.5%(269명)가, 경찰 인권보호센터의 경우엔 45.7%(520명)가, 법무부 구조지원과의 경우엔 10.7%(124명)가, 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엔 40.6%(466명)가,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엔 35.2%(400명)가,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엔 29.9%(309명)가, 아동관련 상담소의 경우엔 21.0%(217명)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8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여부

단위 : 명(%)

이용경험	없음	있음	합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81(59.6)	462(40.4)	1,143(100)
검찰(피해자지원실)	875(76.5)	269(23.5)	1,144(100)
경찰(인권보호센터)	618(54.3)	520(45.7)	1,138(100)
법무부(구조지원과)	1034(89.3)	124(10.7)	1,158(100)
법률구조공단	683(59.4)	466(40.6)	1,149(100)
가정폭력상담소	737(64.8)	400(35.2)	1,137(100)
성폭력상담소	726(70.1)	309(29.9)	1,035(100)
아동관련상담소	818(79.0)	217(21.0)	1,035(100)

<표 4-39>에서는 위 <표 4-38>에서 각각의 피해지원기관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에 한해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다.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경험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60.2%에 달하고, 어떤 식으로든 만족한다는 의견 역시 도합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7.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엔 그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1.0%(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54.5%)에 달했고,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엔 90.6%(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53.7%)에 달했다.

표 4-39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기관명	만족하지 못한다	약간 만족한다	많이 만족한다	합계	평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7.8)	148(32.0)	278(60.2)	462(100)	2.52(0.64)
검찰(피해자지원실)	61(22.7)	134(49.8)	74(27.5)	269(100)	2.05(0.71)
경찰(인권보호센터)	194(37.3)	258(49.6)	68(13.1)	520(100)	1.76(0.67)

법무부(구조지원과)	33(26.6)	57(46.0)	34(27.4)	124(100)	2.01(0.74)
법률구조공단	74(15.9)	216(46.4)	176(37.8)	466(100)	2.22(0.70)
가정폭력상담소	36(9.0)	146(36.5)	218(54.5)	400(100)	2.46(0.66)
성폭력상담소	32(10.4)	111(35.9)	166(53.7)	309(100)	2.43(0.67)
아동관련상담소	33(15.2)	67(30.9)	117(53.9)	217(100)	2.39(0.74)

한편, 아동관련 상담소의 경우엔 그 서비스 이용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53.9%(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84.8%)로 다른 기관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경우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15.2%로 그 비율이 아주 낮지만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엔,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37.4%)이 앞의 네 기관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84.2%에 달해 대체로 양호한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상대적인 수준에서 이용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난 경우는 경찰, 법무부, 검찰의 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센터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13.1%로 위 표에 제시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37.3%로 위 표에 제시된 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도 경찰의 경우에조차 어쨌든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2.7%로 불만족 의견보다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다.

<표 4-40>에서는 위 <표 4-39>의 만족도 측정치를 토대로 조사대상 기관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점, 약간 만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점을 부여한 다음 그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안의 수치)를 토대로 각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동일기관인 경우에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내 보였다. 조사대상기관이 경찰, 검찰 등의 국가기관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각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검찰에 대한 만족도 역시 현재 피해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 경우에도 조사대상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만족도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상담소 등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검찰 피해지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주로 검찰 피해자 지원실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해석은 경찰 인권보호센터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현재 각종 상담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엔, 각 상담소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에도 오로지 국가기관에만 주로 의탁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40 조사대상기관별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기관명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9 (0.57)	1.87 (0.69)	2.41 (0.60)	2.24 (0.65)	2.52 (0.64)	23.70 ***
검찰(피해자지원실)	2.19 (0.72)	1.68 (0.72)	1.98 (0.67)	2.02 (0.67)	2.05 (0.71)	3.90 **
경찰(인권보호센터)	1.80 (0.66)	1.62 (0.63)	1.86 (0.69)	1.72 (0.67)	1.76 (0.67)	2.73 *
법무부(구조지원과)	1.90 (0.70)	2.10 (0.74)	2.16 (0.78)	1.90 (0.71)	2.01 (0.74)	1.18
법률구조공단	2.09 (0.71)	2.39 (0.69)	2.18 (0.71)	2.11 (0.61)	2.22 (0.70)	5.30 ***
가정폭력상담소	2.28 (0.70)	2.00 (0.71)	2.51 (0.65)	2.48 (0.62)	2.46 (0.66)	3.51 *
성폭력상담소	2.25 (0.73)	2.00 (0.63)	2.47 (0.66)	2.53 (0.63)	2.43 (0.67)	3.28 *
아동관련상담소	2.00 (0.85)	1.00 (.)	2.45 (0.72)	2.52 (0.58)	2.39 (0.74)	5.45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다음 <표 4-41>은 피해범죄유형별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본 것과는 달리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가 경찰, 성폭력 상담소, 아동관련 상담소 세 항목에 국한되었다.

먼저 경찰 피해자지원실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자면, 가정폭력 피해자(1.84)와 성폭력범죄 피해자(1.98)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1.68)들이나 기타범죄 피해자(1.59)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4-41 피해범죄유형별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기관명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2 (0.66)	2.68 (0.47)	2.51 (0.59)	2.44 (0.74)	2.52 (0.64)	1.37
검찰(피해자지원실)	2.00 (0.72)	2.07 (0.73)	2.10 (0.65)	2.07 (0.81)	2.05 (0.71)	0.32
경찰(인권보호센터)	1.68 (0.63)	1.84 (0.71)	1.98 (0.66)	1.59 (0.65)	1.76 (0.67)	8.91 ***
법무부(구조지원과)	1.82 (0.72)	2.20 (0.71)	2.11 (0.73)	2.09 (0.83)	2.01 (0.74)	1.96
법률구조공단	2.14 (0.69)	2.20 (0.73)	2.19 (0.63)	2.36 (0.72)	2.22 (0.70)	2.41
가정폭력상담소	2.38 (0.75)	2.56 (0.57)	2.39 (0.64)	2.44 (0.63)	2.46 (0.66)	2.42
성폭력상담소	1.97 (0.75)	2.26 (0.71)	2.59 (0.58)	2.50 (0.52)	2.43 (0.67)	15.75 ***
아동관련상담소	2.00 (0.79)	2.47 (0.67)	2.46 (0.71)	2.25 (0.87)	2.39 (0.74)	3.64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자면, 이번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2.59)과 기타범죄 피해자(2.50)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1.97)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2.26)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끝으로, 아동관련 상담소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자면, 이번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2.47)과 성폭력범죄 피해자(2.46)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

면, 강력범죄 피해자(2.00)들이나 기타범죄 피해자(2.25)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이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42>에서는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그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각 피해지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 경우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관련 상담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만 확인되었다.

표 4-42 응답자 본인여부별 피해지원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검증결과

기관명	본인	가족	합계	F값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1(0.63)	2.54(0.65)	2.52(0.64)	0.14
검찰(피해자지원실)	1.99(0.68)	2.14(0.75)	2.05(0.71)	3.01
경찰(인권보호센터)	1.74(0.67)	1.78(0.67)	1.76(0.67)	0.45
법무부(구조지원과)	1.95(0.70)	2.11(0.80)	2.01(0.74)	1.36
법률구조공단	2.20(0.71)	2.25(0.69)	2.22(0.70)	0.38
가정폭력상담소	2.52(0.64)	2.28(0.66)	2.46(0.66)	10.87 ***
성폭력상담소	2.39(0.68)	2.51(0.65)	2.43(0.67)	2.55
아동관련상담소	2.17(0.73)	2.52(0.71)	2.39(0.74)	12.41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 본인의 이용 만족도가 가족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아동관련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 본인의 이용 만족도보다는 가족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2) 범죄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표 4-43>은 범죄피해자들의 각종 범죄피해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던 서비스의 내용은 심리적 상담과 대화로 1,158명의 응답자 중 691명(59.7%)이 그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적 상담(재판·보험·배상 등) 지원이 41.2%(477명),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30.8%(357명), 신분보호가 24.4%(283명), 의료비 감면이 24.3%(281명),

긴급지원 비용 지급이 23.4%(271명),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이 22.2%(257명),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이 19.8%(229명), 의료비 감면외 별도의 치료비 제공이 19.6%(227명), 각종 물품 보조가 17.9%(207명), 임시거처 혹은 주거공간 제공이 17.1%(198명), 피해자구조금 지급이 13.1%(152명), 간호와 구호 등이 12.9%(149명), 사건현장 정리가 12.2%(141명), 유족 장학금 지급이 4.1%(48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단위 : 명(%)

피해지원 서비스의 내용	없음	있음	합계
피해자구조금	1006(86.9)	152(13.1)	1,158(100)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	901(77.8)	257(22.2)	1,158(100)
유족 장학금	1110(95.9)	48(4.1)	1,158(100)
긴급지원 비용 (의료비 · 생계비 외)	887(76.6)	271(23.4)	1,158(100)
각종 물품 보조	951(82.1)	207(17.9)	1,158(100)
의료비 감면	877(75.7)	281(24.3)	1,158(100)
별도의 치료비 (의료비 감면 외)	931(80.4)	227(19.6)	1,158(100)
간호와 구호, 간병, 병원 후송	1009(87.1)	149(12.9)	1,158(100)
심리적 상담과 대화	467(40.3)	691(59.7)	1,158(100)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	1017(87.8)	141(12.2)	1,158(100)
신변 보호	875(75.6)	283(24.4)	1,158(100)
법률적상담(재판 · 보험 · 배상 등)지원	681(58.8)	477(41.2)	1,158(100)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801(69.2)	357(30.8)	1,158(100)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929(80.2)	229(19.8)	1,158(100)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960(82.9)	198(17.1)	1,158(100)

다음 <표 4-44>는 위에서 살펴본 각종 피해지원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수준에서 볼 경우, 피해자들이 지원 받은 각종 서비스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각 서비스의 종류별로 상대적인 만족도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4-44 각종 피해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포

단위 : 명(%)

피해지원 서비스의 내용	도움이 안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합계	평균
피해자구조금	19(12.5)	54(35.5)	79(52.0)	152(100)	2.39(0.70)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	19(7.4)	84(32.7)	154(59.9)	257(100)	2.53(0.63)
유족 장학금	8(16.7)	10(20.8)	30(62.5)	48(100)	2.46(0.77)
긴급지원 비용 (의료비·생계비 외)	15(5.5)	76(28.0)	180(66.4)	271(100)	2.61(0.59)
각종 물품 보조	13(6.3)	80(38.6)	114(55.1)	207(100)	2.49(0.61)
의료비 감면	18(6.4)	77(27.4)	186(66.2)	281(100)	2.60(0.61)
별도의 치료비 (의료비 감면 외)	19(8.4)	68(30.0)	140(61.7)	227(100)	2.53(0.65)
간호와 구호, 간병, 병원 후송	21(14.1)	60(40.3)	68(45.6)	149(100)	2.32(0.71)
심리적 상담과 대화	50(7.2)	203(29.4)	438(63.4)	691(100)	2.56(0.63)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	48(34.0)	50(35.5)	43(30.5)	141(100)	1.96(0.81)
신변 보호	37(13.1)	105(37.1)	141(49.8)	283(100)	2.37(0.70)
법률적상담(재판·보험·배상 등)지원	42(8.8)	176(36.9)	259(54.3)	477(100)	2.45(0.65)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23(6.4)	124(34.7)	210(58.8)	357(100)	2.52(0.62)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24(10.5)	58(25.3)	147(64.2)	229(100)	2.54(0.68)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15(7.6)	42(21.2)	141(71.2)	198(100)	2.64(0.62)

먼저 불만족도가 낮고 만족도가 높은 피해지원 서비스 다섯 가지를 추려볼 경우, 그 중 긴급지원 비용(의료비나 생계비는 제외)이 단연 1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5.5%(만족 경험은 94.5%)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66.4%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물품 보조(93.7% 만족), 의료비 감면(93.6% 만족),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93.6% 만족), 심리적 상담과 대화(92.8% 만족)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피해지원 서비스는 없었지만, 다른 종류의 피해지원 서비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피해지원 서비스 1위는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였다.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34.0%였고, 이 서비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30.5%로 측정된 15개 서비스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족장학금(16.7%가 불만족), 간호와 구호·간병·병원 후송 등(14.1% 불만족), 신변보호(13.1%가 불만족), 피해자구조금(12.5%가 불만족) 등의 순이었다.

<표 4-45>에서는 각종 피해지원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경험 여부가 조사대상기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경험 차이의 비교를 위해, 위 <표 4-43>과 관련된 응답범주에서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이 없다는 응답에 0점,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 1점을 부여한 다음, 그 평균점수를 가지고 각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15개 항목 중 사건현장 정리를 제외한 14개 항목에서 조사대상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해자구조금(0.27), 생계비 보조·지원(0.51), 유족장학금(0.07), 긴급지원 비용 지급(0.38), 각종 물품보조(0.26)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지원 경험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의료비 감면(0.30), 간호와 구호(0.17), 심리적 상담과 대화(0.75), 신변보호(0.30),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0.40),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0.29), 별도의 임시거처 혹은 주거공간 제공(0.28)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상담소의 피해지원 경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에 비해 국가기관의 경우엔 전반적으로 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주로 이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적 상담 지원에 있어서는 이 범주에서 가장 높은 점수(0.56)가 나오기는 하였다.

표 4-45 조사대상기관별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차이검증

피해지원 서비스의 내용	피해자 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F값
피해자구조금	0.27(0.44)	0.04(0.19)	0.10(0.30)	0.10(0.30)	22.42 ***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	0.51(0.50)	0.03(0.18)	0.16(0.37)	0.15(0.35)	78.01 ***
유족 장학금	0.07(0.26)	0.02(0.13)	0.04(0.19)	0.03(0.18)	3.20 *
긴급지원 비용 (의료비·생계비 외)	0.38(0.49)	0.04(0.21)	0.21(0.41)	0.24(0.43)	25.10 ***
각종 물품 보조	0.26(0.44)	0.02(0.15)	0.19(0.39)	0.19(0.39)	15.25 ***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의료비 감면	0.23(0.42)	0.03(0.18)	0.30(0.46)	0.31(0.46)	20.03 ***
별도의 치료비 (의료비 감면 외)	0.22(0.42)	0.01(0.10)	0.24(0.42)	0.23(0.42)	16.43 ***
간호와 구호, 간병, 병원 후송	0.11(0.31)	0.03(0.16)	0.17(0.37)	0.16(0.37)	8.88 ***
심리적 상담과 대화	0.57(0.50)	0.24(0.43)	0.75(0.43)	0.64(0.48)	51.74 ***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	0.11(0.31)	0.09(0.29)	0.11(0.31)	0.16(0.37)	2.44
신변 보호	0.19(0.39)	0.13(0.34)	0.30(0.46)	0.29(0.45)	9.34 ***
법률적상담(재판·보험·배상 등)지원	0.35(0.48)	0.56(0.50)	0.47(0.50)	0.31(0.47)	13.40 ***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0.35(0.48)	0.09(0.29)	0.40(0.49)	0.30(0.46)	19.36 ***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0.10(0.30)	0.03(0.18)	0.29(0.45)	0.28(0.45)	28.46 ***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0.09(0.29)	0.01(0.10)	0.28(0.45)	0.21(0.41)	27.80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6>은 피해범죄유형별로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6 피해범죄유형별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차이검증

피해지원 서비스의 내용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F값
피해자구조금	0.20(0.40)	0.08(0.27)	0.13(0.34)	0.05(0.22)	11.01 ***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	0.26(0.44)	0.21(0.41)	0.24(0.43)	0.12(0.33)	5.40 ***
유족 장학금	0.06(0.24)	0.03(0.18)	0.04(0.20)	0.01(0.12)	2.42
긴급지원 비용 (의료비·생계비 외)	0.23(0.42)	0.28(0.45)	0.30(0.46)	0.08(0.27)	13.17 ***
각종 물품 보조	0.17(0.38)	0.31(0.47)	0.18(0.38)	0.07(0.25)	13.52 ***
의료비 감면	0.22(0.41)	0.37(0.48)	0.32(0.47)	0.04(0.21)	26.02 ***
별도의 치료비 (의료비 감면 외)	0.17(0.37)	0.24(0.43)	0.29(0.45)	0.05(0.22)	18.25 ***
간호와 구호, 간병, 병원 후송	0.13(0.34)	0.15(0.35)	0.18(0.38)	0.02(0.16)	9.57 ***
심리적 상담과 대화	0.52(0.50)	0.81(0.39)	0.77(0.42)	0.24(0.43)	79.15 ***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	0.15(0.36)	0.13(0.34)	0.10(0.30)	0.09(0.29)	2.61 *
신변 보호	0.24(0.43)	0.46(0.50)	0.23(0.42)	0.09(0.28)	25.66 ***
법률적상담(재판·보험·배상 등)지원	0.38(0.49)	0.48(0.50)	0.38(0.49)	0.47(0.50)	3.07 *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0.27(0.45)	0.46(0.50)	0.38(0.49)	0.13(0.33)	20.95 ***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0.18(0.38)	0.45(0.50)	0.19(0.39)	0.03(0.18)	39.07 ***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0.14(0.35)	0.42(0.49)	0.16(0.37)	0.03(0.18)	38.32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이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총 15개 항목 중 유족 장학금을 제외한 1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구조금(0.20), 생계비 보조·지원(0.26), 유족 장학금(0.06), 사건현장 정리(0.15)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지원 경험율이 가장 높았다. 각종 물품 보조(0.31), 의료비 감면(0.37), 심리적 상담과 대화(0.81), 신변보호(0.46), 법률적 상담지원(0.48),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0.46), 단기 숙박 및 식사제공(0.45), 별도의 임시거처 제공(0.42)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지원 경험율이 가장 높았다. 긴급지원 비용(0.30), 별도의 의료비(0.29), 간호와 구호(0.18) 등의 항목의 경우엔,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지원 경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기타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엔 전반적으로 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주로 이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적 상담 지원에 있어서는 이 범주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0.47)가 나오기도 하였다.

<표 4-47>은 응답자가 범죄피해자 본인인지 그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15개 피해지원 서비스 항목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피해자 구조금, 각종 물품 보조, 심리적 상담과 대화, 신변보호,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등 모두 여섯 가지 항목이었다.

그 중에서 피해자구조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 본인의 평균점수가 피해자 가족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구조금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금을 그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4-47 응답자 본인여부별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경험여부 차이검증

피해지원 서비스의 내용	본인	가족	합계	F값
피해자구조금	0.11 (0.32)	0.16 (0.37)	0.13 (0.34)	6.36 *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	0.22 (0.41)	0.22 (0.42)	0.22 (0.42)	0.03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유족 장학금	0.03 (0.18)	0.06 (0.23)	0.04 (0.20)	3.71
긴급지원 비용 (의료비·생계비 외)	0.23 (0.42)	0.24 (0.43)	0.23 (0.42)	0.09
각종 물품 보조	0.20 (0.40)	0.15 (0.36)	0.18 (0.38)	4.50 *
의료비 감면	0.25 (0.43)	0.23 (0.42)	0.24 (0.43)	0.88
별도의 치료비 (의료비 감면 외)	0.19 (0.39)	0.20 (0.40)	0.20 (0.40)	0.12
간호와 구호, 간병, 병원 후송	0.14 (0.35)	0.11 (0.31)	0.13 (0.33)	2.09
심리적 상담과 대화	0.62 (0.49)	0.56 (0.50)	0.60 (0.49)	4.36 *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	0.13 (0.33)	0.11 (0.31)	0.12 (0.33)	0.86
신변 보호	0.28 (0.45)	0.18 (0.38)	0.24 (0.43)	15.20 ***
법률적상담(재판·보험·배상 등)지원	0.42 (0.49)	0.40 (0.49)	0.41 (0.49)	0.37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0.29 (0.46)	0.33 (0.47)	0.31 (0.46)	1.87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0.26 (0.44)	0.10 (0.29)	0.20 (0.40)	45.80 ***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0.22 (0.42)	0.08 (0.28)	0.17 (0.38)	36.93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표 4-48>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를 보면, 경찰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6.0%(597명 중 15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단체나 상담소에서 연결해 준 경우가 18.6%(111명), 주변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18.1%(108명), 검찰에서 알려준 경우가 13.2%(79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10.6%였다. 이런 경우들은 어찌되었든 범죄피해자가 범

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센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와 주는 경우는 전체 경로 중 6%에 불과하였다. 이는 범죄자피해자지원체계가 연합적이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당장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공산이 커서 스스로 제 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가지 못할 개연성 역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표 4-48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인식 경로	빈도(%)
경찰에서 알려주었음	155(26.0)
다른 단체나 상담소에서 연결해 주었음	111(18.6)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108(18.1)
검찰에서 알려주었음	79(13.2)
홍보물을 보고	63(10.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나를 찾아와서 알게 되었음	36 (6.0)
기타	45 (7.5)
합계	597(100.0)

<표 4-49>에서는 조사대상기관별로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경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담소를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엔 경찰보다는 상담기관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48명, 25.4%),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48명, 25.4%) 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엔, 경찰(50명, 23.3%)이나 검찰(60명, 27.9%)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카이자승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4-49 조사대상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의 교차분석결과

단위 : 명(%)

인지 경로	피해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홍보물을 보고	19 (8.8)	4 (10.3)	22 (11.6)	18 (11.7)	63 (10.6)
경찰에서 알려주었음	50 (23.3)	14 (35.9)	32 (16.9)	59 (38.3)	155 (26.0)
검찰에서 알려주었음	60 (27.9)	2 (5.1)	12 (6.3)	5 (3.2)	79 (13.2)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27 (12.6)	8 (20.5)	48 (25.4)	25 (16.2)	108 (18.1)
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와 알게 됨	30 (14.0)	0 (0.0)	2 (1.1)	4 (2.6)	36 (6.0)
다른 단체나 상담소에서 연결해 주었음	25 (11.6)	6 (15.4)	48 (25.4)	32 (20.8)	111 (18.6)
기타	4 (1.9)	5 (12.8)	25 (13.2)	11 (7.1)	45 (7.5)
합계	215 (100)	39 (100)	189 (100)	154 (100)	597 (100)
카이자승값	148.2(df=18) ***				

<표 4-50>은 피해범죄유형별로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인지하게 된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있어서,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경찰에서 알려준 경우’이며(54명, 24.9%),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담소를 통해서’(29명, 28.2%), 그리고 성폭력(68명, 31.1%)과 기타 범죄(17명, 29.3%) 피해자들은 ‘경찰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경찰을 통한 인지 경로뿐만 아니라 상담소 등을 통한 인지 경로도 적지 않았다. 아무튼 이와 같은 피해범죄유형별 인지 경로의 차이로 인해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표 4-50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된 경로의 교차분석결과

단위 : 명(%)

인지 경로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홍보물을 보고	20 (9.2)	15 (14.6)	20 (9.1)	8 (13.8)	63 (10.6)
경찰에서 알려주었음	54 (24.9)	16 (15.5)	68 (31.1)	17 (29.3)	155 (26.0)
검찰에서 알려주었음	49 (22.6)	3 (2.9)	17 (7.8)	10 (17.2)	79 (13.2)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40 (18.4)	27 (26.2)	31 (14.2)	10 (17.2)	108 (18.1)
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와 알게 됨	18 (8.3)	3 (2.9)	11 (5.0)	4 (6.9)	36 (6.0)
다른 단체나 상담소에서 연결해 주었음	28 (12.9)	29 (28.2)	50 (22.8)	4 (6.9)	111 (18.6)
기타	8 (3.7)	10 (9.7)	22 (10.0)	5 (8.6)	45 (7.5)
합계	217 (100)	103 (100)	219 (100)	58 (100)	597 (100)
카이자승값	69.7(df=18) ***				

<표 4-51>은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인지 경로가 달라지는 여부를 살펴보는 표이다.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94명, 24.5%)와 가족인 경우(61명, 28.6%) 모두 경찰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가 가장 많으며, 이는 본인이든 가족이든 경로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인지 경로에 있어 다소의 비중 차이로 인해 통계적 결과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가령, 본인의 경우엔, 경찰 다음으로 다른 단체에서 연결해 준 경우가 많았고(83명, 21.6%), 가족의 경우엔 경찰 다음으로 검찰에서 알려준 경우(39명, 18.3%)가 많았다.

표 4-51 응답자 본인여부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된 경로의 교차분석

단위 : 명(%)

인지 경로	본인	가족	합계
홍보물을 보고	42(10.9)	21 (9.9)	63(10.6)
경찰에서 알려주었음	94(24.5)	61(28.6)	155(26.0)
검찰에서 알려주었음	40(10.4)	39(18.3)	79(13.2)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74(19.3)	34(16.0)	108(18.1)
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와 알게 됨	19 (4.9)	17 (8.0)	36 (6.0)
다른 단체에서 연결해 주었음	83(21.6)	28(13.1)	111(18.6)
기타	32 (8.3)	13 (6.1)	45 (7.5)
합계	384(100)	213(100)	597(100)
카이자승값	16.6(df=6) *		

<표 4-52>는 응답자들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분포 표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담(감정적 심리적 지원, 법률정보제공)’이 전체 응답자 중 86.9%(557명 중 484명)이었으며, 의료지원(의료비지급, 의료기관 연계)이 전체 응답자 중 5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이 높은 것은 경제적 지원(생계비지원, 법률소소비용)이 전체 응답자 중 53.1%이었다.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정신적·심리적 안정과 회복이며, 2차적으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이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여러 지원서비스 중 범죄피해자들이 이용한 서비스의 경험 유무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잘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빈도일 뿐, 어느 정도의 만족성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조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말해 줄 것이다.

표 4-5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이용경험	없음	있음	합계
상담 (감정적 심리지원, 법률정보제공)	73(13.1)	484(86.9)	557(100)
의료지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연계)	235(45.0)	287(55.0)	522(100)
경제적 지원 (생계지원, 법률 소송 비용)	252(46.9)	285(53.1)	537(100)
화해중재	391(77.1)	116(22.9)	507(100)
사법보좌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386(76.6)	118(23.4)	504(100)
임시숙소 제공	400(77.7)	115(22.3)	515(100)
사건현장 정리	438(86.7)	67(13.3)	505(100)
자조조직(self-help) 지원	420(84.2)	79(15.8)	499(100)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316(61.6)	197(38.4)	513(100)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	400(78.7)	108(21.3)	508(100)

<표 4-53>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에 대해 범죄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것은 의료지원(66.9%)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도움이 덜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 항목은 사건현장정리(28.4%)였다.

의료지원 다음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대체로 상담(65.1%), 경제적 지원(63.2%), 임시숙소 제공(59.1%), 사법보좌(52.5%),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52.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사건현장정리 다음으로 별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화해중재 및 자조조직 지원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현장정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대체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점이 경찰 조치 이후인 것과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혹은 이 항목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된 업무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신속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소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화해중재의 경우엔,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가해자에 대한 감정

과 관련되어 당장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이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는냐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자조조직 지원의 경우엔, 아직까지 피해자 지원이 관 주도, 특히 검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 중의 하나라고 보며, 그에 따른 한계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지원의 민간적 성격이 향후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표 4-5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분포

단위 : 명(%)

이용경험	도움이 안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상담 (감정적 심리적지원, 법률정보제공)	11 (2.3)	158 (32.6)	315 (65.1)	484 (100)	2.63 (0.53)
의료지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연계)	10 (3.5)	85 (29.6)	192 (66.9)	287 (100)	2.63 (0.55)
경제적 지원 (생계지원, 법률 소송 비용)	16 (5.6)	89 (31.2)	180 (63.2)	285 (100)	2.58 (0.60)
화해중재	27 (23.3)	53 (45.7)	36 (31.0)	116 (100)	2.08 (0.74)
사법보좌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14 (11.9)	42 (35.6)	62 (52.5)	118 (100)	2.41 (0.69)
임시숙소 제공	11 (9.6)	36 (31.3)	68 (59.1)	115 (100)	2.50 (0.67)
사건현장 정리	19 (28.4)	29 (43.3)	19 (28.4)	67 (100)	2.00 (0.76)
자조조직(self-help) 지원	8 (10.1)	47 (59.5)	24 (30.4)	79 (100)	2.20 (0.61)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12 (6.1)	82 (41.6)	103 (52.3)	197 (100)	2.46 (0.61)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	12 (11.1)	44 (40.7)	52 (48.1)	108 (100)	2.37 (0.68)

<표 4-54>는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자조조직 지원과 화해 중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주로 의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표 4-54 조사대상기관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검증

경험여부	피해자지원센터	국가기관	상담소	기타	합계	F값
상담 (감정적 심리적지원, 법률정보제공)	0.92(0.27)	0.73(0.45)	0.83(0.38)	0.87(0.33)	0.87(0.34)	4.41**
의료지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연계)	0.63(0.48)	0.16(0.37)	0.52(0.50)	0.56(0.50)	0.55(0.50)	8.3 ***
경제적 지원 (생계지원, 법률 소송 비용)	0.79(0.41)	0.19(0.40)	0.40(0.49)	0.39(0.49)	0.53(0.50)	36.62***
화해 중재	0.20(0.40)	0.10(0.30)	0.28(0.45)	0.24(0.43)	0.23(0.42)	2.02
사법보좌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0.22(0.42)	0.00(0.00)	0.25(0.44)	0.28(0.45)	0.23(0.42)	3.91**
임시숙소 제공	0.10(0.31)	0.00(0.00)	0.31(0.47)	0.32(0.47)	0.22(0.42)	13.89***
사건현장 정리	0.10(0.30)	0.00(0.00)	0.15(0.35)	0.19(0.39)	0.13(0.34)	3.74 *
자조조직(self-help) 지원	0.16(0.37)	0.03(0.18)	0.16(0.37)	0.18(0.38)	0.16(0.37)	1.35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0.51(0.50)	0.19(0.40)	0.33(0.47)	0.32(0.47)	0.38(0.49)	7.71***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	0.33(0.47)	0.03(0.18)	0.14(0.35)	0.18(0.39)	0.21(0.41)	9.23***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55>는 피해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 경우엔, 사건현장 정리와 자조조직 지원 이외의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엔, 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활동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화해중재와 임시숙소 제공 등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엔 사법보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피해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검증

경험여부	강력 범죄	가정 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F값
상담 (감정적 심리적지원, 법률정보제공)	0.90 (0.30)	0.81 (0.40)	0.89 (0.32)	0.78 (0.42)	0.87 (0.34)	3.34 *
의료지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연계)	0.60 (0.49)	0.61 (0.49)	0.52 (0.50)	0.31 (0.47)	0.55 (0.50)	4.89 **
경제적 지원 (생계지원, 법률 소송 비용)	0.64 (0.48)	0.52 (0.50)	0.44 (0.50)	0.47 (0.50)	0.53 (0.50)	5.67 ***
화해중재	0.27 (0.44)	0.30 (0.46)	0.16 (0.37)	0.19 (0.39)	0.23 (0.42)	3.12 *
사법보좌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0.23 (0.42)	0.24 (0.43)	0.28 (0.45)	0.05 (0.22)	0.23 (0.42)	3.16 *
임시숙소 제공	0.17 (0.38)	0.45 (0.50)	0.21 (0.41)	0.03 (0.16)	0.22 (0.42)	14.07 ***
사건현장 정리	0.13 (0.34)	0.17 (0.38)	0.13 (0.34)	0.05 (0.22)	0.13 (0.34)	1.30
자조조직(self-help) 지원	0.19 (0.39)	0.15 (0.36)	0.16 (0.37)	0.05 (0.22)	0.16 (0.37)	1.62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0.47 (0.50)	0.35 (0.48)	0.34 (0.48)	0.20 (0.41)	0.38 (0.49)	4.89 **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	0.30 (0.46)	0.16 (0.37)	0.17 (0.37)	0.10 (0.30)	0.21 (0.41)	5.71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4-55>는 응답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피해자의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화해중재와 사법보좌 그리고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활동,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의 네 가지 항목이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항목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의 두 가지 항목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응답자 본인여부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검증

경험여부	본인	가족	합계	F값
상담 (감정적 심리적지원, 법률정보제공)	0.85(0.36)	0.90(0.30)	0.87(0.34)	2.65
의료지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연계)	0.54(0.50)	0.56(0.50)	0.55(0.50)	0.09
경제적 지원 (생계지원, 법률 소송 비용)	0.51(0.50)	0.56(0.50)	0.53(0.50)	1.03
화해중재	0.26(0.44)	0.17(0.37)	0.23(0.42)	5.84 *
사법보좌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0.23(0.42)	0.25(0.43)	0.23(0.42)	0.25
임시숙소 제공	0.29(0.45)	0.11(0.31)	0.22(0.42)	22.58 ***
사건현장 정리	0.15(0.36)	0.10(0.31)	0.13(0.34)	1.97
자조조직(self-help) 지원	0.16(0.37)	0.15(0.35)	0.16(0.37)	0.29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0.34(0.48)	0.46(0.50)	0.38(0.49)	6.84 **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	0.18(0.39)	0.27(0.44)	0.21(0.41)	4.57 *

※ 표의 숫자는 평균값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제6절 피해지원욕구의 특징 요약 및 논의

이상 논의된 바를 선행연구결과들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사항들만을 간추려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 반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기할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주로 찾거나 의탁하는 기관들의 종류는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제5절의 <표 4-37> 참조). 즉, 상대적으로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엔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서 찾아가게 된 경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이는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직후 스스로 범죄피해 지원 기관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 강력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도, 강력범죄 피해 직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강력범죄 피해당사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

로 제 발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찾아가겠는가?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범죄피해 당사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족이 수소문해서 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범죄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일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탁하게 될 경우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러한 응답결과들은 선행연구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일단 어떤 종류의 피해자지원기관이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관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혹은 범죄피해지원에 대해 특별히 더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보다는 현행 수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요구가 좀 더 덧붙여질 뿐이라고 말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그 가족들이 해당 기관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당장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제5절 <표 4-48> 참조)를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온 경우(6%)는 별로 없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그나마 많았지만, 양자를 합쳐도 전체 인지경로의 절반수준도 안 된다(경찰, 26%, 검찰, 13.2%). 범죄피해자, 특히 강력범죄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패닉상태에 빠져 있어 스스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먼저 범죄피해자들을 찾아나서는 일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경찰 단계가 더 빠르므로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를 고지해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제5장

결론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면개정과 2011년부터 시행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과학적 토대가 되는 범죄피해자 피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것과 연계된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선행조사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범죄피해자들까지도 인구비례로 조사대상으로 삼는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와는 달리 오로지 범죄피해 경험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조사상의 난점 때문에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부득불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행 조사연구들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을 다변화하고 표본수를 늘리고자 애썼다.

당초 연구계획상 목표 표본수는 2,000사례 이상이었는데,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무려 석 달에 가까운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표본수의 절반 정도(1,158사례)밖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범죄피해자들, 특히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이 심각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사기간 중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응답거부를 자유롭게 허용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표본추출의 결과가 확률표집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들 중에서도 무

응답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유형별로 혹은 범죄피해자가 의탁하고 있는 기관별로 경험 및 태도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응답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들의 전체 의견은 그 자체로 일반화된 결론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만 제시하고, 주로 범죄유형별 혹은 기관별 응답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나누어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지원욕구라는 두 부분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이 중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부분들만 요약하고 관련된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응답자들과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곱씹어 보기로 하겠다. 둘 중에서는 비록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좀 더 심각한 편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역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제3장 제2절의 <표 3-21> 참조).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중 다수는 가정폭력 상담소 소속 응답자와 성폭력 상담소 응답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가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보였다(제3장 제2절 <표 3-22> 참조).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신체적 피해의 치료와 그 휴유증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도 처방의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즉 신체적 피해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반대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처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처우 사이의 상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의 유사성을 가정했을 때, 이 두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둘 다 매우 낮음)의 차이는 없으나(제3장 제2절의 <표 3-31>에서 <표 3-35>까지 참조)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의 지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표

3-37> 및 <표 3-38> 참조)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 비해 적어도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반적으로는 상담소가 피해자지원센터에 비해서는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점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기관별 처우의 차이도 나타났다. 정신적 후유증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제3장 제4절의 <표 3-40> 및 <표 3-41> 참조),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와 상담소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의 차이는 현격할 정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낮았다. 더 나아가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상담소들이야 원래 그와 같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담소에 있는 피해자들보다 결코 많이 적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후유증 치료 기능이 현저히 취약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치료 기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담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해나가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사건의 언론보도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으로 각 피해자들의 2차 피해실태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었는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언론보도 여부를 통제된 뒤 그 피해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적어도 선행연구들에서보다는 그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제3장 제5절 <표 3-77> 참조).

다음으로 범죄피해지원 욕구와 관련된 논의된 바를 선행연구결과들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사항들만을 간추려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 반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기할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주로 찾거나 의탁하는 기관들의 종류는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제4장 제5절의 <표 4-37> 참조). 즉, 상대적으로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엔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서 찾아가게 된 경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이는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직후 스스로 범죄피해지원 기관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 강력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도, 강력범죄 피해 직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강력범죄 피해당사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로 제 발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찾아가겠는가?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범죄피해 당사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족이 수소문해서 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범죄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일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탁하게 될 경우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러한 응답결과들은 선행연구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일단 어떤 종류의 피해자지원기관이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관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혹은 범죄피해지원에 대해 특별히 더 요구하는 것이 많다가보다는 현행 수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요구가 좀 더 덧붙여질 뿐이라고 말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그 가족들이 해당 기관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제4장 제5절 <표 4-48> 참조)를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온 경우(6%)는 별로 없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그나마 많았지만, 양자를 합쳐도 전체 인지경

로의 절반수준도 안 된다(경찰, 26%, 검찰, 13.2%). 범죄피해자,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패닉상태에 빠져 있어 스스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먼저 범죄피해자들을 찾아나서는 일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경찰 단계가 더 빠르므로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를 고지해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할 만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각 특성을 가진 여러 기관의 결여된 기능들을 보완하든지 양자 중의 하나를 시급히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각종 상담소들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범죄유형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필요하지만 결여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원만한 지원을 받는 데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고 있다. 가령,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기존의 상담소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방식들이 결여되어 있다. 어느 기관에 주로 의탁하는 피해자이든 양자는 모두 필요한 기능들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여되어 있는 기능들을 상호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 기관별로 범죄유형별 특화는 유지하되 그 자체 내에 모든 기능을 다 갖추도록 하거나, 각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범죄피해지원에 드는 예산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후자의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령 강도범죄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정신적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의무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기관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들은 피해 충격 및 가공할 만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들 기관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경찰 및 검찰이 서로 의무적으로 피해자들을 연결해 주거나 끌어오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본 조사연구와 같은 연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그 지원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기획해 내기 위함이 그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향후 본 조사연구 방법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본 조사연구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표본추출 등과 같은 어떤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사연구가 가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경험을 회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접근할 경우에조차도 일종의 치료적 관점에서 거의 전문가 수준(정신과의사나 상담심리학박사)의 면접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 막대한 비용소요가 문제가 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행될 수 있는 조사방법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긴 하다.

참고문헌

- 경인현, 2004, “검찰 피해자보호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김순태, 1995, “현행법상의 증인보호제도와 개선방안”, 『헌안분석』 제97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 김용세, 2002, “한국의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상황”, 『새울법학』 제6-1호.
- 김용세, 2004,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학생생활연구』 제30호.
- 김용세·김종덕, 2003,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김지선·이동원, 200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박형민, 2009,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법무부 인권국.
- 김현철, 200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박광빈, 1989, “사건당사자의 소환에 있어서 피소환자의 편의도모방안”,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제5집, 법무연수원.
- 박미숙, 2005,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병식, 2004,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 일본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철현·곽명달, 2007,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1호, 한국피해자학회.
- 박철현·김상원, 2005,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평가”, 『2005년 피해자

- 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 송광섭, 2004,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한국법학원.
- 송기오·강경래, 200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희진, 1999,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심희기, 2002,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화의 최소화 방안”, 『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영근·이천현, 2005,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윤상민, 200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윤승현, 200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이만중, 2004,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이재상·이호중, 1992,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천현, 2004,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이호중, 1993,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 2000,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 피해구조와 배상적 화해의 간극”,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 장규원, 2005,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정진수, 1996,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승, 200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최인섭·이순래·조균석, 2006,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정학, 2005, “민간 피해자 지원기구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울산·양산범죄피해

- 자지원센터 심포지움』.
- 홍영오·이수정, 2006,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태정, 2006,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ndes, Susan, 1996, "Empathy, Narrative and Victim Impact Statemen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63.
- Bursik, R & Yantzi, M., 1980, *Needs Assessment for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Ontario.
- Friedman, Kenneth, Helen Bischoff, Robert Davis & Andrea Person, 1982, *Victims and Helpers : Reaction to Crime*, Summary.
- Judith M. Sgarzi, Jack McDevitt, 2003, *Victimology : A Study of Crime Victims and Their Roles*, Pearson Education, Inc.
- Karmen, Andrew, 1996, *Crime Victims :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3rd.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lifornia.
- LeRoy L. Lamborn, 1973, The Propriety of Governmental Compensation of Victims of Crime,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41. no3.
- Moriarty, Laura J., 2003, *Controversies in Victi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 Peter Finn & Beverly Lee, 1987, *Serving Crime Victim and Witness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esick, P. A., 1987, "Psychological Effects of Victimization :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e and Delinquency*, vol. 33.
- Tolman, R. M and A. Weisz, 1995,. Coordinated Community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 The Effect of Arrest and Prosecution on Recidivism of Women Abuse Perpetrators, *Crime and Delinquency* v41. 481-95.

A Study on Crime Victims and their Needs for Support in Korea

Submitted by Hwang Ji-tae and Roh Seong-ho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e Victim was fully revised in 2010, and in same year the Act on Protection Fund of Crime Victim was enacted.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e Victim regulates investigation into actual conditions of crime victims to support them in reasonable and appropriate way. It is the time to research crime victims and their needs for support.

This study investigated crime victims that differed from crime victimization survey that investigated non-crime victims as well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The precedent studies were forced to approach crime victims with help of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is study diversified government agencies in target and increased number of the samples to overcome limitation of precedent studies.

The study was aimed at more than 2,000 samples (cases): But, the study could obtain approximate half of target sample (1,158 cases) despite almost three months investigation time from middle of September 2010 to early December 2010. The investigation could make the victims suffer from another pains who already experienced serious criminal damages. So, the investigation

was temporarily suspended during inspection period. As a result, the authors were forced to inspect the victims who were permitted not to reply so that results of sampling differed from probability and some of the questionnaires had no answer. The interviewees' experience and attitudes varied depending upon either crime types or organization taking care of the victims not to generalize the answers. So, this study introduced the interviewees' answers for reference only and investigated difference of the answers by either crime type or government agency to classify into two, that is to say, actual conditions of losses and damages and desire of the support.

The crime victims suffered from difficulties and damages:

At first, the crime victims suffered from physical injury, in other words, the interviewees at not only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but also consulting service suffered from physical injury more than remaining groups did. The victims at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suffered from physical injury more, and the ones at consulting service also did seriously. (Table 3-21, Chapter 3, paragraph 2). Many interviewees at consulting service consisted of two, that is to say, the ones at consulting service of family violence, and the ones at consulting service of sexual abuse. The former had distribution being similar to that of the victims of violent crimes (Table 3-22, Chapter 3, paragraph 2). Not only victims of violent crimes but also the ones of family violence were thought to be given treatment of physical injury as well as countermeasures against aftereffect in similar way. Some of countermeasures for the victims of family violence shall be applied to the ones of violent crimes as well, and those for the victims of violent crimes shall be done to the ones of family violence. This is because treatment of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for the victims differed from that of family violence consulting service. The victims of both violent crimes and family violence suffered from physical injury similarly. Both victims had no difference of assistance from either offenders or insurance firms (the assistance from both were very much low)

(Table 3-31 to Table 3-35, Chapter 3 paragraph 2). But, the assistance from either the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had much difference to be likely to produce problems (Table 3-37, Table 3-38). In other words,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were given less assistance of physical injury than family violence consulting services were done.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need to improve the problem.

Treatment of mental aftereffect of the criminal victims varied depending upon assistance organizations. The victims at either family violence consulting services or sexual abuse consulting services had more mental aftereffects than the ones of violent crimes at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had (Table 3-40 and Table 3-41, Chapter 3, paragraph 4). The victims of violent crimes at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were given much less treatment of mental aftereffect than the ones at consulting services were done. And, the victims were given much less treatment from either the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 The consulting services were aimed at treatment. The victims of violent crimes at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had mental aftereffects as much as the victims at consulting services had: But, the former was given much less treatment of mental aftereffect.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need to develop mental treatment function by themselves or to have close relations with consulting services to share roles.

And, the press gave victims secondary losses and damages. Precedent studies included so many cases that were not reported at the press, so that they reported secondary losses and damages absolutely or relatively less. But, this study reported higher victim rate after controlling report of the press. (Table 3-77, Chapter 3, paragraph 5).

This study differed from precedent studies at the findings of the victims' desire of assistance:

The organizations that either the victims or their family members relied upon varied depending upon victim himself or herself or his or her family. (Table

4-37, Chapter 4, paragraph 5). The victim visited consulting service by himself or herself more often, and asked his or her family member to visit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s. This was because victims of violent crimes had difficulty at visiting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by themselves immediately after occurrence of the crime. The ones who were forced to visit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mostly were said to be victims of violent crimes and their family members. The ones who suffer from violent crimes are expected to be fallen into panic status immediately after a crime because of many factors. How does the victim visit the center by himself or herself under such a situation? Therefore, the victim may not visit the center and instead his or her family member can visit it after making efforts to find out.

Either crime victim or his or her family said that they could get a lot of help from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and other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d not much difference with that of precedent studies. The victims can be satisfied with victim assistance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types. And, the victims do not ask the organizations to give assistance extraordinarily, and they add requests to expand current level of the services. On the contrary, either crime victims or their family members shall be allowed to get in touch with government agencies promptly and efficiently that is thought to be important. Either crime victim or his or her family could find out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by visit (6%) (Table 4-48, Chapter 4, paragraph 5). They could find out the center owing to introduction of either police (26%) or prosecutor (13.2%), and the aggregation of both channels did not reach half. The crime victim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violent crimes, are usually fallen into panic state immediately after the crime to have difficulties at searching for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Therefore,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had better find out crime victims more often, or either police or prosecutor should inform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y of the center. The police shall inform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y firstly as far as possible considering the police's prompt actions.

The study suggested three policies:

Firstly, the crime victim assistance organizations shall strengthen organic connection or supplement functions of those organizations. The consulting services having long history can be differentiated from newly organized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at types of crime types and others to be short of some functions and to let crime victims have difficulties at being given assistance.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that is focused on victims of violent crimes are short of either consulting service or mental treatment, while the consulting services are short of assistance services of the center. The victims need both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and consulting service. Both organizations need to supplement functions each other to solve the problem. Each one may keep its own function by each type of crime and have all of the functions by itself. If not, each organization can be combined in organic way to supplement insufficient functions. The latter may be practical considering budget and expenses of the crime victim assistance, and the former shall be partially used. For instance, robbery crime victim is not allowed to be given consulting service of psychological treatment at family violence consulting service.

Secondly,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shall not expect that the victims would visit it by themselves, and it shall let victims visit with almost obligation. The crime victims, in particular, victims of violent crimes are often unable to visit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by themselves because of impact of losses and damages, and tremendous physical and mental aftereffect. The crime victim assistance center and other assistance organizations, the police, the prosecutor shall connect and invite victims each other.

Thirdly,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egulates that studies like this study shall be made continuously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continuous study is to plan assistance ways as reasonable as possible. The studies that are

similar to this study shall reflect trials and errors to improve as follow: Those studies do not have relations with methodologies such as sampling to consider secondary suffering of the crime victims firstly. This is because crime victims may have great difficulties at recollecting their suffering. Similar types of studies need to consider thought of the victims as much as possible. In other words, interviewers who are almost professionals from point of view of therapy, for instance, psychiatrist and doctors of consulting service and psychology, had better be employed eve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of crime victims. Those studies may require enormous amount of expenses. Good methodologies shall be used constantly not to give the victims suffer from another pains.

Keyword : Crime Victims, Victim Survey, Crime Victim's Needs for Support,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Crime Victims, Victim Assistance Program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여러분이 당하신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힘드시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 앞으로 강력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는 근래에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과 범죄피해유족들 중에서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무작위로 선별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개인의 신상이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조사와 관련한 사항이나 자료분석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02-3460-5124

조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조사대상기관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확한 기관명	
	② 검찰 (피해자지원실)	정확한 기관명	
	③ 경찰 (인권보호센터)	정확한 기관명	
	④ 법무부 (구조지원과)	정확한 기관명	
	⑤ 법률구조공단	정확한 기관명	
	⑥ 가정폭력상담소	정확한 기관명	
	⑦ 성폭력상담소	정확한 기관명	
	⑧ 아동관련상담소	정확한 기관명	
	⑨ 기타	정확한 기관명	
응답자 분류	① 피해자 본인 ② 피해자 가족		

먼저,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귀하의 태도 및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1. 귀하께서는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1.	원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만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___ 1)	___ 2)	___ 3)	___ 4)
1-2.	사건의 종결 후에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근황 등을 챙기는 것	___ 1)	___ 2)	___ 3)	___ 4)
1-3.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___ 1)	___ 2)	___ 3)	___ 4)

문2.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번호	사법기관	조치 받은 적이 없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거의 만족하지 못한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1.	경찰	___ 0)	___ 1)	___ 2)	___ 3)	___ 4)	___ 5)
2-2.	검찰	___ 0)	___ 1)	___ 2)	___ 3)	___ 4)	___ 5)
2-3.	법원	___ 0)	___ 1)	___ 2)	___ 3)	___ 4)	___ 5)

문3. 당신은 아래와 같은 피해자 지원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아래 피해자 지원방안을 실제로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 지원방안	번호	인지여부		번호	경험여부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1.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3-1a.	___ 0)	___ 1)	3-1b.	___ 0)	___ 1)
2.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2a.	___ 0)	___ 1)	3-2b.	___ 0)	___ 1)
3.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3-3a.	___ 0)	___ 1)	3-3b.	___ 0)	___ 1)
4. 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3-4a.	___ 0)	___ 1)	3-4b.	___ 0)	___ 1)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5. 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3-5a.	__ 0)	__ 1)	3-5b.	__ 0)	__ 1)
6.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3-6a.	__ 0)	__ 1)	3-6b.	__ 0)	__ 1)
7. 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3-7a.	__ 0)	__ 1)	3-7b.	__ 0)	__ 1)
8.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8a.	__ 0)	__ 1)	3-8b.	__ 0)	__ 1)
9.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9a.	__ 0)	__ 1)	3-9b.	__ 0)	__ 1)
10. 특정 피해자는 상담소(가정·성폭력·아동상담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	3-10 a.	__ 0)	__ 1)	3-10 b.	__ 0)	__ 1)
11.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3-11 a.	__ 0)	__ 1)	3-11 b.	__ 0)	__ 1)
12.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다.	3-12 a.	__ 0)	__ 1)	3-12 b.	__ 0)	__ 1)
13. 범죄피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13 a.	__ 0)	__ 1)	3-13 b.	__ 0)	__ 1)
14.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심의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4 a.	__ 0)	__ 1)	3-14 b.	__ 0)	__ 1)
15. 범죄피해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치료를 위해서 보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3-15 a.	__ 0)	__ 1)	3-15 b.	__ 0)	__ 1)

↳ 문4.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위의 1번부터 15번까지의 지원방안 중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선택해 순서대로 그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중요도	지원방안의 번호
4-1.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번)
4-2.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번)
4-3.	세 번째로 중요한 것	(번)

↳ 문5. 귀하께서 실제로 경험해본 지원방안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도움의 정도	지원방안의 번호
5-1.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번)
5-2.	두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것	(번)
5-3.	세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것	(번)

문6.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피해당사자나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해당’은 경찰이나 검찰과의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통보 내역	번호	나에게 알려주었다			번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해당	아니다	그렇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1. 범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6-1a.	___ 0)	___ 1)	___ 2)	6-1b.	___ 0)	___ 1)
2.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등)	6-2a.	___ 0)	___ 1)	___ 2)	6-2b.	___ 0)	___ 1)
3. 상대방의 체포나 구금여부	6-3a.	___ 0)	___ 1)	___ 2)	6-3b.	___ 0)	___ 1)
4. 수사진행 정도	6-4a.	___ 0)	___ 1)	___ 2)	6-4b.	___ 0)	___ 1)
5. 상대방이 재판진행 중인지 아닌지 여부	6-5a.	___ 0)	___ 1)	___ 2)	6-5b.	___ 0)	___ 1)
6. 재판 장소와 시간	6-6a.	___ 0)	___ 1)	___ 2)	6-6b.	___ 0)	___ 1)
7. 재판 참여와 방청방법	6-7a.	___ 0)	___ 1)	___ 2)	6-7b.	___ 0)	___ 1)
8. 상대방의 신변변동상태(보석, 석방 등)	6-8a.	___ 0)	___ 1)	___ 2)	6-8b.	___ 0)	___ 1)
9. 재판 판결결과	6-9a.	___ 0)	___ 1)	___ 2)	6-9b.	___ 0)	___ 1)
10. 국가 및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제도	6-10a.	___ 0)	___ 1)	___ 2)	6-10 b.	___ 0)	___ 1)

다음의 문항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7. 귀하께서 범죄피해와 관련한 상담·도움·지원 등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 ___ 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___ 2) 검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등)
- ___ 3) 경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 ___ 4) 법무부 구조지원과
- ___ 5) 법률구조공단
- ___ 6) 가정폭력상담소
- ___ 7) 성폭력상담소
- ___ 8) 아동관련 상담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___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8. 귀하께서 본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음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번호	피해자 지원방안	이용 경험이 없다	만족 정도		
			만족하지 못한다	약간 만족한다	많이 만족한다
8-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___ 0)	___ 1)	___ 2)	___ 3)
8-2.	검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등)	___ 0)	___ 1)	___ 2)	___ 3)
8-3.	경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___ 0)	___ 1)	___ 2)	___ 3)
8-4.	법무부 구조지원과	___ 0)	___ 1)	___ 2)	___ 3)
8-5.	법률구조공단	___ 0)	___ 1)	___ 2)	___ 3)
8-6.	가정폭력상담소	___ 0)	___ 1)	___ 2)	___ 3)
8-7.	성폭력상담소	___ 0)	___ 1)	___ 2)	___ 3)
8-8.	아동관련 상담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___ 0)	___ 1)	___ 2)	___ 3)

문9. 귀하께서는 범죄피해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중 어떤 지원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그 서비스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어디에서 제공받으셨습니까?

피해자 지원서비스	번호	받은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번호	지원기관 번호 (아래표)
			도움이 안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피해자구조금	9-1a.	__ 0)	__ 1)	__ 2)	__ 3)	9-1b.	()
2. 생계비 보조 혹은 지원	9-2a.	__ 0)	__ 1)	__ 2)	__ 3)	9-2b.	()
3. 유족 장학금	9-3a.	__ 0)	__ 1)	__ 2)	__ 3)	9-3b.	()
4. 긴급지원 비용 (의료비 · 생계비 외)	9-4a.	__ 0)	__ 1)	__ 2)	__ 3)	9-4b.	()
5. 각종 물품 보조	9-5a.	__ 0)	__ 1)	__ 2)	__ 3)	9-5b.	()
6. 의료비 감면	9-6a.	__ 0)	__ 1)	__ 2)	__ 3)	9-6b.	()
7. 별도의 치료비 (의료비 감면 외)	9-7a.	__ 0)	__ 1)	__ 2)	__ 3)	9-7b.	()
8. 간호와 구호, 간병, 병원 후송	9-8a.	__ 0)	__ 1)	__ 2)	__ 3)	9-8b.	()
9. 심리적 상담과 대화	9-9a.	__ 0)	__ 1)	__ 2)	__ 3)	9-9b.	()

10. 사건현장 정리(현장 청소 등)	9-10a.	__ 0)	__ 1)	__ 2)	__ 3)	9-10b.	()
11. 신변 보호	9-11a.	__ 0)	__ 1)	__ 2)	__ 3)	9-11b.	()
12. 법률적상담(재판·보험·배상 등) 지원	9-12a.	__ 0)	__ 1)	__ 2)	__ 3)	9-12b.	()
13.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9-13a.	__ 0)	__ 1)	__ 2)	__ 3)	9-13b.	()
14. 단기 숙박 및 식사 제공	9-14a.	__ 0)	__ 1)	__ 2)	__ 3)	9-14b.	()
15. 별도의 임시 거처(주거공간) 제공	9-15a.	__ 0)	__ 1)	__ 2)	__ 3)	9-15b.	()

↳ ※ 문9. 관련 참고 : 아래의 목록은 위 문9.에서 도움 받은 “지원기관들의 목록”입니다.

〈범죄피해 관련 피해자 지원기관〉	
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② 검찰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 등)
③ 경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④ 법무부 구조지원과
⑤ 법률구조공단	⑥ 가정폭력상담소
⑦ 성폭력상담소	⑧ 아동관련 상담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⑨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다음 문10.에서 문12.까지의 질문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용자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께서는 문13.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문1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___ 1) 홍보물을 보고
- ___ 2) 경찰에서 알려주었음
- ___ 3) 검찰에서 알려주었음
- ___ 4)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 ___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직접 나를 찾아와서 알게 되었음
- ___ 6) 다른 단체나 상담소에서 연결해 주었음
- ___ 7) 기타(_____)

문11. 귀하가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문12. 아래 표에 제시된 활동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번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서비스의 내용	받은 경험이 없다	도움 정도		
			도움이 안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12-1.	상담 (감정적 심리적지원, 법률정보제공)	__ 0)	__ 1)	__ 2)	__ 3)
12-2.	의료지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연계)	__ 0)	__ 1)	__ 2)	__ 3)
12-3.	경제적 지원 (생계지원, 법률 소송 비용)	__ 0)	__ 1)	__ 2)	__ 3)
12-4.	화해중재	__ 0)	__ 1)	__ 2)	__ 3)
12-5.	사법보좌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__ 0)	__ 1)	__ 2)	__ 3)
12-6.	임시숙소 제공	__ 0)	__ 1)	__ 2)	__ 3)
12-7.	사건현장 정리	__ 0)	__ 1)	__ 2)	__ 3)
12-8.	자조조직(self-help) 지원	__ 0)	__ 1)	__ 2)	__ 3)
12-9.	피해자 보호관련 법률 혜택 지원 활동	__ 0)	__ 1)	__ 2)	__ 3)
12-10.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자 지정 지원활동	__ 0)	__ 1)	__ 2)	__ 3)

다음의 질문들은 범죄피해자의 피해경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현 기관을 방문하게 된 범죄사건 기준)

문13. 피해 관련 기관에 접촉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범죄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 | |
|------------|---------------------|
| __ 1) 강도 | __ 2) 폭행상해(가정폭력 제외) |
| __ 3) 가정폭력 | __ 4) 살인 |
| __ 5) 성범죄 | __ 6) 방화 |

___ 7) 유괴·납치·감금 ___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4. 범죄피해 당사자의 피해 당시 연령은 얼마였습니까?

만 _____ 세

문15. 피해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문16. 범죄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___ 1) 서울·수도권 위성도시, 광역시
- ___ 2) 수도권 이외의 중소도시
- ___ 3) 농어촌지역

문17. 피해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___ 1) 피해자의 집 내부
- ___ 2) 가해자의 집
- ___ 3) 평소에 자주 다니던 곳(유치원, 학교, 직장, 단골 장소, 통근·통학길 등)
- ___ 4) 가끔 가는 곳
- ___ 5) 처음 간 장소

문18.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 ___ 1) 그렇다 (☞ 문18-1.을 거쳐서 가십시오.)
- ___ 2) 아니다 (☞ 문19.로 곧바로 가십시오.)

※ 다음 문18-1.에서 문18-3.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의 문18.에서 가해자를 안다고 응답하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단,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18-1. 가해자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 1) 가족 가운데 한 사람
- 2) 친척 가운데 한 사람
- 3) 친구나 애인
- 4) 직장이나 학교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
- 5) 안면이 있는 동네 사람
- 6) 가족이나 회사동료는 아니지만 잘 알고 지내던 사람
- 7)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사건 발생 전에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 8) 전혀 모르는 사람 (사건 발생시 처음 본 사람)
-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8-2.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문18-3. 가해자의 연령은 대략 어떠하였습니까?

- 1) 10대 2) 20대 3) 30대
-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문19.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까?

- 0)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 1) 보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 2) 보도되기는 하였지만 작게 보도되었다

___ 3)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다음은 사건 당시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피해의 후유증 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문20. 범죄피해당사자는 사건 발생 당시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까? 입었다면, 신체적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___ 0) 신체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 (☞ 문21.로 곧바로 가십시오.)
- ___ 1)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
- ___ 2)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
- ___ 3)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수술 등 포함)
- ___ 4)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중상
- ___ 5)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 혹은 식물인간 상태
- ___ 6) 실제 사망

※ 다음 문20-1.에서 문20-6.까지의 질문은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피해당사자가 범죄피해로 사망한 경우엔, 사망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대략 기입해 주십시오.)

* 아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부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20-1. 범죄피해당사자가 신체적 피해를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이 걸린다고 진단이 나왔습니까?)

- ___ 0) 신체적 피해가 있었지만 치료는 받지 못했다

- 1) 1개월 미만
- 2)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 3)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 4) 6개월 이상

문20-2. 현재까지 귀하께서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_____ 만원

문20-3. 치료에 드는 총 비용(자비+각종 보상 및 지원액)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대략 _____ 만원

문20-4. 사건의 가해자가 범죄피해당사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 0)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 1)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보상해 주었다
- 2)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 주었다
- 3)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었다

문20-5. 보험회사가 범죄피해당사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 0)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 1)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급해 주었다
- 2)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급해 주었다
- 3)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급해 주었다

문20-6.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당사자의 신체적 피해 치료비를 지원 혹은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까?

- 0)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 1) 치료비의 절반 이하를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 2) 전액에는 못 미치나,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혹은 감면)해 주었다
- 3)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

문21. 범죄피해당사자는 현재에도 사건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인 후유증이 있습니까?

(응답은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중복 해당될 경우엔 숫자가 큰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0) 정신적·육체적 후유증 모두 전혀 없다
- 1) 뚜렷한 신체적 후유증은 없지만 불안·우울 등의 정신적 후유증은 남아 있다
- 2)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소화불량·두통·불면증·생리불순 등의 신체 증상이 있다
- 3) 눈에 띄는 흉터나 화상이 남아 있다
- 4) 신체적 상해 부위가 지금까지도 아프다(단, 심한 신체장애는 아닌 경우)
- 5) 회복되지 않는 신체적인 장애(신체 일부의 손실, 신체기능의 큰 손상)가 있다

문22. 범죄피해당사자는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와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0) 전혀 받은 적이 없다 (☞ 문23.으로 곧바로 가십시오.)
- 1) 한두 번 받은 적이 있다
- 2) 몇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3) 자주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

* 다음 문22-1.에서 문22-4.까지의 질문은 정신과 의사 혹은 카운슬러와 상담을

다음은 사건으로 인한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가족의 경제적 피해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23.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이 입은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실제 빼앗긴 현금이나 물건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망가졌거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액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 0) 현금이나 물건 등의 피해는 없었다(☞ 문24.로 곧바로 가십시오.)
- 1) 10만원 미만
- 2)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3)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4)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 100만원 이상 (구체적으로: _____ 원)

※ 다음 문23-1.과 문23-2의 질문은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하셨던 분들만 응답하십시오.

문23-1. 사건의 가해자가 현금이나 물건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였습니까?

- 0) 아무런 피해 보상도 없었다
- 1)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 2)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 3)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문23-2.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서 재산피해를 대신 지원·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 0)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 1) 피해액의 절반 이하에 대한 지원·보상이 있었다
- 2) 전액에는 못 미치나, 피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지원·보상이 있었다
- 3) 거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지원·보상이 있었다

다음은 사건 이후 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으셨던 기타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24.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가족분께서는 범죄피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범죄피해 이후의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4-1.	생계가 범죄피해 이전보다 곤란해졌다	___ 1)	___ 2)	___ 3)	___ 4)
24-2.	소송비용의 부담이 컸다	___ 1)	___ 2)	___ 3)	___ 4)
24-3.	정신적·신체적 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	___ 1)	___ 2)	___ 3)	___ 4)
24-4.	일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___ 1)	___ 2)	___ 3)	___ 4)
24-5.	사건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나빠졌다	___ 1)	___ 2)	___ 3)	___ 4)

문25.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구성원들 중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 구성원의 경우 한 명만 해당되어도 응답해주십시오.)

번호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없었다	있었다
25-1.	범죄피해 당사자의 심한 공포감·대인기피	___ 0)	___ 1)
25-2.	범죄피해 당사자의 극심한 우울증	___ 0)	___ 1)
25-3.	범죄피해 당사자의 자살기도	___ 0)	___ 1)
25-4.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심한 공포감·대인기피	___ 0)	___ 1)
25-5.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극심한 우울증	___ 0)	___ 1)
25-6.	범죄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자살기도	___ 0)	___ 1)

문26.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구성원은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1.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나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	___ 0)	___ 1)	___ 2)
26-2.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___ 0)	___ 1)	___ 2)
26-3.	언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	___ 0)	___ 1)	___ 2)

26-4.	언론취재 때문에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___ 0)	___ 1)	___ 2)
26-5.	언론보도 때문에 나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___ 0)	___ 1)	___ 2)

문27.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구성원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1.	같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___ 0)	___ 1)	___ 2)
27-2.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	___ 0)	___ 1)	___ 2)
27-3.	취조하듯이 무례하게 대했다	___ 0)	___ 1)	___ 2)
27-4.	피해가족을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거나 심문했다	___ 0)	___ 1)	___ 2)
27-5.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결과가 부당했다	___ 0)	___ 1)	___ 2)
27-6.	원치 않는 합의를 권유하였다	___ 0)	___ 1)	___ 2)

문28.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구성원은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1.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와 원치 않는 대면을 했다	___ 0)	___ 1)	___ 2)
28-2.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가 원치 않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___ 0)	___ 1)	___ 2)

문29. 범죄피해당사자 혹은 그 가족구성원은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호	사건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1.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___ 0)	___ 1)	___ 2)
29-2.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왔다	___ 0)	___ 1)	___ 2)
29-3.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렸다	___ 0)	___ 1)	___ 2)

문35. 현재에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번호	가해자에 대한 감정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1.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___ 0)	___ 1)	___ 2)
35-2.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	___ 0)	___ 1)	___ 2)
35-3.	상대방이 밉다	___ 0)	___ 1)	___ 2)
35-4.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___ 0)	___ 1)	___ 2)

먼저 응답하시는 분께서 범죄피해 당사자이신지 혹은 그 가족이신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범죄피해 당사자인지의 여부는 피해자 관련 기관에 접촉하시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범죄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문36. 귀하는 범죄피해를 당한 당사자이십니까? 아니면 그 가족이십니까?

- ___ 1) 피해 당사자 (☞ 문37.로 곧바로 가십시오.)
 ___ 2) 피해자의 가족 (☞ 문36-1.에서 문36-4.까지 거쳐서 가십시오.)

※ 다음 문36-1.에서 문36-4.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의 문36.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응답하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36-1. ◀범죄피해자의 가족▶ 귀하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___ 1) 피해자의 부모
 ___ 2) 피해자의 형제자매
 ___ 3) 피해자의 자녀
 ___ 4) 피해자의 배우자
 ___ 5) 기타의 가족 구성원 (구체적으로 _____)

문36-2. ◀범죄피해자의 가족▶ 귀하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문36-3. ◀범죄피해자의 가족▶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___ 1) 남자 ___ 2) 여자

문36-4. ◀범죄피해자의 가족▶ 귀하의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___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___ 2) 중학교 졸업 이하
___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 4) 전문대학·대학 중퇴·졸업 이상

다음은 범죄피해 당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 가족께서 응답하시는 경우에는, 범죄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7. 범죄피해 당사자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문38. 범죄피해 당사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___ 1) 남자 ___ 2) 여자

문39. 범죄피해 당사자의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___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___ 2) 중학교 졸업 이하
___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 4) 전문대학·대학 중퇴·졸업 이상

문40. 범죄피해 당사자의 현재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 ___ 1) 미혼 ___ 2) 기혼 동거
___ 3) 기혼 별거 ___ 4) 이혼
___ 5) 배우자 사별 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41. 범죄피해 당사자는 현재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 1) 자기 혹은 자기 가족 소유 주택
- 2) 전세
- 3) 월세
- 4) 국가, 국가지원 민간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
- 5) 사적인 임시 거처(친구집, 친척집 등)
- 6) 기타 임시 거처 (구체적으로 _____ 예: 공장, 사무실, 비닐하우스, 거리, 차량 등)

문42. 범죄피해 당사자는 “현재의 거처”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계십니까?

_____ 년 _____ 월

문43. 범죄피해 당사자는 “현재의 거처”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혼자 살고 있다
- 2)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 3) 직계가족이 아닌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다
- 4) 친구·지인 등과 함께 살고 있다
-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다음은 범죄피해 당사자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각각의 소득과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4. 범죄피해자 당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0) 없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___ 5) 500만원 이상

문45. 범죄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___ 0) 없음
- ___ 1) 100만원 미만
- ___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___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___ 4)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___ 5) 500만원 이상

문46. 범죄피해자 당사자의 직업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속합니까?

- ___ 1) 전문기술직 ___ 2) 행정관리직 ___ 3) 일반사무직
- ___ 4) 판매서비스직 ___ 5) 농어업직 ___ 6) 생산기능직
- ___ 7) 학생 ___ 8) 주부 ___ 9) 무직 ___ 10) 기타

문47. 범죄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실질적 가장의 직업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속합니까?

- ___ 1) 전문기술직 ___ 2) 행정관리직 ___ 3) 일반사무직
- ___ 4) 판매서비스직 ___ 5) 농어업직 ___ 6) 생산기능직
- ___ 7) 학생 ___ 8) 주부 ___ 9) 무직 ___ 10) 기타

문48. 귀하(응답자 본인)의 직업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속합니까?

- ___ 1) 전문기술직 ___ 2) 행정관리직 ___ 3) 일반사무직
- ___ 4) 판매서비스직 ___ 5) 농어업직 ___ 6) 생산기능직
- ___ 7) 학생 ___ 8) 주부 ___ 9) 무직 ___ 10) 기타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2〉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 2010.5.14 법률 제10283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

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당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어난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6조(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⑤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0조(구조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결정에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제31조(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6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예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예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예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예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283호, 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록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2010.5.14 법률 제10284호 시행일 2011.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0284호, 2010.5.14〉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총서 10-05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발 행 / 2010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5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세진종합미술
(02)2277-3269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844-1 93330